

# 한-미 FTA 발효 후 상품교역현황 변화 분석 및 상호협력모델 연구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 제 출 문

관세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미 FTA 발효 후 상품교역현황 변화  
분석 및 상호협력모델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17. 7. 31.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김 기 영



# 연구진

〈연구 주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노재연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자〉

배철한 전문연구원

황정애 전문연구원

박지문 전문연구원



## 요 약 문

- 제1장 서론
- 제2장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점검
- 제3장 한-미 FTA 발효 후 현황분석
- 제4장 한-미 FTA 상호협력모델
- 제5장 결론

### 1 연구개요

####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발 新보호무역주의 급부상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만성적 국제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이민정책 강화,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 실행 중
-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한 모든 FTA 재협상 방침 발표

#### ☐ 한-미 FTA는 양당사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

- **(미국 측 평가)**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미국에 교역수지 개선효과를 가져다주었고(미국국제무역위원회), 전체적인 상품·서비스 교역이 증진되었으며(미국무역대표부, 미국상공회의소), FTA 폐기 시 미국보다 높은 한국의 기본관세를 적용으로 미국 상품은 경쟁력 상실(미국상공회의소)과 함께, 한국의 FTA체결국에게 시장 점유권을 내어줄 것(미국상공회의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이라고 평가
- **(한국 측 평가)** 양국의 상대국 시장점유율 증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대비 미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 및 직접투자 증가 등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

## □ 한-미 FTA가 종료 되었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경제적 파급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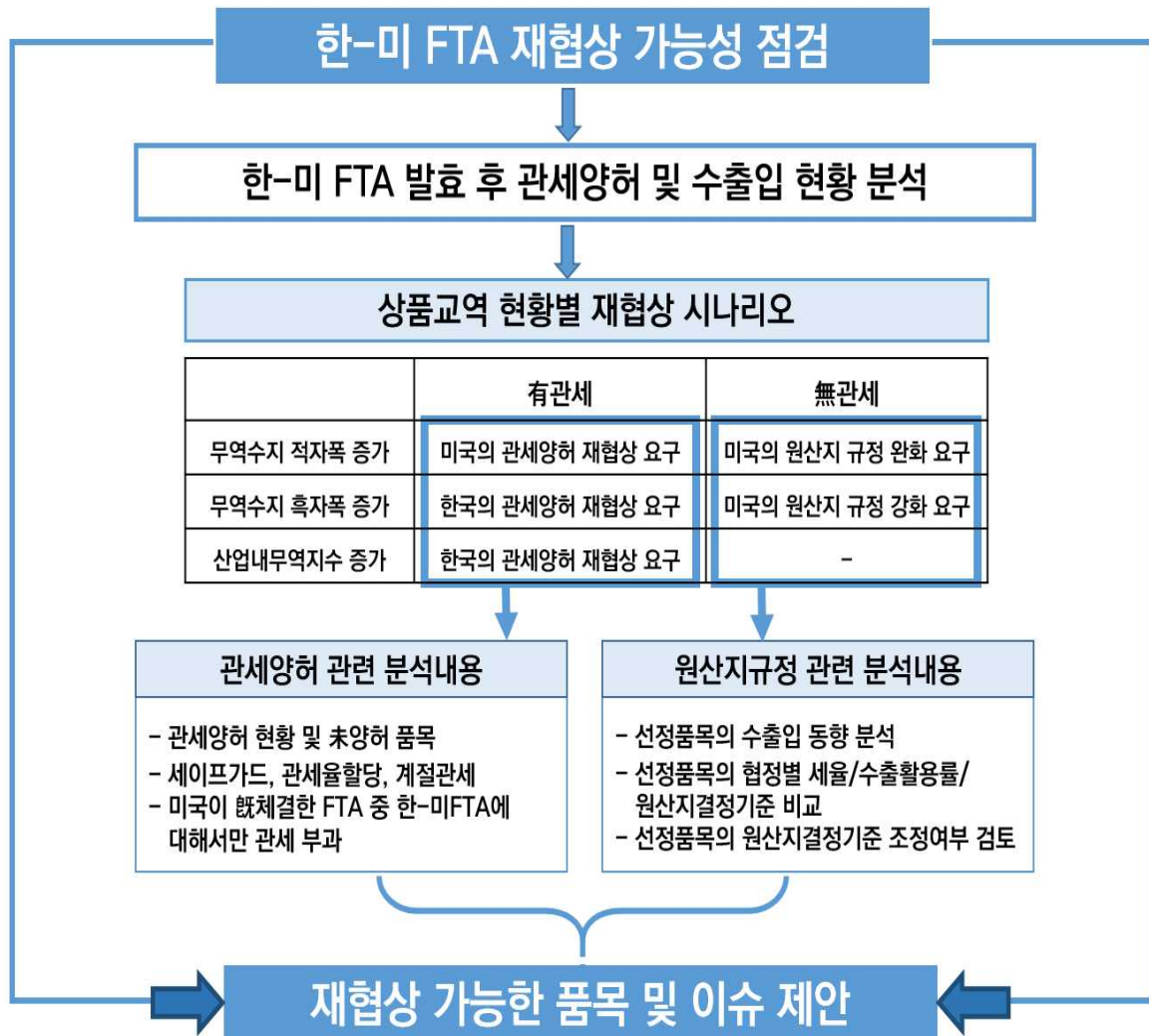
- 한-미 FTA 종료 시 한국의 對미 수출은 13억 달러 줄어드는 것에 반해, 미국의 對한 수출은 15억 달러 감소해 미국의 손해가 더 큰 것으로 평가
- 현대경제연구원은 상품교역만을 고려할 때 연평균 32.5억 달러의 수출이 감소하고 3.2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상품, 서비스, 투자 모두를 고려할 때 연평균 53.9억 달러의 수출이 감소하고 4.8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미국이 한-미 FTA를 폐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폐기 대신 개정 또는 수정이 진행되더라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밝힌 것과 같이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일부 품목·분야에 한정된 양허안 조정 및 수입 제도 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

## □ 양당사국의 상호 호혜적인 한-미 FTA 재협상을 모색하기 위해 한-미 FTA 현황 분석 및 상호협력모델 모색 필요

-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당사국에게 좋을 것”이라며 ‘좋은 협정’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양국 국민이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입장 표명
- 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협상 가능한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만한 한국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양허 및 상품교역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분야에서 관세양허 및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재협상 이슈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만한 한국 측 요구 사항을 분석

## □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 **(제2장)** 한-미 FTA의 종료·재협상의 법적 근거 및 한-미 FTA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주요 무역기관 및 연구소의 평가를 통해 한-미 FTA 종료 혹은 재협상의 가능성 점검
- **(제3장)** 한-미 FTA 발효 후 관세양허 및 상품교역 현황 분석
  - 품목별 수출·입 현황 분석을 통해 재협상 가능한 품목 선정의 근거를 제시
  - 수출품목수의 변화, 종사자 규모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對미 수출입 건수 및 금액 현황, 한-미 FTA 활용률 현황 등을 통해 한-미 FTA의 성과 및 특징 정리
- **(제4장)** 관세양허와 원산지 규정의 재협상 가능한 품목 선정 및 개정 가능한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한-미 FTA의 상호협력 방안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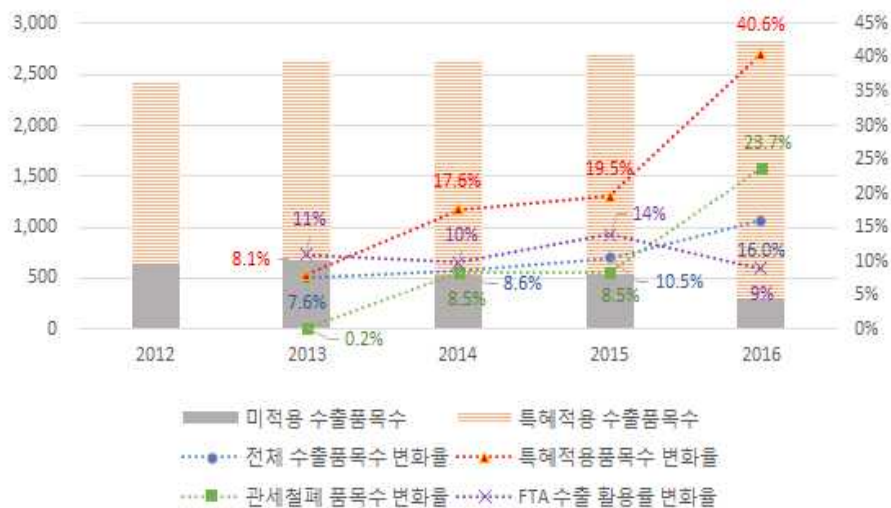


## 1. 한-미 FTA 발효 후 수출·입 현황 분석 결과

- ☐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교역 부진으로 인해 양국의 對세계 교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교역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동반 상승

### ☐ 한국의 수출·입 품목 수

- 2016년에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품목수는 2012년 대비 40.6% 증가
- 전체 수출품목수에서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품목수 비중 증가는 수출품목 다변화, 관세철폐 품목 수 증가, 기업의 FTA 활용역량강화로 인한 활용률 증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품목수의 변화 양상이 관세철폐 품목 수의 변화율의 기울기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보아 관세철폐 품목 수의 변화와 그 변화를 같이 한 것으로 보임



자료: 수출 및 관세 데이터는 USITC(dataweb.usitc.gov)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S 8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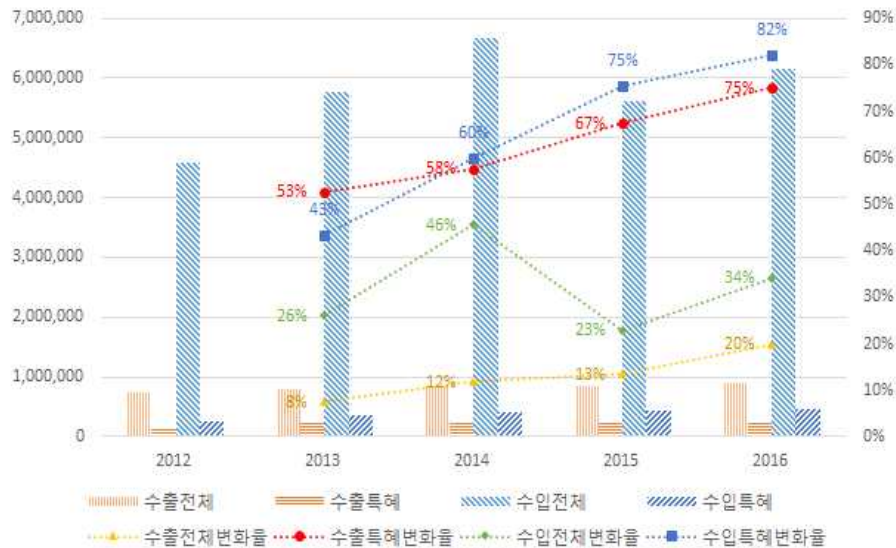
FTA 활용률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2012년 FTA 발효년도 대비 변화율

### ☐ 한국의 수출·입 건수

- 전체 건수 대비 특혜적용을 받은 건수의 비중은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낮음

- 2012년 대비 2016년 총 교역 건수 및 특혜적용 건수의 변화율 모두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많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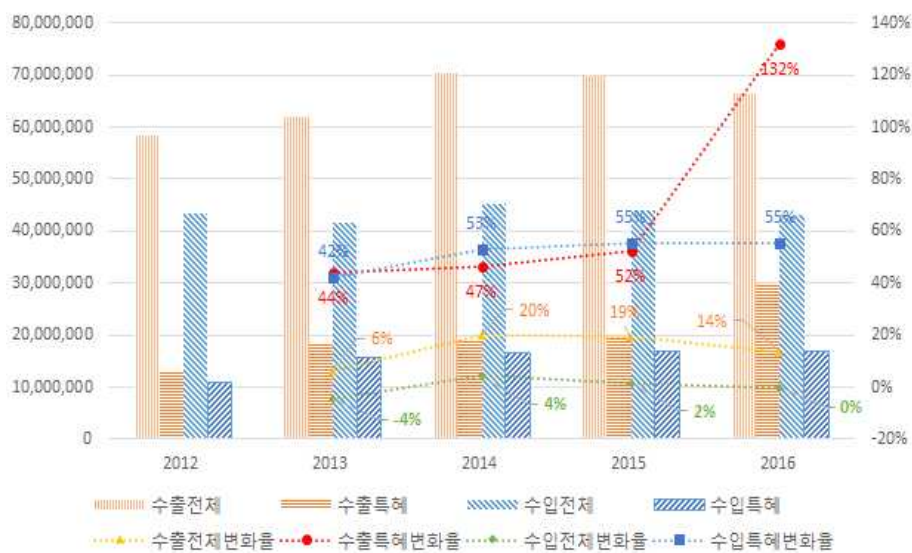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2012년 FTA 발효년도 대비 변화율

## □ 한국의 교역액 변화

- 특혜적용 수출·입 금액의 변화율은 2012년 대비 수출이 수입에 비해 더 많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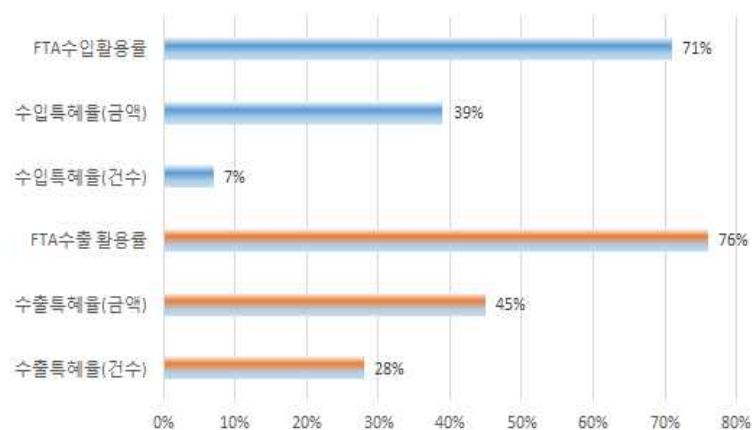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2012년 FTA 발효년도 대비 변화율, 금액 단위: 1,000 달러

- 건수를 기준으로 수입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이 한-미 FTA 발효 해인 2012년에 비해 특혜 적용 비율이 더 많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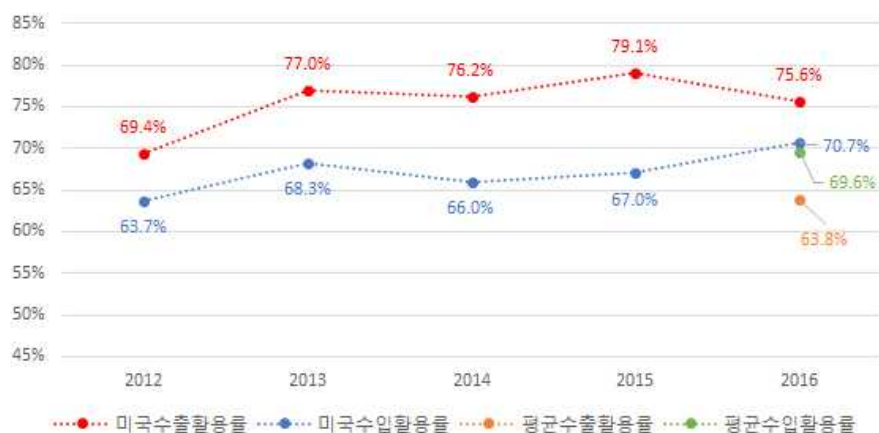
## □ 한국의 한-미 FTA 활용률

- FTA 활용률이나 전체 수출·입의 금액 혹은 건수 대비 특혜적용을 받은 수출·입의 금액 혹은 건수의 비중 모두 수출이 수입에 비해 더 높음



주: 2016년 자료.

- 한-미 FTA 수출·입 활용률은 2014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2년 대비 매년 꾸준히 상승
- 2016년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76%로 14개 FTA 협정들의 평균 FTA 수출활용률 64%보다 12%정도 높으며, 한-미 FTA 수입활용률은 71%로 전체 평균 활용률 70%보다 1% 정도 높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평균 FTA 활용률은 FTA TRADE REPORT (2017 Vol.01) 자료 참조 (한-싱가포르 FTA를 제외한 14개 협정의 평균 활용률, 아세안은 베트남 제외)

## 2. 한-미 FTA 상호협력 모델 연구 방법

### ☐ 분석 대상 품목 선정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전후 5년 동안의 누적 수출·입 증가, 무역수지 변화, 산업내무역지수 등을 토대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품목,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 한국의 적자 품목 중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된 품목 등을 선별

상품교역현황별 재협상 시나리오

|              | 有관세             | 無관세              |
|--------------|-----------------|------------------|
|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 | 미국의 관세양허 재협상 요구 | 미국의 원산지 규정 완화 요구 |
|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 | 한국의 관세양허 재협상 요구 | 미국의 원산지 규정 강화 요구 |
| 산업내무역지수 증가   | 한국의 관세양허 재협상 요구 | -                |

### ☐ 관세양허 관련 분석 내용

- 관세 양허 현황 및 未양허 품목
- 세이프가드, 관세율할당, 계절관세
- 미국이 既체결한 FTA 중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

### ☐ 원산지 규정 관련 분석 내용

- 선정 품목의 수출·입 동향 분석
- 선정 품목의 세율/ 수출활용률/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비교
- 선정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여부 검토

### 3. 관세양허 관련 가능한 재협상 이슈

□ 미국은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한 품목 중 관세가 남아 있는 경우 관세 조기 철폐를 요구할 수 있음

○ 제2류(육과 식용 설육)의 소고기(제0201호, 제0202호)와 돼지고기(제0203.19호)

- 2017년 기준 미국산 소고기는 300,0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30%의 관세가 적용되고, 돼지고기는 11,04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15.8%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수준에 못 미치는 물량이 수입되고 있어 각각 24%와 9%의 특혜세율이 적용
-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관세율은 2017년 5월 기준 다른 주요 수입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소고기 2위 수입국인 미국은 1위 수입국인 호주와 달리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미국은 2012년 1위 수입국이었으나 2016년 멕시코(1위), 캐나다(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수입비중 감소 중
-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 한국시장에서의 소고기 수입국 1위를 달성하고 돼지고기 수입국 1위 재탈환을 목표로 관세 조기철폐 및 인하 등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3류(어류·갑각류)

- 제3류 품목 중 미국의 對한 수출이 가장 많은 제0303호(냉동어류)의 경우 35개 품목에 평균 6.2%의 관세가 남아있고 TRQ 적용 물품 모두 제0303호이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제3류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0304호(어류의 필레)에 한국 측 관세가 10개 품목에 평균 6.5%의 관세가 남아있고 세 번째로 수출규모가 큰 제0306호(갑각류)에도 한국 측 관세가 19개 품목에 3.7%의 관세가 남아있어 제3류에 대한 미국의 양허안 수정 요구 예상

○ 제7류(신선 채소) 중에서 對미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감자(제0701.90호)

- 연도별 총 수입액을 살펴보면 미국은 2015년까지 1위의 수입국으로 한국의 전체 감자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6년 28%까지 감소하면서 호주(72%)에 밀려 2위로 내려앉음
- 이중 칩용 감자에 대해 한-미 FTA와 한-호주 FTA 모두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비성수기에는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한-미 FTA의 경우 성수기에 304%, 한-호주 FTA에는 2017년 기준 22.95%가 적용되고 있음. 호주는 2014년 12월 협정 발효 이후 균등 인하되고 있으나 미국은 8년차인 2019년부터 균등 인하될 예정

- 미국이 2017년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일부 지역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조치 철회를 위해 계속 협상 중에 있다고 밝힌 바, 미국 측에서 비관세 분야 뿐 아니라 관세 분야에서도 감자의 관세 조기 인하, 계절관세 및 관세율할당에 대한 조건 완화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

○ 제22류(음료·주류)의 제2202.90-2000호(과실주스 음료)와 제2203.00-0000호(맥주)

- 한국의 對미 수입이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2017년 기준 각각 3.6%, 4.2%의 관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실주스 음료와 맥주에 대한 관세 철폐 요구 예상
- 특히 과일주스의 경우 미국제품이 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 비중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이 既체결한 FTA 중에서 한-칠레, 한-EU, 한-페루, 한-싱가포르, 한-터키 등의 FTA에는 동 제품에 대해 2017년 기준 0%의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미 FTA의 경우 9%의 기본세율이 10단계에 걸쳐 균등 인하여 2017년에는 3.6%가 적용되고 2021년 완전 철폐 예정

☐ 미국은 관세율 할당 및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규정 완화 및 철폐를 요구할 수 있음

○ 제8류(과실·견과류)의 오렌지

- 오렌지는 제8류의 과실 중에서 對미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9월~2017년 2월까지 수입된 물량은 20,388톤으로 TRQ 허용 물량인 2,814톤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미국 측이 계절관세에 대한 조건 완화 및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오렌지는 현재, 비수기인 3월~8월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30%에서 인화된 관세가 이행 2년차부터 6단계 균등 철폐되어 2016년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7년 차인 2018년 0%가 되며, 9월~2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로서 현행 50%의 관세를 유지하되, TRQ물량을 제공하여 협정 상 기재된 물량(2,814톤)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 관세가 부여되고, 그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수입 중

☐ 한국은 미국이 既체결한 FTA 중 한국 혹은 한국을 포함한 소수의 국가에게만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조기 철폐 및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HS 8 단위 11,081개(HS 98~99류 제외) 중에서 868개 품목으로서 전체 8% 정도에 해당

○ 제70류(유리·유리제품)

- 제70류(유리·유리제품) 가운데 미국 측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은 33개로 전체 제70류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33개 품목은 모두 미국의 既체결 협정 중 유일하게 한국만 관세가 남아있고 이들의 2016년 평균 관세는 6.9%로 매우 높은 편이며, 한국만 차별 관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재협상 시 관세 인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FTA 발효 전후로 누적 對미 수출액이 급증한 제7013호는 2016년 기준 전체 제70류 가운데 수출 물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관세 인하가 필요한 품목

○ 제76류(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제품)

- 알루미늄 합금 제품인 제7606.12호와 제7606.92호는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미국의 양허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남아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이므로 잔여 관세가 철폐될 경우 무역수지가 더욱 개선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미국 상무부는 알루미늄 산업을 6대 핵심 산업으로 지목하고 자국의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무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재협상 시 난항 예상

□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고 산업내 무역지수가 감소한 품목

- 한국의 특혜 양허 관세는 모두 0%이나 미국의 경우 제87류(일반차량)에 6개, 제73류(철강제품)에 7개, 제94류(가구류·조명기구)에 2개, 제82류(비금속 공구)에 7개, 제83류(비금속 제품)에 1개 품목에 양허 관세가 남아 있음
- 이러한 품목들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들이나 한국의 수출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미국의 양허 관세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이 미비한 이유가 차별적 조치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수출금액이 미미하지만 미국이 잠재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FTA 협상당시 미리 이런 차별적 관세를 적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원산지규정 관련 가능한 재협상 이슈

- HS 6단위 기준으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과 FTA활용률을 연계 분석하여 향후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이슈 품목을 선정,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상호협력 방안을 검토

## □ 분석 대상 품목 선정 기준

- 첫째, 2016년 현재 對미 수출금액 1억 달러 이상, FTA 수출활용률이 80%이상인 HS 6단위 기준으로 대표적인 한-미 FTA 수출활용 품목 총 21개를 추출, 한국의 對미 수입액이 적은 각 산업별 대표품목 1개를 선정
- 둘째, 2016년 현재 對미 수입금액 1억 달러 이상, FTA 수입활용률이 50%미만인 HS 6단위 기준으로 대표적인 수입품목 총 12개를 추출, 한국의 對미 수출액이 적은 각 산업별 대표품목 1개를 선정

## □ 분석 근거

- FTA활용을 통한 관세혜택으로 계약상대국 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시장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증대 효과가 있지만 원산지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될수록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 분석 내용(대표품목)

- 한국의 對미 주요수출품목 중 제8703.22호의 소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2012년 한-미 FTA 발효 직후인 2013년 전년대비 323%, 2015년에는 전년대비 44.7%의 기록적인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2016년 현재에도 양(+)의 수출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2년 3억 2천만 달러에서 2016년 현재 22억 7천만 달러까지 확대된 반면, 해당물품에 대한 對미 수입규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그다지 큰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음

제8703.22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 구 분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수입금액  | 수입증감률 |           |
| 2012 | 320,920   | 42,313.4 | 652   | -66.8 | 320,268   |
| 2013 | 1,357,613 | 323      | 987   | 51.4  | 1,356,625 |
| 2014 | 1,475,353 | 8.7      | 500   | -49.4 | 1,474,853 |
| 2015 | 2,135,236 | 44.7     | 605   | 21    | 2,134,631 |
| 2016 | 2,275,704 | 6.6      | 2,671 | 341.6 | 2,273,033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천 달러, %)

- 해당물품의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약 99.3%로서 매우 우수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주요 협정별 총 수출금액과 FTA특혜수출금액을 비교해본 결과 수출비중과 FTA특혜수출규모 모두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제8703.22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HS.No | 8703.22 | 품 명           |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               | 22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        |             |
| 협 정   |         | 총 수출금액        |      | FTA특혜수출금액                                                                                  | FTA활용률 | 세율(MFN/FTA) |
| 한-미   |         | 2,275,677,175 |      | 2,259,571,247                                                                              | 99.3   | 2.5 / 0     |
| 한-EU  |         | 1,076,346,008 |      | 1,075,650,159                                                                              | 99.9   | 10 / 0      |
| 한-아세안 |         | 116,359,078   |      | 99,224,781                                                                                 | 85.3   | -           |

주 : 1. 해당 항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생략함.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단위: 달러, %)

- 제8703.22호에 대한 주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이며, 한-미 FTA의 경우에는 집적법과 공제법에 더불어 순원가법<sup>1)</sup>의 총 3개의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한-중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RVC60로 부가가치기준비율이 상당히 높아 주요 협정 중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한국산 자동차의 특혜수입에 대한 중국 측의 보수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제8703.22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
| 한-미   |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br>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br>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br>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
| 한-EU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한-중   |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
| 한-아세안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자료: 각 협정문.

1) 한-미 FTA, 한-캐나다 FTA 및 한-콜롬비아 FTA에서 자동차류에 대한 순원가법 적용가능

- 결과적으로 제8703.22호에 대한 원산지 규정 측면에서 판단해 보면, 현재보다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의 변경 요구가 있을 개연성이 있음
- 한-미 FTA상 자동차류에 대한 전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이 BU35, BD55, NC35의 부가가치 선택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해당물품인 제8703.22호의 원산지결정 기준 또한 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부가가치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부가가치비율의 상향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강화하는 안이 제시될 수 있음
- 부가가치비율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미국이 주도했던 TPP와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TPP : BD55 or NC45, 한-중 FTA : CTH+BD60)을 참고할 수 있으며 각각 현행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보다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준 정도까지의 원산지결정기준 강화 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제8703.22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PSR 약어표시             |
|-----|----------------------------------------------------------------------------------------------------------|----------------------|
| 예시① |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br>가. 집적법 45퍼센트 이상, 또는<br>나. 공제법 60퍼센트 이상, 또는<br>다. 순원가법 45퍼센트 이상 | BU45 or BD60 or NC45 |
| 예시② |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br>가.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br>나. 순원가법 45퍼센트 이상                        | BD55 or NC45         |

#### □ 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수출규모와 더불어 FTA 활용률도 매우 우수하고 해당물품에 대한 對미 무역수지 흑자폭도 상당한 규모로 확인됨
  - 이러한 바탕에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계약상대국과의 비교우위제품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짐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를 통해 자동차 등 대표적인 무역수지 적자 품목에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 FTA활용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경우 對한 수출증진을 위해 농산물·석유화학·의약품 등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완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이러한 품목들의 경우 현행 원산지결정기준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조정보다는 TRQ 물량의 확대, 의약품(제5장)이나 지식재산권(제18장)의 개정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개정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즉, 개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완화라는 방법보다는 해당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개방을 확대하거나 규제완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5. 정책적 제언

- 관세양허 및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각 산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한-미 FTA 대응책 마련할 것을 제안
- 한국형 관세양허 및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갈 것을 제안
- (관세양허 규정) 한국의 생산·수요 현황, 품목별·국가별 교역 현황, 상품의 경쟁관계, 시장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협정별·상품별로 차별적인 ‘한국형 관세양허 규정’에 대한 일반원칙 정립
- (원산지 규정) 수출품목의 생산시설 현황, 역외가공여부, 중간재 경쟁관계 및 상품교역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한국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 정부·학계·산업계간 협의체를 구성,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향후 FTA 개정 및 새로운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
  - 이는 FTA를 통한 자유무역이 심화될수록 FTA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유발하지 않도록 협정 간 일관성·통일성을 부여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FTA활용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FTA 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방안이기도 함
  - 또한, 한국의 산업특성·수출입구조 등이 반영되어 우리기업들에게 보다 이익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한-미 FTA를 포함한 한국의 既체결된 FTA의 활용성을 증진시키고, 실질적으로 양적·질적 교역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신규 FTA를 확대 시켜 나가야 할 것임

- ☐ FTA 통상환경 점검을 통해 한-미 FTA의 효율적 이행과 성공적 활용 지원
- ☐ 향후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시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한-미 FTA 개선 방향 설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 ☐ 주요 산업별 한-미 FTA 교역현황 변화분석, 관세양허 현황분석, 한-미 FTA 활용 및 원산지 규정 분석 등을 통한 산업별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 해당 관련기관 및 산업계의 대응자료로 활용

# 목 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3

## 제2장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점검 ..... 5

### 제1절 한-미 FTA 종료 및 재협상 근거 ..... 5

####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5

#### 2. 한-미 FTA 협정 ..... 6

#### 3. 소결 ..... 7

### 제2절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 평가 ..... 8

#### 1. 미국 무역대표부 (USTR) ..... 8

####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 ..... 9

#### 3. 미국 상공회의소 (USCOC) ..... 12

#### 4.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PIIE) ..... 13

#### 5. 소결 ..... 14

### 제3절 한-미 FTA에 대한 한국 측 평가 ..... 15

####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5

#### 2. 무역협회 ..... 15

#### 3. 산업연구원 ..... 16

|                  |    |
|------------------|----|
| 4. 현대경제연구원 ..... | 16 |
| 5. 한국경제연구원 ..... | 17 |
| 6. 소결 .....      | 18 |

### **제3장 한-미 FTA 발효 후 현황 분석 ..... 19**

#### **제1절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양허 현황 ..... 19**

|                       |    |
|-----------------------|----|
| 1. 미국의 관세양허 현황 .....  | 19 |
| 2. 한국의 관세 양허 현황 ..... | 23 |
| 3. 소결 .....           | 26 |

#### **제2절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품교역 현황 ..... 27**

|                                           |    |
|-------------------------------------------|----|
| 1. 한-미 FTA 발효전후 수출·입 현황 .....             | 27 |
| 2. 한-미 FTA 발효 전후 품목별 수출·입 현황 .....        | 29 |
| 3.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 품목 수 현황 .....      | 34 |
| 4. 종사자규모별 한국의 對미 수출·입 기업 수 및 교역액 현황 ..... | 35 |
| 5.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입 건수 및 금액 현황 ..... | 36 |
| 6. 소결 .....                               | 39 |

#### **제3절 한-미 FTA의 FTA 활용률 현황 ..... 41**

|                                  |    |
|----------------------------------|----|
| 1. FTA 활용률의 정의 .....             | 41 |
| 2. 한-미 FTA 연도별 수출·입 활용률 현황 ..... | 43 |
| 3. 한-미 FTA 품목별 수출·입 활용률 현황 ..... | 44 |
| 4. 소결 .....                      | 46 |

## **제4장 한-미 FTA 상호협력모델 ..... 48**

### **제1절 관세 양허관련 상호협력 방안 ..... 49**

1.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품목 ..... 49
2.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 ..... 72
3. 산업내 무역지수가 증가한 품목 ..... 75
4. 소결 ..... 81

### **제2절 FTA 활용률 및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상호협력 방안 ..... 84**

1. FTA 활용률과 원산지결정기준의 관계 ..... 84
2.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개괄 ..... 85
3. 한-미 FTA 활용 주요 특혜수출 품목현황 ..... 87
4. 한-미 FTA 활용 주요 이슈 품목 분석(수출) ..... 88
5. 한-미 FTA 활용 주요 특혜수입 품목현황 ..... 103
6. 한-미 FTA 활용 주요 이슈 품목 분석(수입) ..... 104
7. 소결 ..... 118

## **제5장 결론 ..... 120**

[첨부 1] ..... 124

[첨부 2] ..... 126

참고 문헌 ..... 129

## 표 목차

|                                                                                                                                       |    |
|---------------------------------------------------------------------------------------------------------------------------------------|----|
| [표 2-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9조 .....                                                                                                     | 5  |
| [표 2-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4조 .....                                                                                                     | 6  |
| [표 2-3] 한-미 FTA 협정문 제24.2조 ‘개정’ .....                                                                                                 | 6  |
| [표 2-4] 한-미 FTA 협정문 제22.2조 ‘공동위원회’ (일부발취) .....                                                                                       | 6  |
| [표 2-5] 한-미 FTA 협정문 제24.5조 ‘발효 및 종료’ (일부발취) .....                                                                                     | 7  |
| [표 2-6] USTR이 보고한 상품에 대한 한국의 무역장벽 .....                                                                                               | 9  |
| [표 2-7] Estimated improvement by the U.S. trade agreements on bilateral merchandise<br>trade balances in 2015 (billion dollars) ..... | 10 |
| [표 2-8] Estimated share of total tariff savings from each U.S. trade agreement in<br>2014 (in percentages) .....                      | 11 |
| [표 2-9] Commission projections of trade agreement impacts (일부발취) .....                                                                | 11 |
| [표 2-10] 2017~2020년 對미 수출 손실액 및 국내 고용감소분 추정 결과 .....                                                                                  | 17 |
| [표 2-11]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 (2017~2021년 누적) ....                                                                            | 17 |
| [표 3-1] 미국 MFN 관세 양허 현황 (2017.3.3.기준) .....                                                                                           | 19 |
| [표 3-2] 미국의 MFN 관세율과 한-미 FTA 특혜관세율 비교 .....                                                                                           | 20 |
| [표 3-3] 제73류 철강 제품 중 미국의 양허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 .....                                                                                        | 21 |
| [표 3-4] 미국의 對한 양허 有관세 품목 현황 (2017.3.3.기준) .....                                                                                       | 22 |
| [표 3-5] 한국의 對미 관세양허 현황 (2017.5 기준) .....                                                                                              | 23 |
| [표 3-6] 한국의 未양허 품목 현황 (2017.5 기준) .....                                                                                               | 23 |
| [표 3-7] 소고기 품목의 관세양허 이행 기간별 세율 .....                                                                                                  | 24 |
| [표 3-8] 한국의 對미 양허 有관세 품목 현황 (2017.5 기준) .....                                                                                         | 25 |
| [표 3-9] 한-미 FTA 발효 전후 수출·입 누적액 상위 15위 품목 .....                                                                                        | 30 |

|                                                         |    |
|---------------------------------------------------------|----|
| [표 3-10] 한-미 FTA 발효 전후 무역수지증가폭이 큰 10대 품목 .....          | 31 |
| [표 3-11] 한-미 FTA 발효 전후 무역수지감소폭이 큰 10대 품목 .....          | 31 |
| [표 3-12] 한-미 FTA 발효 후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된 품목 .....    | 32 |
| [표 3-13] 한-미 FTA 발효 후 산업내 무역에서 산업간 무역으로 전환된 품목 .....    | 33 |
| [표 3-14] 한-미 FTA 발효 후 수출품목수 .....                       | 34 |
| [표 3-15] 종사자규모별 한국의 對미 수출·입 기업 수 및 교역액 .....            | 35 |
| [표 3-16]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입 건수 및 특혜 비율 .....         | 37 |
| [표 3-17]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입 금액 및 특혜 비율 비교 .....      | 38 |
| [표 3-18] 한국의 수출 특혜적용 비율 및 FTA 활용률 비교 (2016년 금액기준) ..... | 41 |
| [표 3-19] 한국의 수입 특혜적용 비율 및 FTA 활용률 비교 (2016년 금액기준) ..... | 42 |
| [표 3-20] 한국의 수출·입 누적액 상위 20대 품목의 FTA 활용률 .....          | 45 |
| [표 3-21] 한국의 한-미 FTA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품목 .....                | 45 |
| [표 3-22] 한국의 한-미 FTA 수입활용률이 저조한 품목 .....                | 46 |
| [표 3-23] 한국의 한-미 FTA 수출·입 활용률이 모두 저조한 품목 .....          | 46 |
| [표 4-1] 상품교역현황별 재협상 시나리오 .....                          | 48 |
| [표 4-2]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 품목의 수출·입 현황 .....                | 50 |
| [표 4-3]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 품목의 평균 관세 현황 .....               | 50 |
| [표 4-4]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 품목의 특별 관세 현황 .....               | 51 |
| [표 4-5] 제2류 한국의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현황 .....                    | 52 |
| [표 4-6] 제2류 한국의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수입 현황 .....                 | 53 |
| [표 4-7] 제8류 한국의 高관세 적용 품목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      | 55 |
| [표 4-8] 제8류 한국의 계절관세 적용 품목 양허 현황 (톤) .....              | 55 |
| [표 4-9] 특정 수입기간에 따른 미국 HS 분류 및 한-미FTA 양허현황 (제8류) .....  | 56 |
| [표 4-10] 미국의 TRQ 적용 품목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제21류) .....     | 58 |

|                                                            |    |
|------------------------------------------------------------|----|
| [표 4-11] 미국의 제21류 對한 잔여관세(2017년 기준) 품목 및 양허 현황 .....       | 58 |
| [표 4-12] 한국의 TRQ 적용 품목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제3류) .....         | 60 |
| [표 4-13] 미국의 제3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허 현황 .....                  | 61 |
| [표 4-14] 한-미 제3류(HS 4단위) 잔여 관세 품목 현황 .....                 | 62 |
| [표 4-15] 미국과 한국의 TRQ·SG 적용 품목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제22류) ..... | 63 |
| [표 4-16] 관세가 남아있는 한국의 품목의 對미 수출입 현황 (제22류) .....           | 64 |
| [표 4-17] 한국의 제2202.90-2000호 제품 수입 현황 .....                 | 65 |
| [표 4-18] 미국의 제16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허 현황 .....                 | 66 |
| [표 4-19] 한-미 제16류(HS 4단위) 잔여 관세 품목 현황 .....                | 67 |
| [표 4-20] 한국의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제7류) .....                       | 68 |
| [표 4-21] 제0701.90-0000호의 한국의 관세 양허 현황 .....                | 69 |
| [표 4-22] 한국의 감자(제0701.90호) 수입 현황 .....                     | 69 |
| [표 4-23] 미국의 제7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허 현황 .....                  | 70 |
| [표 4-24] 한국의 제11류 세이프가드 품목 및 현황 (2016) .....               | 71 |
| [표 4-25] 주요 무역수지 흑자 증가 품목의 수출·입 현황 .....                   | 72 |
| [표 4-26] 주요 무역수지 흑자 품목의 류별 평균 관세 현황 .....                  | 73 |
| [표 4-27] 미국의 對한 잔여관세 품목들의 특혜관세율 및 한국의 수출·입 현황 ....         | 74 |
| [표 4-28] 주요 산업내무역 전환 품목의 수출·입 현황 .....                     | 75 |
| [표 4-29] 주요 산업내무역 전환 품목의 류별 평균 관세 현황 .....                 | 76 |
| [표 4-30] 미국의 제76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허 현황 .....                 | 77 |
| [표 4-31] 미국의 제76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의 수출·입 현황 .....                | 78 |
| [표 4-32] 미국 측 제70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허 현황 .....                | 79 |
| [표 4-33] 미국 측 제7013호 對한 잔여관세 품목의 한국의 수출·입 현황 .....         | 81 |
| [표 4-34] 한-미 FTA PSR 구성 현황 .....                           | 86 |

|                                             |     |
|---------------------------------------------|-----|
| [표 4-35] 한-미 FTA 주요 특혜수출 품목현황 .....         | 88  |
| [표 4-36] 제3918.10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   | 89  |
| [표 4-37] 제3918.1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 89  |
| [표 4-38] 제3918.1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 90  |
| [표 4-39] 제3918.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 91  |
| [표 4-40] 제4011.10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   | 91  |
| [표 4-41] 제4011.1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 92  |
| [표 4-42] 제4011.1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 92  |
| [표 4-43] 공기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품목분류 .....           | 93  |
| [표 4-44] 제4011.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 94  |
| [표 4-45] 제5503.20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   | 94  |
| [표 4-46] 제5503.2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 95  |
| [표 4-47] 제5503.2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 95  |
| [표 4-48] 한-미 FTA 제4.2조 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 | 96  |
| [표 4-49] 제5503.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 97  |
| [표 4-50] 제8504.23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   | 97  |
| [표 4-51] 제8504.23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 98  |
| [표 4-52] 제8504.23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 99  |
| [표 4-53] 제8504.23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 99  |
| [표 4-54] 제8703.22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   | 100 |
| [표 4-55] 제8703.22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 101 |
| [표 4-56] 제8703.22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 101 |
| [표 4-57] 제8703.22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 102 |
| [표 4-58] 한-미 FTA 주요 특혜수입 품목 현황 .....        | 103 |

|                                              |     |
|----------------------------------------------|-----|
| [표 4-59] 제1201.90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  | 104 |
| [표 4-60] 제1201.9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 105 |
| [표 4-61] 제1201.9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 105 |
| [표 4-62] 제1201.90호의 한-미 FTA상 현재 TRQ 물량 ..... | 106 |
| [표 4-63] 제2711.12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  | 107 |
| [표 4-64] 제2711.12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 107 |
| [표 4-65] 제2711.12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 108 |
| [표 4-66] 제2804.61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  | 109 |
| [표 4-67] 제2804.61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 110 |
| [표 4-68] 제2804.61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 110 |
| [표 4-69] 제3004.90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  | 112 |
| [표 4-70] 제3004.9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 112 |
| [표 4-71] 제3004.9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 113 |
| [표 4-72] 제3004.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 114 |
| [표 4-73] 제9018.90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  | 115 |
| [표 4-74] 제9018.9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 115 |
| [표 4-75] 제9018.9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 116 |
| [표 4-76] TPP의 제9018.90호 원산지결정기준 .....        | 117 |
| [표 4-77] 제901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 118 |

## 그림 목차

|                                                            |    |
|------------------------------------------------------------|----|
| [그림 2-1] 한국과 미국의 MFN 평균관세 비교 .....                         | 13 |
| [그림 3-1] 한-미 FTA 미국 관세양허 현황 (2017.3.3.기준) .....            | 19 |
| [그림 3-2] 한-미 FTA 발효전후 한국의 對미 수출 동향 .....                   | 27 |
| [그림 3-3] 한-미 FTA 발효전후 미국의 對한 수입 동향 .....                   | 28 |
| [그림 3-4] 한-미 FTA 발효전후 미국의 對한 수출 동향 .....                   | 28 |
| [그림 3-5] 한-미 FTA 발효전후 미국의 對한 수입 동향 .....                   | 29 |
| [그림 3-6] 한-미 FTA 발효 후 수출품목 수 .....                         | 34 |
| [그림 3-7] 종사자규모별 수출·입 기업 수 및 교역액 비중 .....                   | 36 |
| [그림 3-8] 한-미 FTA 발효 후 수출·입 건수 변화율 .....                    | 37 |
| [그림 3-9]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입 금액 및 특혜 변화율 .....           | 39 |
| [그림 3-10] 한국의 FTA 특혜적용·미적용 및 FTA 非특혜 비율 (2016년 금액기준) ..... | 42 |
| [그림 3-11] 한국의 수출·입 특혜 적용 비율과 FTA 활용률 비교 .....              | 43 |
| [그림 3-12] 한국의 한-미 FTA 수출·입 활용률 및 변화율 .....                 | 44 |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미 FTA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 한-미 FTA는 협정문 제24.2조 및 제24.5조에 따라 협정 개정은 물론, 미국 정부가 희망할 경우 협정 종료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최악의 상황으로서 FTA가 폐기될 경우 특혜관세의 효력은 종료되고, 양국 간 관세는 FTA 체결 이전인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로 돌아가게 되어 양국 간 교역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며 재협상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주요 무역·경제 기관들은 한-미 FTA 협정이 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측 평가는 대체로 한-미 FTA로 인해 미국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과 달리, 동 협정은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미국에 교역수지 개선효과를 가져다주었고(미국국제무역위원회), 전체적인 상품·서비스 교역이 증진되었으며(미국무역대표부, 미국상공회의소), FTA 폐기 시 미국보다 높은 한국의 MFN 관세 적용으로 미국 상품은 경쟁력 상실(미국상공회의소)과 함께, 한국의 FTA체결국에게 시장 점유권을 내어줄 것(미국상공회의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이라고 평가하였다.

한국 측도 이와 비슷하게 양국의 상대국 시장점유율 증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대비 미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 및 직접투자 증가 등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종료 시 한국의 對미 수출은 13억 달러 줄어드는 것에 반해, 미국의 對한 수출은 15억 달러 감소해 미국의 손해가 더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한-미 FTA를 폐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폐기 대신 재협상이 진행되더라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밝힌 것과 같이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일부 품목·분야에 한정된 양허안 조정 및 수입 제도 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非상품 분야와 관련하여 한미 FTA 의약품 결정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투명한 조사, 법률서비스 시장개방, 정부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위탁규정 등에서 한국 측에 충실한 이행과 문제점 해소를 요청할 것으로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당사국에게 좋을 것”이라며 ‘좋은 협정’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양국 국민이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상호 호혜적 협상은 양국의 국익을 근거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협상 가능한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만한 한국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하여, 우선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양허 및 상품교역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분야에서 관세양허 및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재협상 이슈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만한 한국 측 요구 사항들도 분석해 보았다.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상품분야와 관련하여 관세양허 및 원산지 규정의 조정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미 FTA 발효 전후의 양국 상품교역현황일 것이다. 그러므로 재협상 이슈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전후 5년 동안의 누적 수출·입 증가, 무역수지 변화, 산업내무역지수(Intra-Industry Trade Index; IIT) 등의 상품교역 현황 등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품목,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된 품목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상품교역 현황에 따라 관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 관세관련 규제 조항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 될 수 있으며, 관세가 이미 모두 철폐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협상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품목들 중 관세가 남아 있는 경우 미국은 관세 및 세이프가드·계절관세·관세율할당 등의 규정조정으로, 관세가 완전 철폐된 품목 중 FTA 활용률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 완화 등의 방식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들은 이미 미국의 양허관세율이 거의 0%이기 때문에, 미국은 FTA 활용률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 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내무역지수가 증가한 품목들은 FTA 발효 전후 5년간 누적 수입액보다 누적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된 경우들로서 상대적으로 한국 측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품목들이다. 이런 품목 중 관세가 남아 있는 경우 한국의 수출이 많거나 크게 증가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국은 대응 방안으로서 관세 조기 철폐 및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나리오별로 재협상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고 재협상 가능한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협상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였다.

먼저, 각 그룹별 품목 중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한 관세양허 규정 조정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관세 양허 현황, 세이프가드(발동수준 및 관세율), 관세율할당(TRQ 물량 및 관세율), 계절관세, 未양허 품목, 미국이 既체결한 FTA중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만 차별적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 재협상에서 관세양허 관련하여 논의 될 수 있는 품목과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한 품목 중 관세가 남아 있어 미국 측이 관세 조기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였다.

둘째, 미국 측이 관세율 할당 및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규정 완화 및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였다.

셋째, 미국이 既체결한 FTA 중 한국 혹은 한국을 포함한 소수의 국가에게만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경우, 한국 측이 관세의 조기 철폐 및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였다.

한편, 각 그룹별 품목 중 관세가 철폐된 품목들에 대한 원산지규정 조정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조정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한국이 既체결한 주요 협정별 수출입동향, FTA 특혜수출금액, FTA활용률,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 품목별로 수출입동향과 FTA활용률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결정기준 개정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원산지 규정 조정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2016년 현재 對미 수출금액 1억 달러 이상, FTA 수출활용률이 80%이상인 HS 6단위 기준으로 대표적인 한-미 FTA 수출활용 품목 총 21개를 추출하였다. 이 중 對미 수입액이 적은 각 산업별 대표품목 1개를 선정하였다.

둘째, 2016년 현재 對미 수입금액 1억 달러 이상, FTA 수입활용률이 50%미만인 HS 6단위 기준으로 대표적인 수입품목 총 12개를 추출하였다. 이 중 한국의 對미 수출액이 적은 각 산업별 대표품목 1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된 품목들에 대한 재협상 이슈를 분석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한-미 FTA의 종료·재협상의 법적 근거 및 한-미 FTA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주요 무역기관 및 연구소의 평가를 통해 한-미 FTA 종료 혹은 재협상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미 FTA 발효 후 관세양허 및 상품교역 현황을 정리하였다. 특히,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통해 재협상 가능한 품목 선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출품목수의 변화, 종사자 규모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對미 수출입 건수 및 금액 현황, 한-미 FTA 활용률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한-미 FTA의 성과 및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관세양허와 원산지 규정의 재협상 가능한 품목 선정 및 개정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한-미 FTA의 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2장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점검

### 제1절 한-미 FTA 종료 및 재협상 근거<sup>2)</sup>

한-미 FTA의 개정 및 종료에 관한 근거로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과 한-미 FTA 협정이 있다.<sup>3)</sup>

####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비엔나 조약법 협약」은 조약법에 관한 일반조약으로서 1969년 국제 연합 조약법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당사국은 77개국이다. 동 협약은 조약의 체결절차와 효력발생, 다자간 조약에 대한 유보, 조약의 준수·적용과 해석, 제3국에 대한 효력, 개정과 변경, 무효·종료와 운용정지, 피기탁자의 임무, 통고, 정정, 등록 등 조약에 관한 제 규칙을 망라하고 있으며, 현행의 관습법규를 성문화하고 있다.

#### [표 2-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9조

제39조 (조약의 개정에 관한 일반규칙)

조약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2부에 규정된 규칙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합의에 적용된다.

한-미 FTA는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2조 제1항 (a)호4)의 조약에 해당하므로, 동 협약 제39조의 조약의 개정과 종료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동 협약 제39조에서는 한-미 FTA와 같은 조약 당사국간의 합의, 즉 협정의 개정 조항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미 FTA는 협정문 제24.2조에 그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 협약 제54조 따르면 조약은 그 조약의 규정에 따라

2) 한-미 FTA 협정문 제24.2조상에 명시된 공식 용어는 '개정(Amendments)', 제22.2조에 따른 미국정부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 요청 서한('17.7.12)에서는 '개정 및 수정(Amendments and modifications)'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동 보고서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재협상(Renegotiatio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3) 정민정, 「트럼프의 통상 정책과 한-미FTA의 향방」, 이슈와 논점 제122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11

4) 제2조(용어의 사용) ① 이 협약의 목적상, (a)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성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효력이 종료될 수 있다. 한-미 FTA는 협정문 제24.5조에 그 종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종료할 수 있다.

#### [표 2-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4조

제54조 (조약규정 또는 당사국의 동의에 따른 조약의 종료 또는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조약의 종료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다음의 경우에 행하여 질 수 있다.

(a) 그 조약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 또는 (b)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에 언제든지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

## 2. 한-미 FTA 협정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개정 조항(제24.2조)에 따라 서면으로 개정합의를 할 수 있다.

#### [표 2-3] 한-미 FTA 협정문 제24.2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양국 간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하면 협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22.2조 제3항 다호) 동 위원회의 정기회기는 매년 양 국가의 영역에서 교대하여 개최되고, 특별 회기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제22.2조 제4항)

#### [표 2-4] 한-미 FTA 협정문 제22.2조 ‘공동위원회’ (일부발췌)

3. 공동위원회는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또한 한-미 FTA는 일방적인 종료 통고와 일정한 기간(180일)의 경과로 종료될 수 있

다.(제24.5조 제2항) 다만 미국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경우, 한국은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24.5조 제3항)

**[표 2-5] 한-미 FTA 협정문 제24.5조 '발효 및 종료' (일부발취)**

- 
2.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3.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 중에서 제2항에서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당사국이 자국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된다.
- 

### **3. 소결**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개정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개정 합의를 할 수 있으며(제24.2조), 양국 간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하면 협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제22.2조 제3항 다호) 동 위원회의 정기회기는 매년 양 국가의 영역에서 교대하여 개최되고, 특별 회기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제22.2조 제4항)

또한 한-미 FTA는 일방적인 종료 통고와 일정한 기간(180일)의 경과로 종료될 수 있다.(제24.5조 제2항) 다만 미국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경우, 한국은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24.5조 제3항)

이와 같이 협정문 제24.2조 및 제24.5조에 따라 협정 개정은 물론, 미국 정부가 희망할 경우 협정 종료할 수 있다.

## 제2절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미 FTA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월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한-미 FTA 개정(reform)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미 FTA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 한-미 FTA는 협정문 제24.2조 및 제24.5조에 따라 협정 개정은 물론, 미국 정부가 희망할 경우 협정 종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최악의 상황으로서 FTA가 폐기될 경우 특혜관세의 효력은 종료되고, 양국 간 관세는 FTA 체결 이전인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로 돌아가게 되어 양국 간 교역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이 동 FTA를 폐기하고 협정을 종료시킬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 1.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sup>5)</sup>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제7대 수출국으로서 2016년 기준 미국의 對한 상품 수출은 4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고, 수입은 6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여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77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다.

미국의 상품 수출 가운데 첨단기술·자동차·중공업·소비재를 포함한 제조품 수출이 357억 달러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미국 농산물 수출은 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FTA 발효 이후 對한 수출 농가 수는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과 미국 간 전체 상품·서비스 교역은 1,265억 달러에서 1,46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수출의 경우 FTA 발효 전보다 23.1% 증가한 20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규제의 투명성,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 자동차 및 주요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중소기업에 포함한 모든 미국 수출업체들의 시장 접근성 향상 등 한-미

5)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7. 3

FTA가 미국 수출업체들에 대한 한국의 무역환경을 개선시켰으며 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아울러 농산물·공산품 등 한국의 주요 무역 장벽들을 열거하면서 이에 대한 해소 및 개선을 촉구하였다.

**[표 2-6] USTR이 보고한 상품에 대한 한국의 무역장벽**

| 산업     | 무역 장벽 내용                                                                                                                                                       |
|--------|----------------------------------------------------------------------------------------------------------------------------------------------------------------|
| 화학     |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인 화평법(K-REACH)이 시행됨. 이에 대해 미국 측에서 이행지침부족, 이행규칙의 투명성결여, 요구사항이행에 위한 불충분한 이행 기간, 기업기밀 보호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 주류 라벨링 | 주류용기에 알코올이 발암물질임을 알리는 경고문구 의무표시제 시행을 WTO에 통지함.(2016.7.29.) 미국 기업들이 WTO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 목제품    | 2014년 산림청은 국내목재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북미 목제품의 품질표준을 고려하지 않고 11개 목제품에 대한 자체표준을 발표함. 미국은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에 대한 미국 표준 인정 여부를 한국과 논의 중이며, 미국 적합성평가기관이 한국시장에서 승인되는 법안통과를 지지하고 있음. |
| 농업생명공학 | 까다로운 승인절차 및 불필요한 검토회와 자료요청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표명함.                                                                                                            |
| 감자     | 2012년 8월 Zebra Chip 세균병을 이유로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 지역 감자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현재도 수입금지 중임.                                                                               |
| 쌀      | 한국은 WTO 의무사항을 이행 중이며, 쌀은 한-미 FTA 협정에서 한국 측 미양허 품목임.                                                                                                            |
| 자동차    | 2016~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97g/km로 설정함.                                                                                                                          |
| 오토바이   |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금지 정책이 잠재적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촉구하고 있음.                                                                                                                   |
| 의약품    |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 상환제도 등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촉구함.                                                                                                                     |

자료: USTR

##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가 2016년 발표한 미국의 既체결 FTA 경제적 영향 평가보고서<sup>6)</sup>에 따르면 한-미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은 교역수지 및 소비자 후생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 「Economic Impact of Trade Agreements Implemented Under Trade Authorities Procedures, 2016 Report」,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6. 6

상품 교역에 있어서 미국의 對한 교역수지는 2015년 기준 28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FTA가 없었을 시 적자 규모는 440억 달러로 추정되어 한-미 FTA로 157억 달러의 교역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7] Estimated improvement by the U.S. trade agreements on bilateral merchandise trade balances in 2015 (billion dollars)**

| Partner country    | Trade balance in 2015 | Estimated trade balance in 2015 absent the trade agreement | Improvement in the bilateral trade balance in 2015 | Improvement as a share of total bilateral trade in 2015 |
|--------------------|-----------------------|------------------------------------------------------------|----------------------------------------------------|---------------------------------------------------------|
| Australia          | 14.2                  | 0.1                                                        | 14.1                                               | 39.3                                                    |
| Bahrain            | 0.4                   | -0.4                                                       | 0.8                                                | 36.4                                                    |
| Canada             | -15.2                 | -32.9                                                      | 17.7                                               | 3.1                                                     |
| Chile              | 6.7                   | 3.6                                                        | 3.1                                                | 12.7                                                    |
| Colombia           | 2.4                   | -1.0                                                       | 3.4                                                | 11.1                                                    |
| Costa Rica         | 1.7                   | 0.7                                                        | 1.0                                                | 9.4                                                     |
| Dominican Republic | 2.5                   | 1.3                                                        | 1.2                                                | 10.2                                                    |
| El Salvador        | 0.7                   | 0.0                                                        | 0.7                                                | 12.1                                                    |
| Guatemala          | 1.7                   | 0.6                                                        | 1.1                                                | 11.0                                                    |
| Honduras           | 0.5                   | -0.2                                                       | 0.6                                                | 6.0                                                     |
| Israel             | -10.9                 | -14.6                                                      | 3.7                                                | 9.7                                                     |
| Jordan             | -0.1                  | -1.0                                                       | 0.8                                                | 27.6                                                    |
| Korea              | -28.3                 | -44.0                                                      | 15.8                                               | 13.7                                                    |
| Mexico             | -58.4                 | -71.6                                                      | 13.2                                               | 2.5                                                     |
| Morocco            | 0.6                   | -1.0                                                       | 1.6                                                | 61.5                                                    |
| Nicaragua          | -1.9                  | -2.5                                                       | 0.6                                                | 13.6                                                    |
| Oman               | 1.5                   | 0.4                                                        | 1.1                                                | 33.3                                                    |
| Panama             | 7.4                   | 6.5                                                        | 1.0                                                | 12.2                                                    |
| Peru               | 3.7                   | 1.3                                                        | 2.4                                                | 17.3                                                    |
| Singapore          | 10.4                  | 6.8                                                        | 3.7                                                | 7.9                                                     |
| Total              | -60.4                 | -147.9                                                     | 87.5                                               | 5.9                                                     |

자료 : USITC

2014년 기준 한-미 FTA의 관세 절감 규모는 4.8억 달러로 미국 전체 FTA(134억 달러)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후생에 있어서 미국의 既체결 협정은 관세 감축 효과로 인해 수입 상품 가격 뿐 아니라 수입 중간재 가격 하락을 유발, 미국 생산자의 최종재 가격에도 영향을 주어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켰다고 USITC는 밝혔다.

**[표 2-8] Estimated share of total tariff savings  
from each U.S. trade agreement in 2014 (in percentages)**

| Trade agreement | Millions \$ | Share          |
|-----------------|-------------|----------------|
| NAFTA           | 10,529.3    | 78.7           |
| CAFTA-DR        | 1,313.2     | 9.8            |
| KORUS           | 483.0       | 3.6            |
| Jordan FTA      | 285.8       | 2.1            |
| Peru TPA        | 187.9       | 1.4            |
| Israel FTA      | 142.7       | 1.1            |
| Chile FTA       | 104.5       | 0.8            |
| Colombia TPA    | 99.6        | 0.7            |
| Australian FTA  | 75.3        | 0.6            |
| Singapore FTA   | 63.7        | 0.5            |
| Bahrain FTA     | 48.7        | 0.4            |
| Oman FTA        | 28.8        | 0.2            |
| Morocco FTA     | 20.3        | 0.2            |
| Panama TPA      | 1.0         | Less than 0.05 |
| Total           | 13,383.7    | 100.0          |

자료 : USITC

**[표 2-9] Commission projections of trade agreement impacts (일부발체)**

| Agreement     | Effects on U.S. welfare                                                | Effects on total U.S. exports                   | Effects on total U.S. imports                  |
|---------------|------------------------------------------------------------------------|-------------------------------------------------|------------------------------------------------|
| NAFTA         | Increase of \$1.4 billion to \$34.4 billion                            | Increase from \$24.2 billion to \$126.0 billion | Increase from \$19.7 billion to \$89.4 billion |
| Colombia FTA  | Increase of \$419 million                                              | Increase of \$1.1 billion                       | Increase of \$487 million                      |
| KORUS         | Increase of \$1.8 billion to \$2.1 billion                             | Increase of \$4.8 billion to \$5.3 billion      | Increase of \$5.1 billion to \$5.7 billion     |
| Chile FTA     | From a decrease of \$23.0 million to an increase of \$345.3 million    | Change in exports negligible                    | Change in imports negligible                   |
| Singapore FTA | Decrease of \$230.2 million to a decrease of less than \$115.1 million | Increase of \$144.7 million to \$361.9 million  | Increase of \$251.9 million to \$629.7 million |
| Peru TPA      | Increase of \$346 million                                              | Increase of \$640.1 million                     | Increase of \$736.8 million                    |

자료 : USITC

USITC는 동 보고서를 통해 既체결 협정의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한-미 FTA는 18억~21억 달러의 후생 증진, 48억~53억 달러의 수출 증진, 51억~57억 달러의 수입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USITC가 2013년 발표한 보고서<sup>7)</sup>는 한-미 FTA 발효 후 관세즉시 철폐로 무관세 비율이 13%에서 80%로 증가하였고, 주요 서비스분야의 시장접근성 증가, 비관세조치 및 노동, 환경, 경쟁정책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미 FTA가 즉각적인 판매 증가 및 새로운 사업관계에 영향을 주었으나 위생검역과 긴 양허 이행 기간 등이 잠재적인 무역이익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같은 행정절차들이 경미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 3. 미국 상공회의소 (USCOC)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USCOC)는 한-미 FTA 4주년 평가<sup>8)</sup>를 통해 동 협정이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FTA가 없었다면, 한국의 미국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53%로 매우 높고, 다른 상품 역시 평균 7%의 관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적었을 것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상품은 미국 내 수입 시 무관세인 품목이 대부분이므로 미국 관세가 유지되더라도 평균 관세는 농산물 약 5%, 기타 상품 약 3%로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다른 FTA 협정국들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의 부재는 미국 상품의 한국 내 입지를 잃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

상품 교역 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에서도 한-미 FTA는 규제 완화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한국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미국 상공회의소는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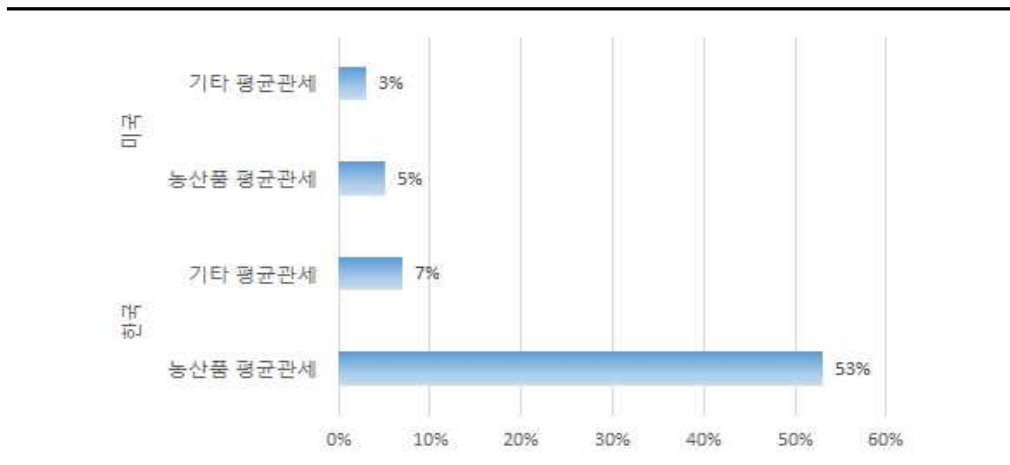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상품 수출은 매년 5% 증가, 서비스 수출은 발효 이후 34%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둬에 따라 한-미 FTA의 부재가 가져올 미국 기업들의 기회 손실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7) 「US-Korea Free Trade Agreements: Effects on 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3. 5

8) Tami Overby, 「Four Years In: The Benefits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The U.S. Chamber of Commerce, 2016. 3

[그림 2-1] 한국과 미국의 MFN 평균관세 비교



#### 4.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PIIE)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는 전문가 기고<sup>9)</sup>를 통해 한-미 FTA가 미국의 교역 수지를 악화시켰다는 트럼프 정권의 주장은 매우 과장되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對한 수출 저조 원인을 한국 시장내 기업 경쟁 심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2007년 협상 타결부터 5년 동안 지연된 한-미 FTA 발효는 2012년 이전부터 FTA 관계를 맺고 특혜 관세를 누린 한국의 협정국에게 FTA 선도자(first-mover)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수출자 및 투자자들은 더욱 심화된 경쟁력 싸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Jeffrey J. Schott 선임연구원은 동 기고를 통해 트럼프 정권이 새로운 한-미 FTA 개정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관계자들은 자동차(원산지 규정, 한국 배기가스 배출 기준), 쌀(한-미 FTA 양허 제외 품목), 금융서비스(국가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시장 접근 양허안 개정을 바라고 있으며,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 측은 한국 측에 자동차 및 쌀에 대한 새로운 쿼터(quotas) 제안 뿐 아니라, 환경·노동·국유기업 관련 분야에 TPP 협정이 도입한 규정들까지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한국 내 반미주의를 야기할 것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수입 제도를 약간 개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9) Jeffrey J. Schott, 「Will the KORUS FTA Have an Encor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7. 3

## 5.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주요 무역·경제 기관들의 한-미 FTA 평가는 모두 동 협정이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과 달리, 동 협정은 미국에 교역수지 개선효과를 가져다주었고(USITC), 전체적인 상품·서비스 교역이 증진되었으며(USTR, USCOC), FTA 폐기 시 미국보다 높은 한국의 MFN 관세 적용으로 미국 상품은 경쟁력 상실(USCOC)과 함께, 한국의 FTA체결국에게 시장 점유권을 내어줄 것(USCOC, PIIIE)이라는 내용이 주된 평가이다.

한국 측도 이와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내 연구 결과<sup>10)</sup>에 따르면 한-미 FTA 종료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13억 달러 줄어들지만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15억 달러 감소해 미국의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한-미 FTA를 폐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폐기 대신 재협상이 진행되더라도 PIIIE가 밝힌 것과 같이 전면적인 개정 보다는 일부 품목·분야에 한정된 양허안 조정 및 수입 제도 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

10) 서윤경 기자, 「산업부 내부문건 보니… “한·미 FTA 파기 땐 美가 더 손해”」, 국민일보, 2017.4.21

### 제3절 한-미 FTA에 대한 한국 측 평가

한-미 FTA는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증가 미국의 서비스 수지 흑자 증가 및 직접투자 증가 등 서로 상호 호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끔찍한 협상이라고 단정 지으며 재협상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의 재협상에 대비하여 미국이 동 FTA를 폐기할 경우의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제시한 방안들을 점검해보았다.

####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sup>11)</su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6년 한국의 對미 무역흑자 규모는 233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한국의 對미 수입도 對세계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한-미 FTA 발효 이후 글로벌 무역 둔화 시기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상대국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의 對미 무역흑자폭이 증가한 것과 반대로 한국의 對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미국으로의 투자가 2011년 73억 달러에서 2016년 129억 달러로 증가한 것을 통해 한-미 FTA는 양국의 상호 균형적인 경제관계를 이루는 상호 호혜적인 FTA라고 평가하였다.

한-미 FTA 재협상을 대비하여 NAFTA 재협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향을 참고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되, 한·미 동맹을 통한 지정학적 안정 및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신무역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래 지향적 통상관계를 포함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길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 2. 무역협회

무역협회는 한-미 FTA 5주년을 평가하는 보고서<sup>12)</sup>에서 세계교역부진, 유가 하락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한미 교역액은 연평균 1.7%로 증가하였고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한국 점유율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하였다.

2015년 기준 한국의 對미 무역수지는 258.1억 달러 흑자이지만 서비스 수지는 140.9억

11) 정철 외,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KEIP 오늘의 세계경제 17(18), 2017.5

12) 정혜선 외,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IIT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2017년 7호

달러 적자로 총 교역수지는 117.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년간 한국의 對미 투자가 511.8억 달러로 미국의 對한 투자액 201.6억 달러 대비 310.2억 초과하였으며 미국 내 한국기업의 고용인원도 36,200명에서 47,000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FTA 활용 측면에서도, 2013년부터 70% 이상의 높은 FTA 수출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가 對미 수출입업체 48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무역업계의 활용도 및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對미 수출입업체 487개사 중 68%가 한-미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기업의 79.5%가 한-미 FTA는 기업 경영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업체들은 FTA 활용 애로와 현지 수요 감소 및 환율 변동이 FTA의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난 5년간 한-미 FTA는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FTA 활용 제고와 투자 증대를 통해 양국 간 균형적인 무역 확대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 3.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은 산업 경제 분석 보고서<sup>13)</sup>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가시화될 때 통상 문제를 안보 문제와 결합하여 의제를 확대하거나, 한-미 FTA가 파기될 경우 한-미 FTA 협상당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던 미국산 농산물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산물은 트럼프 지지층의 한 축인 동시에 전통적 공화당 지지 지역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4. 현대경제연구원<sup>14)</sup>

현대경제연구원은 2000년 1사분기에서 2016년 3사분기의 對미 수출액(상품수출액만 고려), 미국 GDP, 환율, 양국의 물가수준, FTA 더미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한-미 FTA 폐기로 인한 對미 수출 손실액을 추정하였다. 對미 연평균 수출손실액이 약 32.5억 달러로서 2016년 對미 수출 665억 달러 기준 약 4.9%에 달하는 금액이며 2017~2020년 對미 수출 총 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 정도라고 추정하였다.

13) 문종철,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행보의 시사점과 대응방안」, KIET산업경제, 2017.2

14) 현대경제연구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평 17-3, 2017.1

[표 2-10] 2017~2020년 對美 수출 손실액 및 국내 고용감소분 추정 결과

|       | 대미 수출 손실액 추정치 | 국내 고용 감소분 추정치 |
|-------|---------------|---------------|
| 2017년 | 30.9억 달러      | 3.0만 명        |
| 2018년 | 32.0억 달러      | 3.1만 명        |
| 2019년 | 33.1억 달러      | 3.2만 명        |
| 2020년 | 34.2억 달러      | 3.3만 명        |
| 합 계   | 130.1억 달러     | 12.7만 명       |
| 연 평 균 | 32.5억 달러      | 3.2만 명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추정결과 인용

또한 산출된 손실액과 산업연관표상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 고용에 대한 감소분을 추정하였다.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연평균 국내 고용 감소분은 3.2만 명으로 2016년 기준 국내 총취업자의 0.1% 정도이며 2017~2020년 총고용 감소분은 약 12.7만 명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 5. 한국경제연구원<sup>15)</sup>

[표 2-11]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 (2017~2021년 누적)

|           | 양허정지<br>수출 손실액<br>(백만 달러) | 생산유발 손실액<br>(억 원) | 부가가치유발<br>손실액 (억 원) | 취업유발손실 (명) |
|-----------|---------------------------|-------------------|---------------------|------------|
| 자동차, 그 부품 | 13,315                    | 364,296           | 95,407              | 119,071    |
| ICT       | 2,978                     | 63,789            | 18,408              | 17,869     |
| 가전        | 1,071                     | 22,942            | 6,621               | 6,427      |
| 석유화학      | 1,839                     | 35,424            | 6,993               | 8,533      |
| 철강        | 1,211                     | 33,219            | 6,126               | 6,578      |
| 기계        | 4,668                     | 121,917           | 35,460              | 48,090     |
| 섬유        | 974                       | 22,069            | 6,228               | 11,575     |
| 법률 서비스    | 833                       | 14,474            | 8,288               | 26,684     |
| 계         | 26,889                    | 678,131           | 183,532             | 244,828    |

자료: 최남석(한국경제연구원, 2016)년 인용

15) 최남석,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6.12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산업별 경제적 효과(수출,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손실액 등) 및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하여 발표하였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한미 양국 간 관세가 다시 살아 날 경우의 수출 감소 효과와 서비스·투자 부문까지 확대하여 피해손실 규모를 산정하였다.

한-미 FTA 재협상에 따라 2017~2021년 5년간 총 수출 269억 달러와 일자리 24만개가 감소할 것이며, 생산유발 손실 68조원, 부가가치 유발손실은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서 133억 달러의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다음으로 기계가 47억 달러, 가전이 11억 달러, 섬유 11억 달러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일자리 손실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 11만 9천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며 기계가 4만 8천명, ICT가 1만 8천명, 섬유가 1만 2천명, 석유화학 9천명, 철강 7천명, 가전 6천명의 고용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한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수혜를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 6.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주요 연구기관의 한-미 FTA 평가는 양국의 상대국 시장점유율 증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대비 미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 및 직접투자 증가 등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끔직한 한-미 FTA로 인해 미국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으로 한-미 FTA가 종료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및 고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상품교역만을 고려할 때 연평균 32.5억 달러의 수출이 감소하고 3.2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상품, 서비스, 투자 모두를 고려할 때 연평균 53.9억 달러의 수출이 감소하고 4.8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 양국 모두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종료가 아닌 재협상을 유도하고 향후 FTA 활용 제고와 양국 간 균형적인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3장 한-미 FTA 발효 후 현황 분석

### 제1절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양허 현황

#### 1. 미국의 관세양허 현황

미국 MFN 관세 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상품분류 11,081품목(HS 8단위 98~99류를 제외) 중 37% 정도의 4,071개 품목이 무관세이며, 종가세가 52.4%인 5,809개, 종량세가 6.9%인 765개, 종량세와 종가세로 함께 정의된 품목이 393개로 구성되어 있다. 종가세로 정의된 품목들의 평균 MFN 관세율은 4.3%이다.

[표 3-1] 미국 MFN 관세 양허 현황 (2017.3.3.기준)

|     | 무관세품목 | 종가세   | 종량세  | 종량+종가 | 기타   | 전체     |
|-----|-------|-------|------|-------|------|--------|
| 품목수 | 4,071 | 5,809 | 765  | 393   | 43   | 11,081 |
| 비중  | 36.7% | 52.4% | 6.9% | 3.5%  | 0.4% |        |

자료: USITC(dataweb.usitc.gov)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HS 8단위 기준, HS 98~99류 제외).

[그림 3-1] 한-미 FTA 미국 관세양허 현황 (2017.3.3.기준)



자료: USITC(dataweb.usitc.gov)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S 8단위 기준)

주: HS 98~99류 단위 및 HS 2017년 358개 필드 값없음 품목 제외 (전체 9,553개 품목)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에는 미국 양허 종가세 4,02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2013년에 8개, 3차 년도인 2014년에 333개, 5차 년도인 2016년에 612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한-미 FTA 발효이후, 2014년과 2016년에는 3차 년도와 5차 년도 관세 인하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관세 FREE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7년 1월 1일 기준 95%의 품목이 무관세이거나 특혜관세가 적용되어 관세 FREE이며, 503개 품목에 관세가 남아있다.

2017년 3월 3일 기준 9,553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평균 MFN 관세율은 4.3%이며, 한-미 FTA 미국 양허 평균 관세율은 0.4% 정도이다.

**[표 3-2] 미국의 MFN 관세율과 한-미 FTA 특혜관세율 비교**

| MFN 관세율 | KOR2012 | KOR2013 | KOR2014 | KOR2015 | KOR2016 |
|---------|---------|---------|---------|---------|---------|
| 4.3%    | 1.4%    | 1.1%    | 0.8%    | 0.6%    | 0.4%    |

자료: USITC(dataweb.usitc.gov)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S 8단위 기준, HS 98~99류 단위 제외)

2017년 3월 3일 기준으로 503개<sup>16)</sup>의 품목에 관세가 남아있으며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들은 한국을 제외한 미국이 맺고 있는 대부분의 FTA에서는 0%의 특혜 관세를 적용하고 있거나 한국을 포함한 일부 FTA에만 관세가 남아 있는 경우이다.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제24류 담배 제품으로서 17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남아 있는 관세는 10년 균등 철폐 품목들로 2021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담배 제품의 MFN 관세율은 350%로 2012년 한-미 FTA 발효이후 매년 35%씩 균등 인하되고 있지만, 동일한 품목에 대해 미국은 바레인,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0%의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제39류(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가장 많은 품목인 96개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2.1% 정도이다. 남아 있는 관세는 10년 균등철폐 품목들로 2021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제73류(철강제품)에는 7개의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다. 2021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며, 미국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FTA에 대해서는 0%의 관세를 양허하고 있다.

16) 종량세까지 포함할 경우, HS 8단위 11,081개(HS 98~99류 제외) 중 8%에 해당하는 868개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다.

[표 3-3] 제73류 철강 제품 중 미국의 양허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

| 품목번호       | 기본세율  | 협정세율 |
|------------|-------|------|
| 7307.91-10 | 3.30% | 1.3% |
| 7307.91-30 | 3.20% | 1.2% |
| 7307.91-50 | 5.50% | 2.2% |
| 7307.93-30 | 6.20% | 3.6% |
| 7307.93-60 | 5.50% | 3.2% |
| 7307.93-90 | 4.30% | 2.5% |
| 7321.11-10 | 5.70% | 2.2% |

제87류(일반 차량)에는 화물자동차 6개 품목 제8704.21-00호, 제8704.22-50호, 제8704.23-00호, 제8704.31-00호, 제8704.32-00호, 제8704.90-00호)에 대해 기본세율과 동일한 25% 세율이 2018년까지 적용되며 2019년 16.6%로 2020년 8.3%로 균등 인하되다가 2021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동일한 제품에 대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FTA에는 0% 관세를 양허하고 있다.

제84류(기계제품)에는 식기 세척기(제8422.11-00호), 세탁기(제8450.11-00호, 제8450.20-00호, 제8450.90-40호 등), 건조기(제8451.21-00호, 제8451.29-00호, 제8451.90-30), 볼베어링·롤러 베어링 관련 3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남아 있으며 2021년 완전 철폐될 예정으로 미국은 한-미 FTA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對한 양허 관세 중에서 2017년 3월 기준 아직 관세가 남아있는 류별 품목수와 이들의 비중 및 평균관세율을 [표 3-4]에 정리하였다.

[표 3-4] 미국의 對한 양허 有관세 품목 현황 (2017.3.3.기준)

| 분류(류) | 품목 명            | 평균 관세  | 품목 수 | 수입비중  |
|-------|-----------------|--------|------|-------|
| 2     | 육과 식용 설육        | 17.0%  | 6    |       |
| 3     | 어패류             | 1.3%   | 18   | 0.2%  |
| 4     | 낙농품, 조란, 천연꿀    | 4.6%   | 43   | 0.0%  |
| 7     | 채소              | 5.8%   | 5    | 0.0%  |
| 8     | 과실/견과류          | 5.8%   | 4    | 0.1%  |
| 10    | 곡물              | 7.0%   | 1    | 0.0%  |
| 12    | 채유용 종자/인삼       | 70.3%  | 3    | 0.0%  |
| 15    | 동식물성 유지         | 5.0%   | 3    | 0.0%  |
| 16    | 육/어류 조제품        | 5.1%   | 20   | 0.1%  |
| 17    | 당류 설탕과자         | 2.6%   | 5    | 0.0%  |
| 18    | 코코아, 초코렛        | 5.0%   | 1    | 0.0%  |
| 19    |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 4.5%   | 4    | 0.2%  |
| 20    | 채소/과실의 조제품      | 12.5%  | 21   | 0.1%  |
| 21    | 기타의 조제식료품       | 4.6%   | 5    | 0.1%  |
| 24    | 담배              | 175.0% | 7    | 0.1%  |
| 29    | 유기화학품           | 2.5%   | 11   | 1.6%  |
| 32    |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 3.0%   | 4    | 0.2%  |
| 39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2.1%   | 96   | 2.9%  |
| 42    | 가죽제품            | 6.5%   | 8    | 0.1%  |
| 44    | 목재, 목탄          | 2.2%   | 33   | 0.0%  |
| 45    | 코르크/짚           | 7.0%   | 1    | 0.0%  |
| 46    | 조물재료의 제품        | 9.0%   | 2    | 0.0%  |
| 52    | 면               | 2.0%   | 1    | 0.2%  |
| 54    | 인조필라멘트섬유        | 5.5%   | 33   | 0.3%  |
| 56    | 워딩부직포           | 4.0%   | 1    | 0.1%  |
| 58    | 특수직물            | 3.0%   | 1    | 0.0%  |
| 59    | 침투, 도포한 직물      | 2.3%   | 3    | 0.2%  |
| 60    | 편물              | 5.1%   | 11   | 0.2%  |
| 61    | 의류(편물제)         | 10.7%  | 6    | 0.3%  |
| 62    | 의류(편물제이외)       | 8.0%   | 6    | 0.0%  |
| 64    | 신발류             | 31.7%  | 15   | 0.0%  |
| 69    | 도자제품            | 8.9%   | 7    | 0.0%  |
| 70    | 유리와 유리제품        | 6.6%   | 33   | 0.2%  |
| 71    | 귀석, 반귀석, 귀금속    | 5.0%   | 3    | 0.4%  |
| 73    | 철강제품            | 2.1%   | 7    | 2.5%  |
| 76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1.8%   | 19   | 0.3%  |
| 82    | 비금속, 제공구, 스푼/포크 | 6.5%   | 2    | 0.4%  |
| 83    | 각종 비금속 제품       | 1.0%   | 1    | 0.7%  |
| 84    | 보일러, 기계류        | 1.7%   | 33   | 14.4% |
| 85    | 전기기기, TV, VTR   | 3.0%   | 4    | 22.4% |
| 87    | 일반차량            | 25.0%  | 6    | 29.9% |
| 91    | 시계              | 5.7%   | 3    | 0.0%  |
| 94    | 가구류, 조명기구       | 6.0%   | 2    | 0.5%  |
| 96    | 잡품              | 7.3%   | 6    | 0.2%  |
| 총합계   |                 | 8.2%   | 504  |       |

주: 평균 특혜관세는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들의 평균 특혜 관세임. (HS 10단위 기준)

수입비중은 미국의 2016년 총수입액 대비 각류의 수입 비중임. (자료: UNComtrade)

## 2. 한국의 관세 양허 현황

2017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은 HS 10단위 12,198개 품목 중 9.2%인 1,118개 품목에 관세가 아직 남아 있다. 미국의 전체 품목 중 5.3%인 504개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는 것과 비교하여 조금 높은 수준이다.

[표 3-5] 한국의 對美 관세양허 현황 (2017.5 기준)

|      | 無관세    | 有관세   | 未양허  | 총합계    |
|------|--------|-------|------|--------|
| 품목 수 | 11,064 | 1,118 | 16   | 12,198 |
| 비중   | 90.7%  | 9.2%  | 0.1% | 100%   |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3.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S 10단위 기준)

또한, 제10류(곡물)에 6개, 제11류(밀가루·전분)에 4개, 제18류(코코아·초콜릿)에 2개, 제19류(곡물·곡분의 주제품과 빵류)에 4개 등 총 16개 未양허 품목이 남아 있다.

[표 3-6] 한국의 未양허 품목 현황 (2017.5 기준)

| 품목번호         | 품명                                     |
|--------------|----------------------------------------|
| 1006.10-0000 | 벼                                      |
| 1006.20-1000 | 메현미                                    |
| 1006.20-2000 | 찰현미                                    |
| 1006.30-1000 | 멥쌀                                     |
| 1006.30-2000 | 찹쌀                                     |
| 1006.40-0000 | 쇄미(broken rice)                        |
| 1102.90-2000 | 쌀가루                                    |
| 1103.19-3000 | 쌀로 만든 것                                |
| 1103.20-2000 | 쌀로 만든 것                                |
| 1104.19-1000 | 쌀로 만든 것                                |
| 1806.90-2290 |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br>가루반죽)의 기타 |
| 1806.90-2999 |                                        |
| 1901.20-1000 | 쌀가루의 것                                 |
| 1901.20-9000 | 기타                                     |
| 1901.90-9091 | 쌀가루의 것                                 |
| 1901.90-9099 | 기타                                     |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3.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S 10단위 기준)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2류(육과 식용설육)의 경우 95개 품목에 8.5%정도의 평균 관세가 남아 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소고기(제0201호 내지 제0202호)의 경우, 2017년 5월 기준으로 24%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26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표 3-7] 소고기 품목의 관세양허 이행 기간별 세율

| 품목번호         | 품 명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 0201.10-0000 | 도체와 이분도체<br>(신선 or 냉장) | 24  | 21.3 | 18.6 | 16  | 13.3 | 10.6 | 8   | 5.3 | 2.6 | 0   |
| 0201.20-1000 | 갈비                     | 24  | 21.3 | 18.6 | 16  | 13.3 | 10.6 | 8   | 5.3 | 2.6 | 0   |
| 0201.20-9000 | 기타                     | 24  | 21.3 | 18.6 | 16  | 13.3 | 10.6 | 8   | 5.3 | 2.6 | 0   |
| 0201.30-0000 | 뼈 없는 것                 | 24  | 21.3 | 18.6 | 16  | 13.3 | 10.6 | 8   | 5.3 | 2.6 | 0   |
| 0202.10-0000 | 도체와 이분도체<br>(냉동)       | 24  | 21.3 | 18.6 | 16  | 13.3 | 10.6 | 8   | 5.3 | 2.6 | 0   |
| 0202.20-1000 | 갈비                     | 24  | 21.3 | 18.6 | 16  | 13.3 | 10.6 | 8   | 5.3 | 2.6 | 0   |
| 0202.20-9000 | 기타                     | 24  | 21.3 | 18.6 | 16  | 13.3 | 10.6 | 8   | 5.3 | 2.6 | 0   |

제3류(어패류)의 경우 가장 많은 품목인 202개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다. 평균관세율은 7.4%정도이며 2021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제9류(커피/차/향신료) 제품에는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 중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26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2017년 5월 기준 녹차(제0902.10호, 제0902.20호)에 342.4%, 고추(제0904.21호, 제0904.22호)에 180% 또는 4,140원/kg 양자 중 고액(율), 생강(제0910.11호, 제0910.12호)에 251.5%또는 620원/kg 양자 중 고액(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제22류(음료/주류) 제품에는 11개 품목에 평균 5.1%의 관세가 남아 있다. 조주정과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은 2016년 관세가 완전 철폐되며, 나머지 얼음, 과일주스, 식혜, 맥주, 오가피주, 브랜디류 등은 2021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제90류(의료기기)에는 심전계, 초음파 영상진단기, 자기공명 촬영기기, 내시경, 레이저 작동식 기기 등 11개 품목에 3.2%정도의 관세가 남아 있으며 매년 0.8%씩 차등 인하되어 2021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對미 양허 관세 중에서 2017년 5월 기준 아직 관세가 남아있는 류별 품목수와 이들 품목들의 비중 및 평균관세율을 [표 3-8]에 정리하였다.

[표 3-8] 한국의 對美 양허 有관세 품목 현황 (2017.5 기준)

| 분류(류) | 품목 명               | 평균 관세  | 품목 수  | 수입비중   |
|-------|--------------------|--------|-------|--------|
| 1     | 산동물                | 11.8%  | 16    | 0.06%  |
| 2     | 육과 식용 설육           | 10.4%  | 95    | 3.27%  |
| 3     | 어패류                | 7.4%   | 202   | 0.52%  |
| 4     | 낙농품, 조란, 천연꿀       | 14.6%  | 58    | 0.46%  |
| 5     | 기타 동물성 생산품         | 12.0%  | 14    | 0.08%  |
| 6     | 산수목/꽃              | 4.1%   | 30    | 0.01%  |
| 7     | 채소                 | 24.5%  | 86    | 0.05%  |
| 8     | 과실/견과류             | 22.9%  | 50    | 1.66%  |
| 9     | 커피/차/향신료           | 308.1% | 10    | 0.15%  |
| 10    | 곡물                 | 183.8% | 16    | 2.81%  |
| 11    | 곡물의분과 조분말가루, 전분    | 79.0%  | 27    | 0.03%  |
| 12    | 채유용 종자/인삼          | 182.4% | 42    | 1.29%  |
| 13    | 식물성 엑스             | 154.7% | 9     | 0.05%  |
| 14    | 기타 식물성 생산품         | 1.2%   | 9     | 0.01%  |
| 15    | 동식물성 유지            | 6.5%   | 13    | 0.25%  |
| 16    | 육/어류 조제품           | 13.6%  | 27    | 0.12%  |
| 17    | 당류 설탕과자            | 20.5%  | 10    | 0.12%  |
| 18    | 코코아, 초코렛           | 13.9%  | 4     | 0.19%  |
| 19    |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 8.8%   | 12    | 0.23%  |
| 20    | 채소/과실의 조제품         | 15.4%  | 49    | 0.58%  |
| 21    | 기타의 조제식료품          | 31.7%  | 23    | 1.69%  |
| 22    | 음료, 주류, 식초         | 5.1%   | 11    | 0.28%  |
| 23    | 조제사료               | 10.4%  | 11    | 0.75%  |
| 24    | 담배                 | 13.2%  | 27    | 0.07%  |
| 27    | 광물성연료, 에너지         | 2.3%   | 5     | 4.48%  |
| 28    | 무기화합물              | 2.7%   | 3     | 1.32%  |
| 29    | 유기화합품              | 2.3%   | 25    | 3.69%  |
| 33    | 향료, 화장품            | 104.3% | 3     | 1.04%  |
| 34    | 비주, 계명활성제, 왁스      | 3.2%   | 2     | 0.53%  |
| 35    |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 38.8%  | 23    | 0.20%  |
| 38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2.9%   | 2     | 3.02%  |
| 39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2.6%   | 13    | 3.43%  |
| 40    | 고무와 그 제품           | 3.2%   | 6     | 0.52%  |
| 41    |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 0.8%   | 2     | 0.66%  |
| 44    | 목재, 목탄             | 4.0%   | 101   | 0.24%  |
| 68    | 석, 시멘트, 석면제품       | 3.2%   | 4     | 0.28%  |
| 71    | 귀석, 반귀석, 귀금속       | 2.6%   | 1     | 0.44%  |
| 84    | 보일러, 기계류           | 3.4%   | 62    | 15.62% |
| 85    | 전기기기, TV, VTR      | 3.2%   | 2     | 14.76% |
| 86    | 철도차량               | 2.0%   | 1     | 0.06%  |
| 90    | 광학/의료/측정/검사/ 정밀 기기 | 3.2%   | 11    | 7.98%  |
| 94    | 가구류, 조명기구          | 3.2%   | 1     | 0.26%  |
| 총합계   |                    | 19.7%  | 1,118 |        |

주: 평균 특혜관세는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들의 평균 특혜 관세임. (HS 10단위 기준)

수입비중은 한국의 2016년 총수입액 대비 각류의 수입 비중임. (자료: UNComtrade)

### 3.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한-미 FTA 양당사국의 관세양허 현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월 1일 기준 미국은 95%의 품목이 무관세이거나 특혜관세가 적용되어 관세 FREE이며, 503개 종가세 적용 품목에 관세가 남아있다. 종가세가 적용되고 있는 9,553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평균 MFN 관세율은 4.3%이며, 한-미 FTA 미국이 양허한 평균특혜 관세율은 0.4% 정도이다.

한편, 2017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은 HS 10단위 12,198개 품목 중 9.2%인 1,118개 품목에 관세가 아직 남아 있고, 16개는 未양허 품목이다. 미국의 전체 품목의 5.3%인 504개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는 것과 비교하여 조금 높은 수준이다.

## 제2절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품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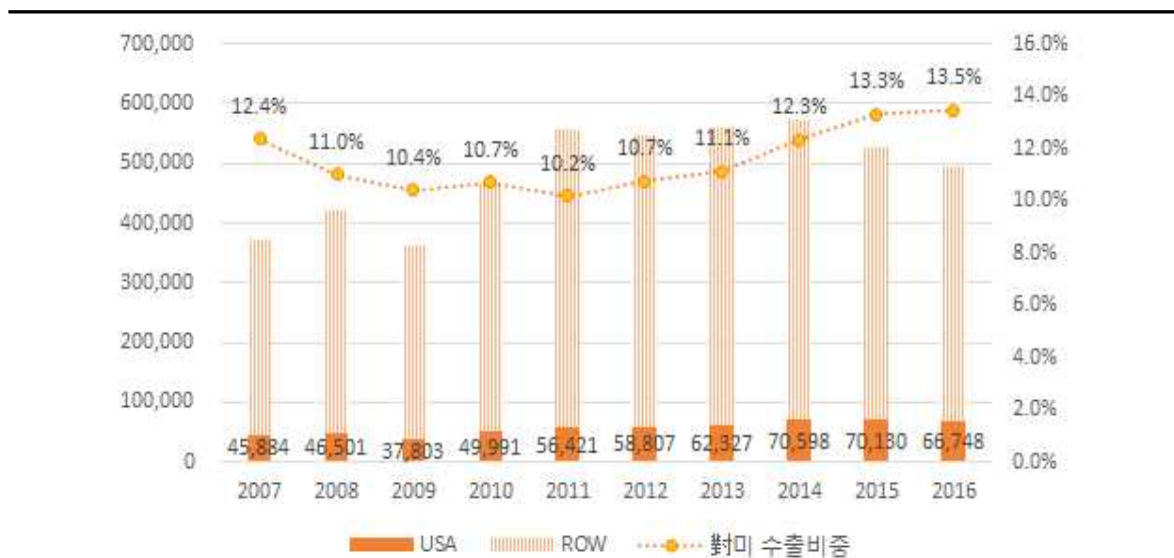
### 1. 한-미 FTA 발효전후 수출·입 현황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교역 부진으로 인해 양국의 對세계 교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교역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동반 상승하였다.

#### (1) 한-미 FTA 발효전후 한국의 수출·입 동향

한국의 對미 수출은 세계금융위기 당시 2009년 378억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7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후 2015년과 2016년 한국의 총수출과 對미 수출 모두 하락하였으나 수출 비중은 2012년 한-미 FTA 발효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총 수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3.5%까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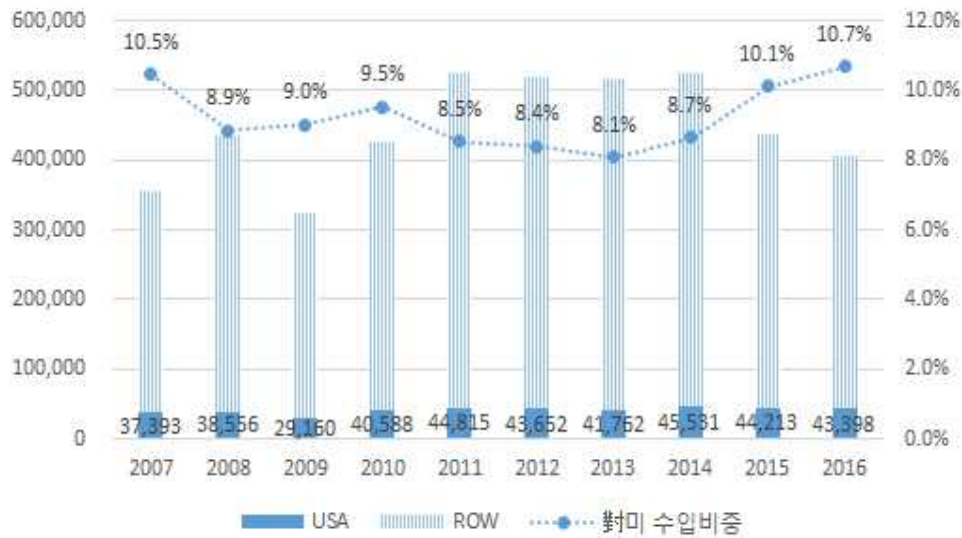
[그림 3-2] 한-미 FTA 발효전후 한국의 對미 수출 동향



자료: UN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reporter: Korea, 단위: 100만 달러).

한국의 對미 수입도 수출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2009년 291억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하다 꾸준히 상승하여 2014년 455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수입 비중도 한-미 FTA 발효이후 2013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에는 총수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0.7%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3-3] 한-미 FTA 발효전후 한국의 對美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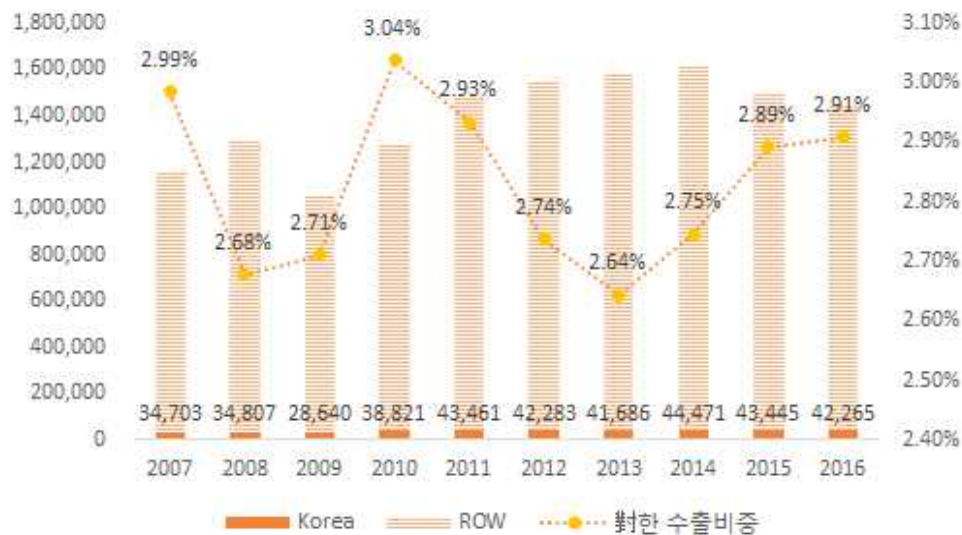


자료: UN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reporter: Korea, 단위: 100만 달러)

## (2) 한-미 FTA 발효전후 미국의 수출·입 동향

미국의 對한 수출비중은 2012년 한-미 FTA 발효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91%까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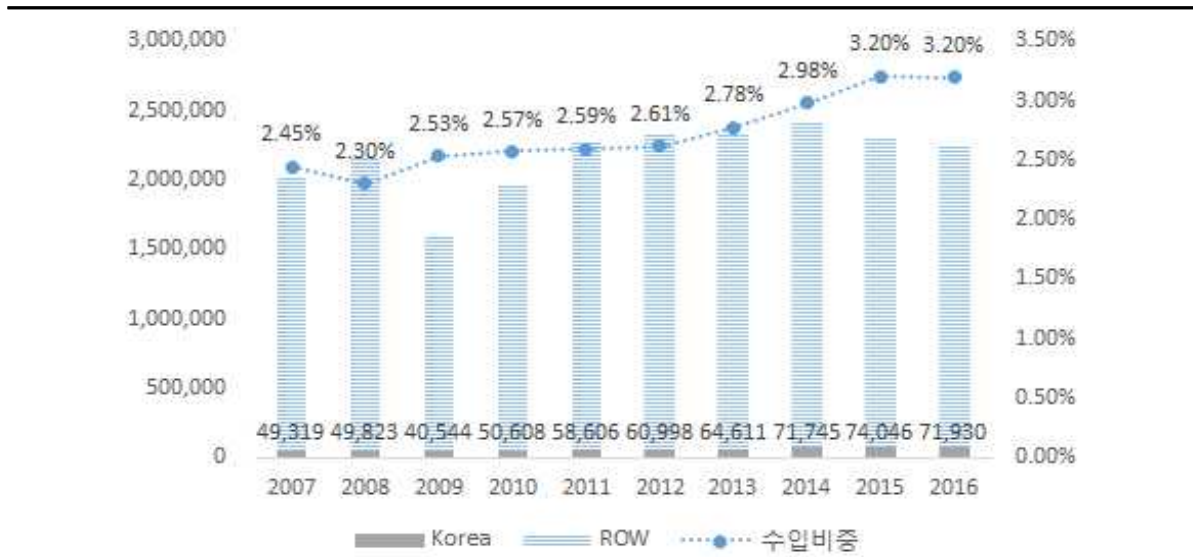
[그림 3-4] 한-미 FTA 발효전후 미국의 對한 수출 동향



자료: UN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reporter: USA, 단위: 100만 달러)

미국의 對한 수입 비중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2012년 한-미 FTA 발효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이후 총 수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3.2%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3-5] 한-미 FTA 발효전후 미국의 對한 수입 동향



자료: UN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reporter: USA, 단위: 100만 달러)

## 2. 한-미 FTA 발효 전후 품목별 수출·입 현황

### (1) 한-미 FTA 발효 후 품목별 누적 수출·입금액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이후 5년 동안 한국의 누적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제87류(일반차량), 제85류(전기기기/TV/VTR), 제84류(보일러/기계류), 제27류(광물성연료/에너지) 등이며, 한국의 누적수입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제84류(보일러/기계류), 제85류(전기기기/TV/VTR), 제90류(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제88류(항공기/우주선과 그 부분품), 제27류(광물성연료/에너지) 등이다.

특히 제87류(일반차량), 제85류(전기기기/TV/VTR), 제84류(보일러/기계류), 제27류(광물성연료/에너지), 제73류(철강제품),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72류(철강), 제90류(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제29류(유기 화합품), 제88류(항공기/우주선과 그 부분품),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등 11개 품목들은 누적 수출·입 상위 15위 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품목들이다.

그 외에 제40류(고무제품), 제89류(선박), 제48류(종이), 제94류(가구류) 등의 누적 수출액이 많았으며, 제10류(곡물), 제2류(육과 식용설육), 제30류(의료용품), 제8류(과실/견과류) 등의 누적 수입액이 많았다.

[표 3-9] 한-미 FTA 발효 전후 수출·입 누적액 상위 15위 품목

| 순위 | 품목 명             | 後수출누적액      | 품목 명             | 後수입누적액     |
|----|------------------|-------------|------------------|------------|
| 1  | 일반차량             | 101,956,010 | 보일러/기계류          | 36,853,431 |
| 2  | 전기기기/TV/VTR      | 61,543,547  | 전기기기/TV/VTR      | 32,413,519 |
| 3  | 보일러/기계류          | 56,878,896  |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 16,937,361 |
| 4  | 광물성연료/에너지        | 15,119,044  | 항공기/우주선, 그 부분품   | 10,498,584 |
| 5  | 철강제품             | 12,839,069  | 광물성연료/에너지        | 10,380,167 |
| 6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9,540,311   | 일반차량             | 7,642,238  |
| 7  | 철강               | 9,215,046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7,627,883  |
| 8  | 고무와 그 제품         | 9,092,631   | 유기 화합품           | 7,383,310  |
| 9  |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 6,124,305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7,018,524  |
| 10 | 유기 화합품           | 6,019,052   | 곡물               | 6,518,663  |
| 11 | 선박               | 4,009,930   | 육과 식용 설육         | 5,982,335  |
| 12 | 항공기/우주선, 그 부분품   | 3,960,501   | 의료용품             | 5,060,151  |
| 13 | 지와 판지            | 2,130,307   | 철강제품             | 3,813,637  |
| 14 | 가구류, 조명기구        | 1,647,963   | 철강               | 3,689,109  |
| 15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1,540,728   | 과실/견과류           | 3,613,386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단위: 1,000 달러

주: 後는 2012년 3월~2017년 2월까지의 누적 금액, 양국의 동일 선정 품목은 음영 처리하여 표시

## (2) 한-미 FTA 발효 후 품목별 누적 무역수지 변화

무역수지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다. 2016년 미국이 발표한 對한 수출액은 423억 달러이며 한국이 발표한 對미 수입액은 442억 달러로 미국이 발표한 수출액보다 많다. 반면에 미국이 발표한 對한 수입액은 719억 달러로 한국이 발표한 對미 수출액 701억 달러 보다 많다. 교역액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 정도 큰 것이 보통인데, 이는 수출이 FOB 가격으로 수입은 CIF 가격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입 교역액을 모두 고려한 무역수지를 살펴보아도 미국이 발표한 무역수지 적자 296억 달러와 한국이 발표한 무역수지 흑자 259억 달러 사이에는 37억 달러 정도의 통계상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불일치로 미국이 발표한 對한 무역적자폭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17)</sup>.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무역통계를 토대로 한-미 FTA 발효 후 무역수지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전후 5년 동안 한국의 누적무역수지 변화가 가장 큰 품목은 제87류(일반차량), 제84류(보일러/기계류), 제72류(철강), 제10류(곡물), 제73류(철강제품) 등이다. 누적무역수지 변화 증가액이 큰 품목들은 제10류(곡물)을 제외한 누적 수출

17) 2010~2015년 무역협회가 발표한 한국의 대미 연평균 경상수지는 58억 달러이며,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금액은 97억 달러로서 연평균 40억 정도의 차이가 존재함.(최남석, 2016)

액 순위 상위 품목들이다. 이중 일반차량은 누적 수출액 순위가 1인 동시에 누적무역수지 변화액도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품목인 곡물의 경우, 한-미 FTA발효 이후 수입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표 3-10] 한-미 FTA 발효 전후 무역수지증가폭이 큰 10대 품목

| 순위 | 분류(류) | 품목 명           | 前무역수지       | 後무역수지      | 무역수지 변화액   |
|----|-------|----------------|-------------|------------|------------|
| 1  | 87    | 일반차량 (1)       | 50,282,857  | 94,313,764 | 44,030,907 |
| 2  | 84    | 보일러/기계류 (3)    | 6,497,006   | 20,025,461 | 13,528,455 |
| 3  | 72    | 철강 (7)         | -1,075,596  | 5,525,931  | 6,601,527  |
| 4  | 10    | 곡물             | -11,565,533 | -6,514,640 | 5,050,893  |
| 5  | 73    | 철강제품 (5)       | 5,469,819   | 9,025,434  | 3,555,615  |
| 6  | 40    | 고무와 그 제품 (8)   | 5,537,123   | 7,962,836  | 2,425,713  |
| 7  | 39    | 플라스틱과 그 제품 (6) | -160,772    | 1,912,431  | 2,073,203  |
| 8  | 89    | 선박 (11)        | 2,175,487   | 3,810,727  | 1,635,240  |
| 9  | 88    | 항공기 (12)       | -7,762,735  | -6,538,090 | 1,224,645  |
| 10 | 94    | 가구류/조명기구 (14)  | 141,863     | 1,164,437  | 1,022,574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단위: 1,000 달러

주: 前은 2007년 3월~2012년 2월, 後는 2012년 3월~2017년 2월까지의 누적 금액, ( )는 누적 수출액 순위

[표 3-11] 한-미 FTA 발효 전후 무역수지감소폭이 큰 10대 품목

| 순위 | 분류(류) | 품목 명                 | 前무역수지      | 後무역수지       | 무역수지 변화액   |
|----|-------|----------------------|------------|-------------|------------|
| 1  | 85    | 전기기기/TV/VTR (2)      | 35,107,336 | 29,130,023  | -5,977,313 |
| 2  | 90    |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3) | -8,274,198 | -10,813,050 | -2,538,852 |
| 3  | 2     | 육과 식용 설육 (11)        | -3,469,238 | -5,981,269  | -2,512,031 |
| 4  | 30    | 의료용품 (12)            | -2,565,589 | -4,784,683  | -2,219,094 |
| 5  | 8     | 과실/견과류 (15)          | -1,465,143 | -3,450,344  | -1,985,201 |
| 6  | 27    | 광물성연료/에너지 (5)        | 6,019,855  | 4,738,877   | -1,280,978 |
| 7  | 21    | 기타의 조제식료품 (18)       | -900,466   | -2,180,426  | -1,279,960 |
| 8  | 38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9)      | -4,315,712 | -5,477,796  | -1,162,084 |
| 9  | 4     | 낙농품/조란/천연꿀 (31)      | -476,411   | -1,286,450  | -810,039   |
| 10 | 12    | 채유용 종자/인삼 (16)       | -2,495,211 | -3,150,628  | -655,417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단위: 1,000 달러

주: 前은 2007년 3월~2012년 2월, 後는 2012년 3월~2017년 2월까지의 누적 금액, ( )는 누적 수입액 순위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전후 5년 동안 한국의 누적무역수지 감소 액이 가장 큰 품목은 제85류(전기기기/TV/VTR), 제90류(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제2류(육과 실용설육), 제30류(의료용품), 제8류(과실/견과류) 등이다. 누적무역수지 변화 감소액이 큰 품목들은 제4류(낙농품/조란/천연꿀)을 제외한 누적 수입액 순위 20위 미만인 무역수지 적자 품목들이다. 반면에 무역수지 흑자 품목인 제85류(전기기기/TV/VTR)와 제27류(광물성 연료/에너지) 품목의 경우, 한-미 FTA발효 이후 수출증가율보다 수입증가율이 더 높아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전후 5년 동안의 교역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산업내 무역지수를 살펴보면, 제88류(항공기/우주선과 그 부분품), 제93류(무기/총포탄과 그 부분품), 제76류(알루미늄 제품), 제70류(유리제품), 제36류(화약류), 제37류(사진이나 영화용 재료), 제33류(향료/화장품/화장용품), 제93류(무기류), 제96류(잡품), 제79류(아연과 그 제품) 품목들의 산업내 무역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들의 산업내 무역지수의 증가로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된 경향을 보이며 이는 이 품목들의 양국 간 경쟁이 더 치열해졌음을 의미한다.

**[표 3-12] 한-미 FTA 발효 후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된 품목**

| 품목 명           | 수출<br>증가율 | 수입<br>증가율 | 前무역수지      | 後무역수지      | 무역수지<br>변화 액 | 前산업내<br>무역지수 | 後산업내<br>무역지수 |
|----------------|-----------|-----------|------------|------------|--------------|--------------|--------------|
| 항공기/우주선, 그 부분품 | 49%       | 1%        | -7,762,735 | -6,538,090 | 1,224,645    | 0.41         | 0.55         |
| 무기/총포탄, 그 부분품  | 125%      | 1%        | -975,372   | -550,602   | 424,770      | 0.42         | 0.74         |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74%       | 5%        | -2,136,554 | -1,873,674 | 262,880      | 0.35         | 0.51         |
| 유리와 유리제품       | 88%       | 12%       | -747,980   | -628,207   | 119,773      | 0.44         | 0.64         |
| 화약류/화공품/성냥 등   | 652%      | 37%       | -46,233    | -29,085    | 17,148       | 0.25         | 0.80         |
|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109%      | -67%      | -379,561   | 85,156     | 464,717      | 0.52         | 0.89         |
| 향료/화장품/화장용품    | 306%      | 41%       | -1,113,138 | -1,300,649 | -187,511     | 0.30         | 0.60         |
| 무기화합물          | 125%      | 1%        | -975,372   | -550,602   | 424,770      | 0.42         | 0.74         |
| 잡품             | 32%       | 49%       | 280,157    | 284,565    | 4,408        | 0.48         | 0.64         |
| 아연과 그 제품       | -93%      | -44%      | 97,476     | 4,233      | -93,243      | 0.08         | 0.59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단위: 1,000 달러

주: 前은 2007년 3월~2012년 2월, 後는 2012년 3월~2017년 2월까지의 누적 금액

특히 제88류(항공기/우주선과 그 부분품), 제93류(무기류), 제70류(유리제품), 제36류(화약류), 제37류(사진이나 영화용 재료), 제28류(무기화합물) 품목들은 무역수지 적자 품목이었으나, 한-미 FTA 발효이후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더 많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산업내 무역지수가 증가하여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된 경향을 보였다. 이들 품목들에 대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향상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양국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발효 전부터 무역수지 적자 품목이었던 제33류(향료/화장품/화장용품)의 경우 그 적자폭은 증가하였으나,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더 많이 증가하여 산업내 무역지수가 증가,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역수지 적자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이후 이들 품목들에 대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무역수지 흑자 품목이었던 제96류(잡품)의 경우 그 흑자폭은 증가하였으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산업내 무역지수가 증가,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역수지 흑자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이후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품목이었던 제79류(아연과 그제품)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크게 감소하였고 산업내 무역지수 증가로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전후 5년 동안의 교역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산업내 무역지수를 살펴보면, 제72류(철강), 제73류(철강의 제품), 제83류(비금속 제품), 제82류(비금속 공구/도구), 제94류(가구/조명기구) 품목들의 산업내 무역지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들의 산업내 무역지수의 감소로 산업내 무역에서 산업간 무역으로 전환된 경향을 보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더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들 품목들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큰 누적 수출액 상위 품목들이다. 한-미 FTA 발효이후 이들 품목들의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더 크게 변화하여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산업내 무역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3] 한-미 FTA 발효 후 산업내 무역에서 산업간 무역으로 전환된 품목**

| 품목 명           | 수출<br>증가율 | 수입<br>증가율 | 前무역수지      | 後무역수지     | 무역수지<br>변화 액 | 前산업내<br>무역지수 | 後산업내<br>무역지수 |
|----------------|-----------|-----------|------------|-----------|--------------|--------------|--------------|
| 철강 (7)         | 57%       | -88%      | -1,075,596 | 5,525,931 | 6,601,527    | 0.92         | 0.57         |
| 철강의 제품 (5)     | 50%       | 19%       | 5,469,819  | 9,025,434 | 3,555,615    | 0.53         | 0.46         |
| 가구/조명기구 (14)   | 159%      | -2%       | 141,863    | 1,164,437 | 1,022,574    | 0.87         | 0.45         |
| 비금속 제품 (16)    | 159%      | 21%       | 304,119    | 1,166,606 | 862,487      | 0.65         | 0.38         |
| 비금속 공구/도구 (17) | 67%       | 3%        | 574,152    | 1,162,792 | 588,640      | 0.53         | 0.37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단위: 1,000 달러

주: 前은 2007년 3월~2012년 2월, 後는 2012년 3월~2017년 2월까지의 누적 금액, ( )는 누적 수출액 순위

### 3.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 품목 수 현황

한-미 FTA 발효 이후 전체 수출품목수와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수출품목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다. USITC가 발표한 HS 8단위 무역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수출품목수에서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품목수의 비중은 2012년 73.8%에서 2016년 89.5%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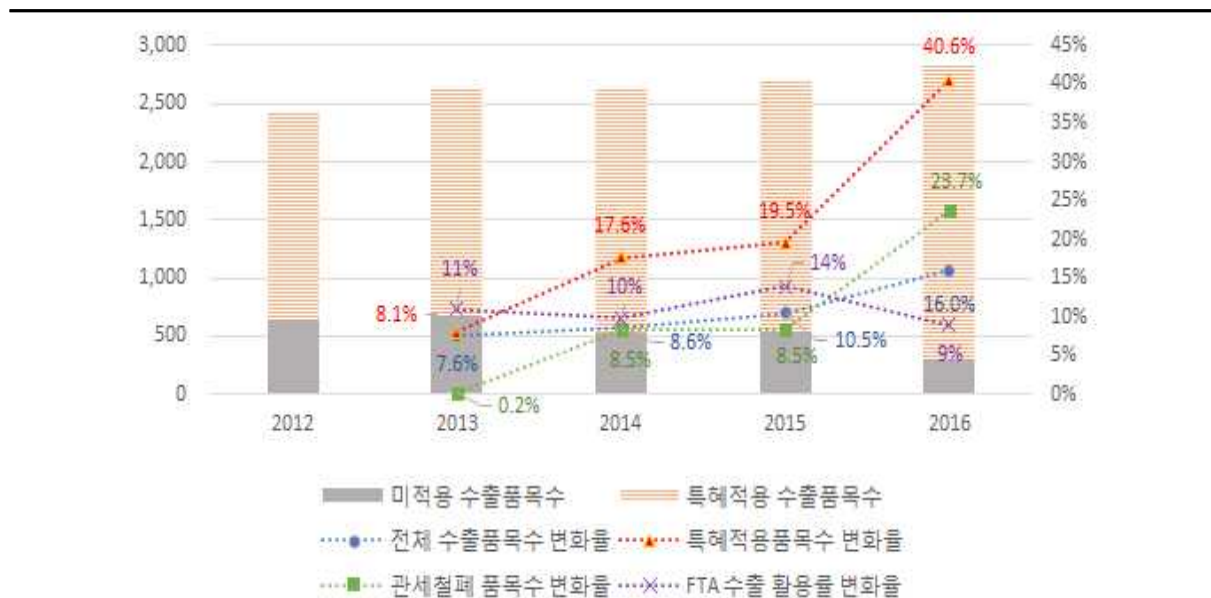
[표 3-14] 한-미 FTA 발효 후 수출품목수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특혜적용 받은 수출품목수 | 1,798 | 1,944 | 2,115 | 2,149 | 2,528 |
| 전체 수출품목수      | 2,435 | 2,619 | 2,644 | 2,690 | 2,824 |
| 특혜적용 수출품목 비중  | 73.8% | 74.2% | 80.0% | 79.9% | 89.5% |

자료: USITC(dataweb.usitc.gov) U.S. general import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S 8단위 기준)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품목수 변화율은 한-미 FTA 발효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2012년 대비 40.6%까지 증가하였다. 전체 수출품목수에서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품목수 비중 증가는 수출품목 다변화, 관세철폐 품목 수 증가, 기업의 FTA 활용역량강화로 인한 활용률 증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6] 한-미 FTA 발효 후 수출품목 수



자료: 수출 및 관세 데이터는 USITC(dataweb.usitc.gov)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S 8단위 기준),

FTA 활용률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2012년 FTA 발효년도 대비 변화율

이중 2016년 전체 수출품목수는 2012년 대비 16%까지 증가하였다. 원래 무관세인 4,071개 품목을 제외한 4,026개의 품목이 발효즉시 철폐된 이후 2016년 관세철폐 품목 수는 2012년 대비 23.7%까지 증가하였다. 한-미 FTA 발효 해인 2012년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69.4%이며 매년 2012년 대비 등락을 반복하며 9%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6년에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품목수의 2012년 대비 변화율 40.6%가 다른 변화율들에 비해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품목수의 변화 양상이 관세철폐 품목 수의 변화율의 기울기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보아 관세철폐 품목 수의 변화와 그 변화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 4. 종사자규모별 한국의 對미 수출·입 기업 수 및 교역액 현황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미국과의 교역에 참여한 한국의 수입 업체수가 수출업체 수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많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종사자 250인 미만 기업의 수는 약 2.1배, 250인 이상의 경우는 약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 수가 수출업체 수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많은 반면, 교역액은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對미 수출의 경우 수입에 비해 업체별 교역액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표 3-15] 종사자규모별 한국의 對미 수출·입 기업 수 및 교역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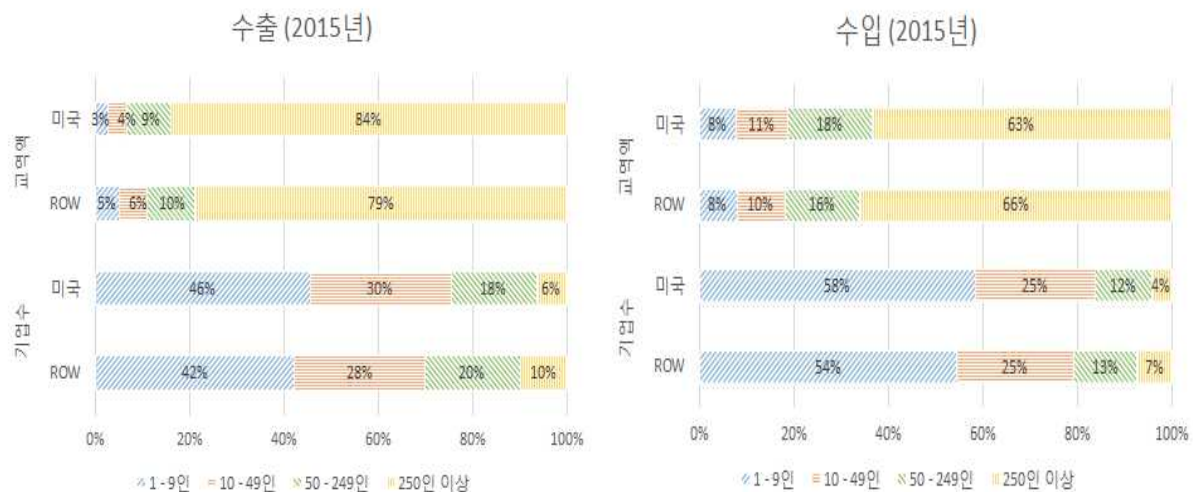
| 유<br>형 | 종사자<br>규모별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
|        |            | 기업수    | 교역액    | 기업수    | 교역액    | 기업수    | 교역액    | 기업수    | 교역액    |
| 수<br>출 | 계          | 18,576 | 58,208 | 18,953 | 61,795 | 19,077 | 69,974 | 19,664 | 69,465 |
|        | 1 - 9인     | 8,690  | 1,922  | 8,708  | 1,800  | 8,603  | 1,872  | 8,965  | 1,812  |
|        | 10 - 49인   | 5,518  | 2,685  | 5,648  | 2,578  | 5,729  | 2,941  | 5,875  | 2,758  |
|        | 50 - 249인  | 3,240  | 5,375  | 3,393  | 5,486  | 3,494  | 7,088  | 3,554  | 6,486  |
|        | 250인 이상    | 1,128  | 48,226 | 1,204  | 51,931 | 1,251  | 58,074 | 1,270  | 58,410 |
| 수<br>입 | 계          | 38,001 | 40,598 | 38,100 | 39,179 | 39,262 | 42,736 | 39,531 | 41,715 |
|        | 1 - 9인     | 22,192 | 3,129  | 22,002 | 2,962  | 22,801 | 3,225  | 23,036 | 3,200  |
|        | 10 - 49인   | 9,693  | 4,412  | 9,739  | 4,366  | 9,981  | 4,840  | 10,014 | 4,633  |
|        | 50 - 249인  | 4,517  | 7,171  | 4,677  | 7,236  | 4,756  | 7,836  | 4,744  | 7,393  |
|        | 250인 이상    | 1,599  | 25,886 | 1,682  | 24,615 | 1,724  | 26,835 | 1,737  | 26,489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교역액 단위, 100만 달러)

종사자규모별 수출·입 기업 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과의 교역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2배 더 많은 수입의 경우 2015년 종사자 250인 이하 업체의 비중이 전체 수입기업의 96%이며 수출은 전체 수출기업의 90% 정도로 수입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기업의 크기가 더 영세한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규모별 수출·입 교역액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기업수의 6%(1,270개)인 종사자 250인 이상의 수출업체가 전체 수출액의 84%를, 전체 수입기업의 4%(1,737개)인 종사자 250인 이상의 수입업체가 전체 수입액의 63%를 교역하고 있다. 수출·입 모두 종사자 250인 이상의 기업이 전체 금액의 상당부분을 교역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7] 종사자규모별 수출·입 기업 수 및 교역액 비중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5.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입 건수 및 금액 현황

### (1) 한-미 FTA 발효 후 수출·입 건수 및 특혜적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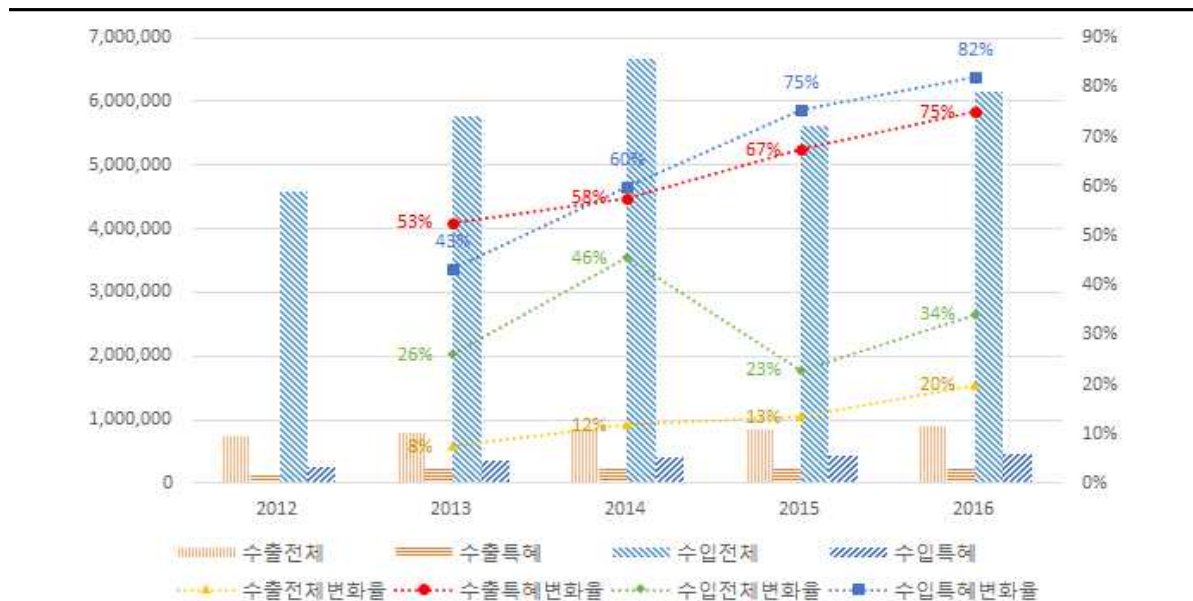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로 확인되는 수출·입의 전체 건수 및 특혜 건수 모두 2012년 한-미 FTA 발효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수입건수가 수출건수에 비해 약 6~8배 많지만, 전체 건수에서 특혜 적용되는 건수의 비중은 수출의 경우 평균 약 26% 정도이며 수입은 이보다 적은 약 7% 정도이다. 종사자 250인 미만인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의 경우 전체 건수 대비 특혜적용 건수의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6]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입 건수 및 특혜 비율

| 기간   | 수출 건수     |           |      | 수입 건수      |           |       |
|------|-----------|-----------|------|------------|-----------|-------|
|      | 전체        | 특혜        | 특혜비율 | 전체         | 특혜        | 특혜 비율 |
| 2012 | 750,261   | 143,935   | 19%  | 4,574,710  | 249,171   | 5%    |
| 2013 | 807,522   | 219,777   | 27%  | 5,767,864  | 357,273   | 6%    |
| 2014 | 838,277   | 226,997   | 27%  | 6,657,290  | 398,030   | 6%    |
| 2015 | 851,101   | 241,064   | 28%  | 5,621,722  | 436,939   | 8%    |
| 2016 | 900,222   | 252,067   | 28%  | 6,139,278  | 453,422   | 7%    |
| 총계   | 4,147,383 | 1,083,840 | 26%  | 28,760,864 | 1,894,835 | 7%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그림 3-8] 한-미 FTA 발효 후 수출·입 건수 변화율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2012년 FTA 발효년도 대비 변화율

한-미 FTA 발효 해인 2012년 대비 2016년에는 전체 수출건수의 경우 20%, 특혜적용 수출건수의 경우 75% 증가하였다. 수입의 경우, 2012년 대비 전체 건수는 34%, 특혜 적용 건수는 82% 증가하였다. 2012년 대비 2016년 총 교역 건수 및 특혜적용 건수의 변화율 모두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 250인 미만의 참여 기업이 많은 수입의 경우, 전체 수입건수 대비 특혜적용을 받은 수입건수의 비중은 수출에 비해 더 낮지만, 특혜 적용을 받은 수입건수의 증가율은 수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한-미 FTA 발효 후 수출·입금액 및 특혜적용 비율 비교

한-미 FTA 발효 이후 교역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전체 금액 및 특혜 금액 모두 2012년 한-미 FTA 발효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 특혜 적용 금액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이는 한-미 FTA 발효 5년차인 2016년에 612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었고 이중 180개 항목이 실제로 수출 특혜적용을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입의 경우 2016년에는 전체 및 특혜 금액 모두 소폭 하락하였지만 수입 특혜 비율은 한-미 FTA 발효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전체 교역액 중에서 특혜 적용된 금액의 비중은 수출의 경우 평균 약 30% 정도이고 수입은 약 36% 정도이다. 앞서 건수로 살펴본 수출 특혜 비중 26%와 수입특혜 비중 7%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의 경우 건수와 금액의 특혜 비중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수입의 경우 건수와 금액의 특혜 비중이 30%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수의 수입건수가 차지하는 금액의 특혜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다수의 수입건수가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7]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입 금액 및 특혜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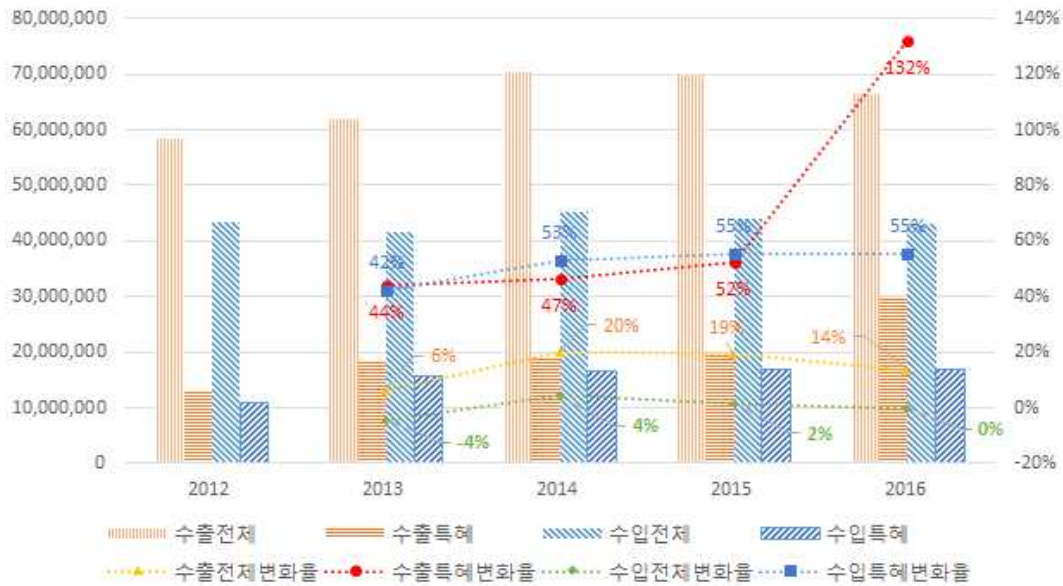
| 기간   | 수출 금액       |            |      | 수입 금액       |            |      |
|------|-------------|------------|------|-------------|------------|------|
|      | 전체          | 특혜         | 특혜비율 | 전체          | 특혜         | 특혜비율 |
| 2012 | 58,524,559  | 12,808,489 | 22%  | 43,340,962  | 10,947,320 | 25%  |
| 2013 | 62,052,488  | 18,444,927 | 30%  | 41,511,916  | 15,553,766 | 37%  |
| 2014 | 70,284,872  | 18,779,596 | 27%  | 45,283,254  | 16,735,679 | 37%  |
| 2015 | 69,832,103  | 19,516,084 | 28%  | 44,024,430  | 17,017,238 | 39%  |
| 2016 | 66,462,312  | 29,738,477 | 45%  | 43,215,929  | 16,987,173 | 39%  |
| 총계   | 327,156,334 | 99,287,573 | 30%  | 217,376,491 | 77,241,176 | 36%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단위: 1,000 달러

2016년에는 한-미 FTA 발효 해인 2012년 대비 전체 수출금액은 14%, 특혜적용 수출금액은 132% 증가하였다. 수입의 경우 전체 금액은 2012년 대비 0.3% 감소하였고, 특혜 적용 금액은 55% 증가하였다. 특혜적용 수출·입 금액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출이 수입에 비해 2012년 대비 조금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건수를 기준으로는 수출에 비해 수입이, 금액을 기준으로는 수입에 비해 수출이 한-미 FTA 발효 해인 2012년에 비해 특혜 적용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입 금액 및 특혜 변화율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2012년 FTA 발효년도 대비 변화율, 금액 단위: 1,000 달러

## 6.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한-미 FTA 양당사국의 수출·입 현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양국의 상품교역현황을 살펴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교역 부진으로 인해 양국의 對세계 교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교역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상대국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이 동반 상승하였다. 또한 한-미 FTA 발효 이후 전체 수출품목 수와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수출품목 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다.

품목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전후 5년 동안의 누적 무역수지 증가 가장 큰 품목은 제87류(일반차량), 제84류(보일러/기계류), 제72류(철강), 제10류(곡물), 제73류(철강제품) 등이다. 반면에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전후 5년 동안의 누적무역수지 감소가 가장 큰 품목은 제85류(전기기기/TV/VTR), 제90류(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제2류(육과 실용설육), 제30류(의료용품), 제8류(과실/견과류) 등이다.

또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전후 5년 동안의 교역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산업내 무역지수를 살펴보면, 제88류(항공기/우주선과 그 부분품), 제93류(무기/총포탄과 그 부분품), 제76류(알루미늄 제품), 제70류(유리제품), 제36류(화약류), 제37류(사진이나 영화용 재료), 제33류(향료/화장품/화장용품), 제93류(무기화합물), 제96류(잡품), 제79류(아연과

그 제품) 품목들의 산업내 무역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들의 산업내 무역지수의 증가로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된 경향을 보이며 이는 이 품목들의 양국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 졌음을 의미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품목수 변화를 살펴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전체 수출품목수와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수출품목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품목수 변화율은 2016년에는 2012년 대비 40.6%까지 증가하였다. 전체 수출품목수에서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품목수 비중 증가는 수출품목 다변화(2012년 대비 16% 증가), 관세철폐 품목 수 증가(23.7% 증가), 기업의 FTA 활용역량강화로 인한 활용률 증가(9% 증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016년에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품목수의 2012년 대비 변화율이 다른 변화율들에 비해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품목수의 변화 양상이 관세철폐 품목 수의 변화율의 기울기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보아 관세철폐 품목 수의 변화와 그 변화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종사자규모별 미국과의 상품교역 특징을 살펴보면, 수입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기업의 크기가 더 영세하고, 수출이 수입에 비해 업체별 교역액 규모가 더 크다. 또한 영세한 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입의 경우 전체 수입건수 대비 특혜적용 건수의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대비 특혜 적용을 받은 수입 건수의 2016년 증가율은 수출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혜적용 수출·입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출이 수입에 비해 2012년 대비 특혜적용을 받은 증가율이 더 많이 상승하였다.

결론적으로 건수를 기준으로 수출에 비해 수입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에 비해 수출이 한-미 FTA 발효 해인 2012년에 비해 특혜 적용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제3절 한-미 FTA의 FTA 활용률 현황

### 1. FTA 활용률의 정의

#### (1) FTA 수출 활용률

FTA 수출 활용률은 특혜관세가 적용 가능한 품목의 수출액에 대한 실제 수출신고서상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된 수출액으로 정의된다.<sup>18)</sup>

$$FTA \text{ 수출 활용률}(\%) = \frac{FTA \text{ 특혜대상품목의 } C/O \text{ 발급액}}{FTA \text{ 특혜대상품목 수출액}} \times 100\%$$

2016년 한-미 FTA의 수출 활용률은 76% 정도이며, 전체 수출액 대비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액의 비중은 45% 정도이다.

[표 3-18] 한국의 수출 특혜적용 비율 및 FTA 활용률 비교 (2016년 금액기준)

| 수출    | FTA 특혜 대상       |           |            | 비특혜        | 총수출        |
|-------|-----------------|-----------|------------|------------|------------|
|       | C/O 발급액         | 미적용       | 합계         |            |            |
| 2016년 | 29,738,477      | 9,608,361 | 39,346,838 | 27,125,696 | 66,472,534 |
|       | FTA 활용률 = 75.6% |           |            |            |            |
|       | 특혜 적용비율 = 44.7% |           |            |            |            |

자료: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 FTA TRADE REPORT(2017.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단위: 1,000 달러

주: 특혜적용비율(%) = 수출 신고 대상 C/O 발급액/총 수출액

#### (2) FTA 수입 활용률

FTA 수입 활용률은 특혜관세가 적용 가능한 품목의 수입액에 대한 실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으로 정의된다.

$$FTA \text{ 수입 활용률}(\%) = \frac{FTA \text{ 특혜 적용 수입액}}{FTA \text{ 특혜대상품목 수입액}} \times 100\%$$

2016년 한-미 FTA의 수입 활용률은 71% 정도이며, 전체 수입액 대비 특혜 적용을 받은 수입액의 비중은 39% 정도이다.

18) 일반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무관세 품목, 특혜관세 양허 제외 품목 등은 FTA 관세인하 혜택과 무관하므로 FTA 활용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표 3-19] 한국의 수입 특혜적용 비율 및 FTA 활용률 비교 (2016년 금액기준)

| 수입    | FTA 특혜 대상       |           |            | 비특혜        | 총수입        |
|-------|-----------------|-----------|------------|------------|------------|
|       | 특혜적용            | 미적용       | 합계         |            |            |
| 2016년 | 16,833,616      | 6,975,093 | 23,808,709 | 19,403,338 | 43,212,047 |
|       | FTA 활용률 = 70.7% |           |            |            |            |
|       | 특혜 적용비율 = 38.9%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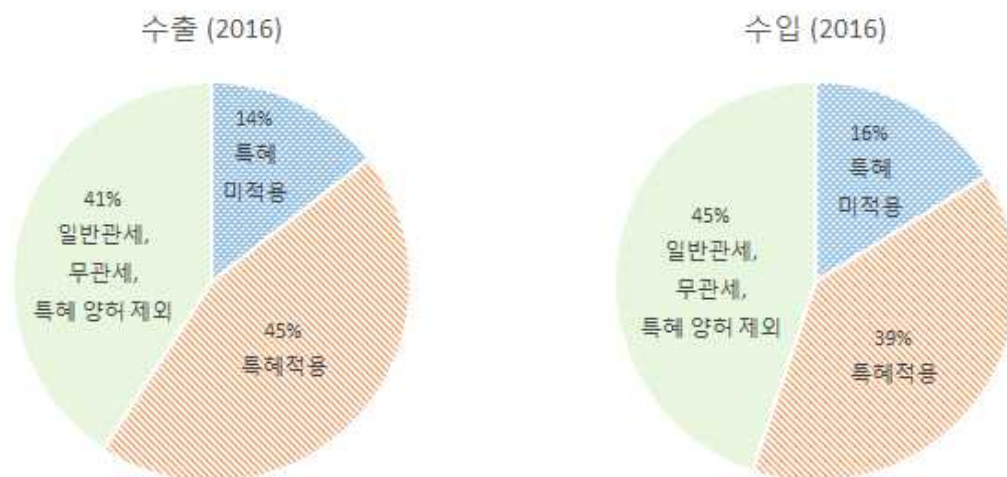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TRADE REPORT(2017.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단위: 1,000 달러

주: 특혜적용비율(%) = 실제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총 수입액

관세청이 발표한 2016년 수출입무역통계를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액 664억 달러 중 59%가 특혜적용이 가능한 수출액이며 41% 정도가 비특혜 품목 수출액이다. 이중 전체 수출액의 45% 정도만이 실제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특혜적용을 받았다.

수입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수입액 432억 달러 중 45%가 비특혜 품목 수입액이며 55% 정도가 특혜 적용이 가능한 품목의 수입액이다. 이중 전체 수입액의 39% 정도만이 실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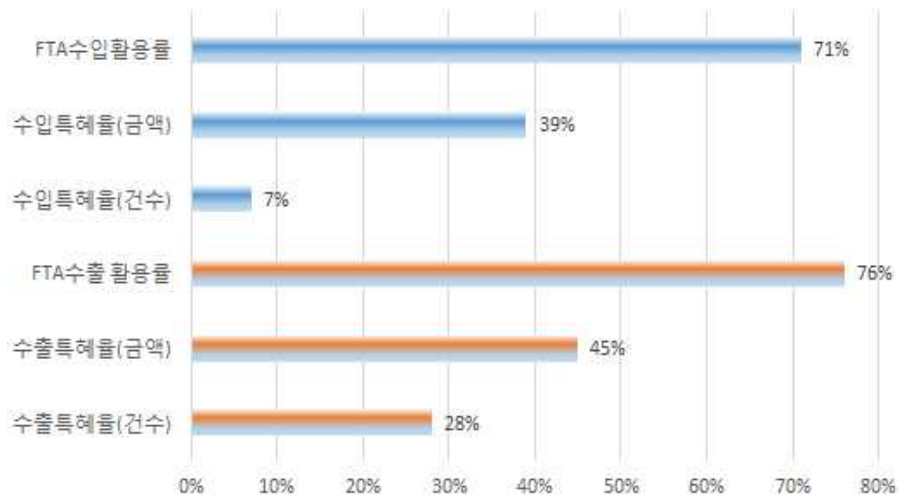
[그림 3-10] 한국의 FTA 특혜적용 · 미적용 및 FTA 비특혜 비율 (2016년 금액기준)



자료: 관세청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TRADE REPORT(2017.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FTA 활용률이나 전체 수출·입의 금액 혹은 건수 대비 특혜적용을 받은 수출·입의 금액 혹은 건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이 수입에 비해 더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액과 건수 모두 특혜적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한국의 수출·입 특혜 적용 비율과 FTA 활용률 비교



주: 2016년 자료.

종사자규모별 對미 수출·입 기업수 및 교역액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 수입기업의 96%에 달하는 종사자 250인 미만 수입 업체가 전체 수입액의 37%를 수입하고 있다. 한편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 기업의 94%에 달하는 종사자 250인 미만수출업체가 전체 수출액의 16%를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규모의 업체가 많고 건당 교역액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치적 영향력과 FTA 활용능력의 미숙으로 상대적으로 非특혜 적용 비율이 높고 실제 특혜 적용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 2. 한-미 FTA 연도별 수출·입 활용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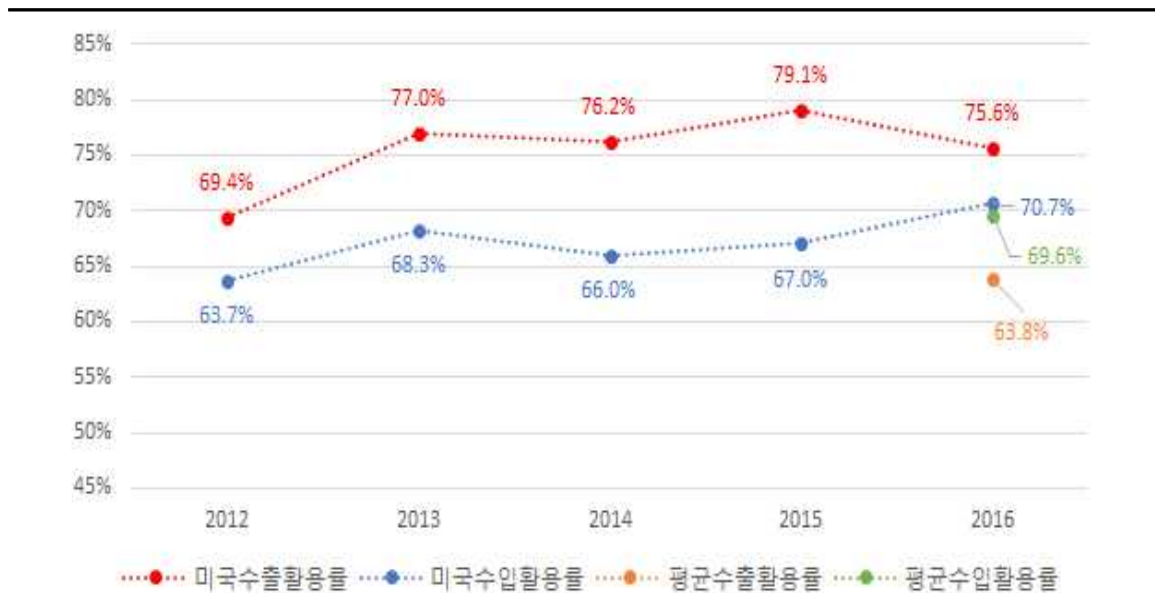
2012년 한-미 FTA 발효이후 한-미 FTA 수출·입 활용률은 2014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2년 대비 매년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6년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76%로 14개 FTA 협정들의 평균 FTA 수출활용률 64%보다 12%정도 높으며, 한-미 FTA 수입활용률은 71%로 전체 평균 활용률 70%보다 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 대한 수출의 경우 6%의 대규모(종사자 250인 이상) 업체에 의해 더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 활용률과 달리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이 既체결된 14개의 FTA의 평균 수출 활용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3년차 관세가 철폐되는 2014년과 5년차 관세가 철폐되는 2016년에는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이 소폭 하락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이 3.5% 하락하였다. 이는 2016년부터 관세가 철폐된 612개 품목 중 180개 항목이 실제 특혜적용을 받았고<sup>19)</sup>,

19) 2016년 특혜적용을 받은 품목은 3,804개로 이중 새롭게 특혜 적용을 받은 180개의 품목의 비중은 4.7%이다.

이들의 평균 FTA 수출 활용률이 59% 정도로 2015년 79%의 수출활용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2016년 전체 수출활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2] 한국의 한-미 FTA 수출·입 활용률 및 변화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평균 FTA 활용률은 FTA TRADE REPORT (2017 Vol.01) 자료 참조 (한-싱가포르 FTA를 제외한 14개 협정의 평균 활용률, 아세안은 베트남 제외)

### 3. 한-미 FTA 품목별 수출·입 활용률 현황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이후 5년 동안의 누적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 중 6개 품목만이 평균 FTA 수출 활용률인 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수출액 상위 품목 중 활용률이 높은 품목은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제83류(비금속제품), 제73류(철강제품), 제27류(광물성연료/에너지), 제87류(일반차량)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등이다. 반면에 누적 수출액 상위 품목 중 60% 미만의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는 품목은 제90류(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제89류(선박), 제88류(항공기) 등이다.

누적 수입액 상위 20개 품목 중 8개 품목만이 평균 FTA 수입 활용률인 7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수입액 상위 품목 중 60% 미만의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는 품목은 제84류(보일러/기계류), 제85류(전기기기/TV/VTR), 제27류(광물성연료/에너지), 제12류(의료용품), 제73류(철강제품), 제12류(채유용종자/인삼),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 등이다.

[표 3-20] 한국의 수출·입 누적액 상위 20대 품목의 FTA 활용률

| 순위 | 품목 명             | 수출활용률 | 품목 명             | 수입활용률 |
|----|------------------|-------|------------------|-------|
| 1  | 일반차량             | 77%   | 보일러, 기계류         | 56%   |
| 2  | 전기기기, TV, VTR    | 73%   | 전기기기, TV, VTR    | 57%   |
| 3  | 보일러, 기계류         | 71%   |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 65%   |
| 4  | 광물성연료, 에너지       | 78%   | 항공기              | 95%   |
| 5  | 철강제품             | 78%   | 광물성연료, 에너지       | 41%   |
| 6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77%   | 일반차량             | 92%   |
| 7  | 철강               | 66%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87%   |
| 8  | 고무와 그 제품         | 96%   | 유기 화합품           | 89%   |
| 9  |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 54%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83%   |
| 10 | 유기 화합품           | 69%   | 곡물               | 87%   |
| 11 | 선박               | 27%   | 육과 식용 설육         | 100%  |
| 12 | 항공기              | 47%   | 의료용품             | 35%   |
| 13 | 지와 판지            |       | 철강제품             | 28%   |
| 14 | 가구류, 조명기구        | 63%   | 철강               | 99%   |
| 15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73%   | 과실/견과류           | 96%   |
| 16 | 각종 비금속 제품        | 81%   | 채유용 종자/인삼        | 48%   |
| 17 | 비금속, 제공구, 스푼/포크  | 70%   | 무기화합물            | 80%   |
| 18 | 동과 그 제품          | 65%   | 기타의 조제식료품        | 73%   |
| 19 | 의류(편물제)          | 72%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36%   |
| 20 | 편물               | 65%   | 향료, 화장품, 화장용품    | 71%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단위: 1,000 달러, 활용률은 2016년 자료

주: 前은 2007년 3월~2012년 2월, 後는 2012년 3월~2017년 2월까지의 누적 금액

수출·입에 동일 선정된 품목은 음영 처리하여 표시

[표 3-21] 한국의 한-미 FTA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품목

| 분류(류) | 품목 명             | FTA<br>수출활용률 | FTA<br>수입활용률 | 누적수출<br>순위 | 누적수입<br>순위 |
|-------|------------------|--------------|--------------|------------|------------|
| 90    |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 54%          | 65%          | 9          | 3          |
| 88    | 항공기              | 47%          | 95%          | 12         | 4          |
| 48    | 지와 판지            |              | 100%         | 13         | 28         |
| 33    | 향료, 화장품, 화장용품    | 49%          | 71%          | 24         | 20         |
| 93    | 무기화합물            | 10%          | 65%          | 26         | 29         |
| 3     | 어패류              | 53%          | 86%          | 36         | 36         |
| 96    | 잡품               | 53%          | 78%          | 37         | 56         |
| 95    | 완구, 운동도구         | 39%          | 79%          | 38         | 41         |
| 24    | 담배               | 32%          | 96%          | 40         | 67         |
| 81    | 기타의 비금속          | 40%          | 56%          | 50         | 33         |

주: 前은 2007년 3월~2012년 2월, 後는 2012년 3월~2017년 2월까지의 누적 수출액 순위 50위 이하

누적 수출액 순위 50위 이하인 품목 중 수입활용률에 비해 수출 활용률이 낮은 품목에는 제88류(항공기), 제48류(종이), 제93류(무기화합물), 제95류(완구/운동도구), 제24류(담배) 등이 있다.

반면에 누적 수입액 순위 20위 이하인 품목 중 수출활용률에 비해 수입 활용률이 낮은 품목에는 제27류(광물성연료/에너지), 제12류(의료용품), 제73류(철강제품),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 등이 있다.

**[표 3-22] 한국의 한-미 FTA 수입활용률이 저조한 품목**

| 분류(류) | 품목명        | FTA수출활용률 | FTA수입활용률 | 누적수출 순위 | 누적수입 순위 |
|-------|------------|----------|----------|---------|---------|
| 27    | 광물성연료, 에너지 | 78%      | 41%      | 4       | 5       |
| 30    | 의료용품       | 80%      | 35%      | 45      | 12      |
| 73    | 철강제품       | 78%      | 28%      | 5       | 13      |
| 76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68%      | 36%      | 23      | 19      |

주: 前은 2007년 3월~2012년 2월, 後는 2012년 3월~2017년 2월까지의 누적 수입액 순위 50위미만

수출·입 활용률이 모두 55% 이하로 저조한 품목은 제 42류(가죽제품), 제46류(조물재료의 제품), 제46류(의류), 제66류(우산/지팡이), 제69류(도자제품 직물), 제91류(시계) 등으로 총 8개의 품목들이다. 이중 누적 수입 상위 품목인 제12류(채용용종자/인삼)과 누적 수출 상위 품목인 제89류(선박)을 제외하면 모두 누적 수출·입금액이 적은 품목들이다.

**[표 3-23] 한국의 한-미 FTA 수출·입 활용률이 모두 저조한 품목**

| 분류(류) | 품목명       | FTA수출활용률 | FTA수입활용률 | 누적수출 순위 | 누적수입 순위 |
|-------|-----------|----------|----------|---------|---------|
| 12    | 채용용 종자/인삼 | 22%      | 48%      | 61      | 16      |
| 42    | 가죽제품      | 50%      | 40%      | 43      | 70      |
| 46    | 조물재료의 제품  | 24%      | 31%      | 86      | 96      |
| 62    | 의류(편물제이외) | 53%      | 26%      | 55      | 57      |
| 66    | 우산/지팡이    | 21%      | 27%      | 91      | 90      |
| 69    | 도자제품 직물   | 42%      | 49%      | 54      | 40      |
| 89    | 선박        | 27%      | 26%      | 11      | 64      |
| 91    | 시계        | 55%      | 16%      | 70      | 80      |

## 4. 소결

지금까지 한-미 FTA 수출·입 활용률 현황을 살펴보았고, 이중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

들은 다음과 같다.

2016년 한-미 FTA의 수출 활용률은 76% 정도이며, 전체 수출액 대비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액의 비중은 45% 정도이다. 한편, 수입 활용률은 71% 정도이며, 전체 수출액 대비 특혜 적용을 받은 수출액의 비중은 39% 정도이다. 2012년 한-미 FTA 발효이후 한-미 FTA 수출·입 활용률은 2014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2년 대비 매년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6년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76%로 한국이 既체결한 14개 FTA 협정들의 평균 FTA 수출활용률 64%보다 12%정도 높으며, 수입활용률은 71%로 전체 평균 활용률 70%보다 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사자규모별 對미 수출·입 기업 수 및 교역액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입의 경우 96%의 250인 이하 수입 업체가 전체 수입액의 37%를 수입하고 있다. 한편 수출의 경우 94%의 250인 이하 수출업체가 전체 수출액의 16%를 수출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규모의 업체가 많고 건당 교역액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치적 영향력과 미숙한 FTA 활용 능력으로 인해 수출에 비해 非특혜 적용 비율이 높고 실제 특혜 적용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수출의 경우 6%의 250인 이상 업체가 교역액의 84%를 수출하고 있어 대규모 수출업체에 의해 대부분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FTA 활용률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이후 5년 동안의 누적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 중 6개 품목만이 평균 FTA 수출 활용률인 7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수출액 상위 품목 중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품목은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제83류(비금속제품), 제73류(철강제품), 제27류(광물성연료/에너지), 제87류(일반차량)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등이다. 반면에 누적 수출액 상위 품목 중 60% 미만의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는 품목은 제90류(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제89류(선박), 제88류(항공기) 등이다.

한편, 누적 수입액 상위 20개 품목 중 8개 품목만이 평균 FTA 수입 활용률인 7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수입액 상위 품목 중 60% 미만의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는 품목은 제84류(보일러/기계류), 제85류(전기기기/TV/VTR), 제27류(광물성연료/에너지), 제12류(의료용품), 제73류(철강제품), 제12류(채유용종자/인삼),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 등이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활용률이 모두 55% 이하로 저조한 품목은 제 42류(가죽제품), 제 46류(조물재료의 제품), 제46류(의류), 제66류(우산/지팡이), 제69류(도자제품 직물), 제91류(시계) 등으로 총 8개의 품목들이다. 이중 누적 수입 상위 품목인 제12류(채유용종자/인삼)과 누적 수출 상위 품목인 제89류(선박)를 제외하면 모두 누적 수출·입금액이 적은 품목들이다.

## 제4장 한-미 FTA 상호협력모델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전후 5년 동안의 누적 수출·입 증가, 무역수지 변화, 산업내무역지수(Intra-Industry Trade Index; IIT) 등을 토대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품목,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된 품목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그룹별 품목 중 관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관세의 조기철폐,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가 규정된 경우에는 발동 물량 및 관세율 조정, 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s)과 계절관세가 규정된 품목의 경우에는 허용 물량조절 및 관세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재협상이 진행 될 수 있다. 또한, 관세가 이미 모두 철폐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협상이 진행 될 수 있다.

[표 4-1] 상품교역현황별 재협상 시나리오

|              | 有관세             | 無관세              |
|--------------|-----------------|------------------|
|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 | 미국의 관세양허 재협상 요구 | 미국의 원산지 규정 완화 요구 |
|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 | 한국의 관세양허 재협상 요구 | 미국의 원산지 규정 강화 요구 |
| 산업내무역지수 증가   | 한국의 관세양허 재협상 요구 | -                |

상품교역현황별 가능한 재협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품목들 중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및 세이프가드·계절관세·관세율할당 등의 규정조정으로, 관세가 완전 철폐된 품목 중 FTA 활용률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 완화 등의 방식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들의 경우 이미 거의 모든 품목의 미국의 양허관세가 완전 철폐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FTA 활용률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 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한편, 산업내무역지수가 증가한 품목들은 FTA 발효 전후 5년간 누적 수입액보다 누적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된 경우들로서 상대적으로 한국 측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품목들이다. 이런 품목 중 관세가 남아 있는 경우 한국의 수출이 많거나 크게 증가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국은 대응 방안으로서 관세조기 철폐 및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발효 전후 5년 동안의 누적 상품교역현황을 바탕으로 관세양허, 원산지 규정에 관한 재협상 가능성 있는 품목들과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1절 관세 양허관련 상호협력 방안

앞서 논의된 한-미 FTA 현황분석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전후 5년 동안의 누적 수출·입 증가, 무역수지 변화, 산업내무역지수 등을 토대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품목,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 한국의 적자 품목 중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된 품목 등을 선별하였다.

이러한 품목들 중 아직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이 전개될 때, 가장 먼저 논의 될 품목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들 품목들의 관세 양허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재협상 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특히, 관세 양허 현황, 세이프가드, 관세율할당, 계절관세, 未양허 품목, 미국이 既체결한 FTA중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만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품목

산업간 무역의 교역형태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제2류(육과 식용 설육), 제30류(의료용품), 제8류(과실·견과류),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등이다. 이들 품목들은 FTA 발효 전후 5년간 누적 수출액보다 누적 수입액이 대폭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된 품목들이다.

한편, 산업내 무역의 교역형태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품목은 제90류(정밀기기), 제3류(어류·갑각류), 제71류(귀금속을 입힌 금속), 제22류(음료·주류), 제62류(의류와 부속품), 제64류(신발류), 제16류(육류·어류 조제품), 제7류(식용채소), 제11류(밀가루·전분), 제52류(면), 제80류(주석 및 제품), 제91류(시계 및 부분품) 등이다. 이들 품목들은 모두 한-미 FTA 발효이후 산업내지수가 감소하였고, 누적 수입 증가액이 누적 수출 증가액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점차 미국 측이 경쟁력을 선점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품목들 중에서 관세 양허 측면에서 재협상이 가능한 품목은 2016년 기준으로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들일 것이다. 이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제2류(육과 식용설육), 제8류(과실·견과류),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 제3류(어류·갑각류), 제22류(음료·주류), 제16류(육류·어류 조제품), 제7류(식용채소), 제11류(밀가루·전분) 순이다.

[표 4-2]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 품목의 수출·입 현황

| 구분     | HS2 | 수입관세  | 수출관세 | 수입활용률 | 수출활용률 | 前수출액      | 後수출액      | 前수입액       | 後수입액       | 무역수지변화     | 前 IIT | 後 IIT |
|--------|-----|-------|------|-------|-------|-----------|-----------|------------|------------|------------|-------|-------|
| 산업간 무역 | 02  | 10.2  | 1.8  | 99.9  | -     | 2,427     | 1,067     | 3,471,667  | 5,982,335  | -2,512,031 | 0.00  | 0.00  |
|        | 30  | 0     | 0    | 85.7  | 79.5  | 336,884   | 275,466   | 2,902,474  | 5,060,151  | -2,219,094 | 0.21  | 0.10  |
|        | 08  | 32.7  | 0.4  | 95.6  | 57.3  | 141,874   | 163,044   | 1,607,010  | 3,613,386  | -1,985,201 | 0.16  | 0.09  |
|        | 21  | 12.8  | 0.5  | 77.1  | 57.1  | 437,976   | 768,109   | 1,338,446  | 2,948,536  | -1,279,960 | 0.49  | 0.41  |
|        | 38  | 0*    | 0    | 82.6  | 69.0  | 941,883   | 1,540,728 | 5,257,598  | 7,018,524  | -1,162,084 | 0.30  | 0.36  |
| 산업내 무역 | 90  | 0*    | 0    | 67.7  | 50.6  | 6,960,335 | 6,124,305 | 15,234,535 | 16,937,361 | -2,538,852 | 0.63  | 0.53  |
|        | 03  | 4.0   | 0.2  | 87.8  | 73.8  | 346,992   | 544,600   | 621,932    | 1,059,602  | -240,057   | 0.72  | 0.68  |
|        | 71  | 0     | 0    | 66.4  | 48.3  | 642,839   | 1,006,870 | 1,060,623  | 1,640,542  | -215,888   | 0.75  | 0.76  |
|        | 22  | 4.7   | 0*   | 85.1  | 55.9  | 217,068   | 405,118   | 246,666    | 534,794    | -100,088   | 0.94  | 0.86  |
|        | 62  | 0     | 0    | 38.3  | 41.5  | 298,035   | 164,563   | 310,243    | 249,736    | -72,952    | 0.98  | 0.79  |
|        | 64  | 0     | 3.7  | 59.2  | 55.6  | 114,318   | 115,334   | 104,022    | 172,092    | -67,054    | 0.95  | 0.80  |
|        | 16  | 4.1   | 1.1  | 86.0  | 73.9  | 162,016   | 177,674   | 155,038    | 235,021    | -64,336    | 0.98  | 0.86  |
|        | 07  | 40.6  | 0.3  | 92.4  | 64.3  | 43,013    | 61,821    | 75,684     | 131,760    | -37,269    | 0.72  | 0.64  |
|        | 11  | 144.0 | 0    | 85.7  | 70.3  | 30,676    | 29,260    | 27,450     | 50,595     | -24,551    | 0.94  | 0.73  |
|        | 52  | 0     | 0*   | 66.9  | 60.0  | 693,420   | 766,740   | 941,358    | 1,028,137  | -13,459    | 0.85  | 0.85  |
|        | 80  | 0     | 0    | 71.1  | 66.5  | 3,323     | 2,963     | 3,931      | 7,542      | -3,965     | 0.92  | 0.56  |
|        | 91  | 0     | 0*   | 51.4  | 59.6  | 13,135    | 31,563    | 23,475     | 45,619     | -3,723     | 0.72  | 0.82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단위: 1,000 달러, 활용률은 2016년 자료

주: 前은 2007년 3월~2012년 2월, 後는 2012년 3월~2017년 2월까지의 누적 금액, \* : 일부 세번 제외

이들 품목의 한-미 FTA 두 당사국들의 류별 평균 MFN 관세율 및 연도별 특혜세율 등을 [표 4-3]에 정리하였다.

[표 4-3]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 품목의 평균 관세 현황

| 구분     | HS2 |         | MFN(기본세율) | 기준세율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산업간 무역 | 02  | 미국 측 관세 | 6.0       | -     | 4.7   | 4.0   | 3.3   | 2.6   | 1.8   |
|        |     | 한국 측 관세 | 22.1      | 22.7  | 19.6  | 16.7  | 13.8  | 12.0  | 10.2  |
|        | 08  | 미국 측 관세 | 4.9       | -     | 3.4   | 2.5   | 1.8   | 1.1   | 0.4   |
|        |     | 한국 측 관세 | 35.1      | 68.4  | 53.0  | 47.7  | 42.7  | 37.7  | 32.7  |
|        | 21  | 미국 측 관세 | 7.8       | -     | 5.1   | 3.9   | 2.8   | 1.6   | 0.5   |
|        |     | 한국 측 관세 | 11.0      | 35.3  | 30.5  | 26.0  | 21.6  | 17.2  | 12.8  |
| 산업내 무역 | 03  | 미국 측 관세 | 0.7       | -     | 0.6   | 0.5   | 0.4   | 0.3   | 0.2   |
|        |     | 한국 측 관세 | 16.4      | 17.4  | 12.5  | 9.1   | 5.7   | 4.9   | 4.0   |
|        | 22  | 미국 측 관세 | 1.4       | -     | 1.1   | 0.9   | 0.7   | 0.5   | 0.3   |
|        |     | 한국 측 관세 | 24.5      | 21.1  | 12.2  | 10.4  | 8.5   | 6.6   | 4.7   |
|        | 16  | 미국 측 관세 | 3.6       | -     | 2.6   | 2.1   | 1.6   | 1.4   | 1.1   |
|        |     | 한국 측 관세 | 22.3      | 23.0  | 17.0  | 11.3  | 5.6   | 4.9   | 4.1   |
|        | 07  | 미국 측 관세 | 9.0       | -     | 6.3   | 4.8   | 3.3   | 1.8   | 0.3   |
|        |     | 한국 측 관세 | 28.9      | 116.7 | 96.1  | 82.2  | 68.4  | 55.2  | 40.6  |
|        | 11  | 미국 측 관세 | 4.2       | -     | 1.9   | 1.5   | 1.0   | 0.5   | 0.0   |
|        |     | 한국 측 관세 | 7.5       | 313.1 | 282.9 | 248.2 | 213.5 | 178.7 | 144.0 |

자료: USITC,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또한 류별 한국(HS 10단위 기준)과 미국(HS 8단위)의 관세완전철폐 품목 수, 관세율할당, 긴급수입제한조치, 미국이 기체결한 FTA 중에서 한국에게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현황을 [표 4-4]에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품목별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표 4-4]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 품목의 특별 관세 현황

| 구분     | HS2 |    | 류별 개수*<br>(FREE/관세有) | TRQ(관세율할당) |     |                      | SG(긴급수입제한조치) |      |                                                                      | 한국만** |      |                                               | 기타                                                              |
|--------|-----|----|----------------------|------------|-----|----------------------|--------------|------|----------------------------------------------------------------------|-------|------|-----------------------------------------------|-----------------------------------------------------------------|
|        |     |    |                      | 개수         | 비중  | 품목                   | 개수           | 비중   | 품목                                                                   | 개수    | 비중   | 품목                                            |                                                                 |
| 산업간 무역 | 02  | 미국 | 111(98/13)           | -          | -   | -                    | -            | -    | -                                                                    | 7     | 6.3  | 0207(7개)                                      |                                                                 |
|        |     | 한국 | 117(21/96)           | -          | -   | -                    | 10           | 8.5  | 0201(4개)<br>0202(4개)<br>0203(2개)                                     | -     | -    | -                                             |                                                                 |
|        | 08  | 미국 | 131(126/5)           | -          | -   | -                    | -            | -    | -                                                                    | 3     | 2.3  | 0807(3개)                                      |                                                                 |
|        |     | 한국 | 88(35/53)            | 1          | 1.1 | 0805(1개)             | 2            | 2.3  | 0808(2개)                                                             | -     | -    | -                                             | 계절관세(2개)0<br>805100000,<br>0806100000                           |
|        | 21  | 미국 | 90(58/32)            | 4          | 4.4 | 2105(1개)<br>2106(3개) | -            | -    | -                                                                    | 6     | 6.7  | 2101(1개)<br>2105(2개)<br>2106(3개)              |                                                                 |
|        |     | 한국 | 74(49/25)            | -          | -   | -                    | -            | -    | -                                                                    | -     | -    | -                                             |                                                                 |
| 산업내 무역 | 03  | 미국 | 272(246/26)          | -          | -   | -                    | -            | -    | -                                                                    | 26    | 9.6  | 0302(15개)<br>0303(4개)<br>0305(4개)<br>0306(3개) |                                                                 |
|        |     | 한국 | 441(246/195)         | 5          | 1.1 | 0303(5개)             | -            | -    | -                                                                    | -     | -    | -                                             |                                                                 |
|        | 22  | 미국 | 76(67/9)             | 1          | 1.3 | 2202(1개)             | -            | -    | -                                                                    | 1     | 1.3  | 2202(1개)                                      |                                                                 |
|        |     | 한국 | 52(41/11)            | -          | -   | -                    | 1            | 1.9  | 2207(1개)                                                             | -     | -    | -                                             |                                                                 |
|        | 16  | 미국 | 117(90/27)           | -          | -   | -                    | -            | -    | -                                                                    | 22    | 18.8 | 1602(1개)<br>1604(19개)<br>1605(3개)             |                                                                 |
|        |     | 한국 | 110(82/28)           | -          | -   | -                    | -            | -    | -                                                                    | -     | -    | -                                             |                                                                 |
|        | 07  | 미국 | 185(179/6)           | -          | -   | -                    | -            | -    | -                                                                    | 5     | 2.7  | 0703(2개)<br>0704(1개)<br>0706(1개)<br>0710(1개)  |                                                                 |
|        |     | 한국 | 151(59/92)           | 1          | 0.7 | 0701(1개)             | 19           | 12.5 | 0703(3개)<br>0709(2개)<br>0711(2개)<br>0712(2개)<br>0713(2개)<br>0714(8개) | -     | -    | -                                             | 계절관세(1개)0<br>701900000                                          |
|        | 11  | 미국 | 38(38/0)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 | 47(16/31)            | 3          | 6.3 | 1107(1개)<br>1108(2개) | 15           | 31.3 | 1102(1개)<br>1103(1개)<br>1104(3개)<br>1105(2개)<br>1107(1개)<br>1108(7개) | -     | -    | -                                             | 미양허(4개)<br>1102902000<br>1103193000<br>1103202000<br>1104191000 |

자료: USITC,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미국의 경우 HS 8단위, 한국의 경우 HS 10단위 / 괄호 안은 2017년 기준 관세 현황

주\*\*: 2017년 기준 미국의 既체결 협정 중 한국만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

## (1) 제2류(육과 식용 설육)

제2류 육과 식용 설육에 대한 미국의 평균 기본세율은 6%, 2016년 평균 협정세율은 1.8%이며 제2류 111개 품목 중 98개가 무관세이다. 한국의 평균 기본세율은 22.1% (평균 농림축산물양허관세율 22.7%), 2016년 평균 협정세율은 10.2%로 미국과 큰 관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제2류 117개 제품 중 96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남아 있다. 제2류의 수출액은 아주 미미하고 수출 활용률도 0%이다. 이 품목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교역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호 조치로 한국은 117개 품목 중 8.5%인 10개 품목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든 신선·냉장·냉동 소고기(제0201호, 제0202호)와 삼겹살 및 기타 신선·냉장 돼지고기(제0203.19호)에 세이프가드가 적용되어, 2017년 기준 미국산 소고기는 300,0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30%의 관세가 부과되고, 돼지고기는 11,04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15.8%의 관세가 부과된다.

[표 4-5] 제2류 한국의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현황

| 이행년도       | 소고기<br>(제0201호, 제0202호) |       |       | 돼지고기<br>(제0203.19호) |       |       |
|------------|-------------------------|-------|-------|---------------------|-------|-------|
|            | 발동수준(톤)                 | 특혜세율  | SG관세율 | 발동수준(톤)             | 특혜세율  | SG관세율 |
| 1년차 (12')  | 270,000                 | 37.3% | 40.0% | 8,250               | 20.2% | 22.5% |
| 2년차 (13')  | 276,000                 | 34.6% |       | 8,745               | 18%   |       |
| 3년차 (14')  | 282,000                 | 32%   |       | 9,270               | 15.7% |       |
| 4년차 (15')  | 288,000                 | 29.3% |       | 9,826               | 13.5% |       |
| 5년차 (16')  | 294,000                 | 26.6% |       | 10,415              | 11.2% |       |
| 6년차 (17')  | 300,000                 | 24%   | 30.0% | 11,040              | 9%    | 15.8% |
| 7년차 (18')  | 306,000                 | 21.3% |       | 11,703              | 6.7%  | 14.6% |
| 8년차 (19')  | 312,000                 | 18.6% |       | 12,405              | 4.5%  | 13.5% |
| 9년차 (20')  | 318,000                 | 16%   |       | 13,149              | 2.2%  | 12.4% |
| 10년차 (21') | 324,000                 | 13.3% |       | 13,938              | 0%    | 11.3% |
| 11년차 (22') | 330,000                 | 10.6% | 24.0% | 해당 없음               |       | 0%    |
| 12년차 (23') | 336,000                 | 8%    |       | -                   |       | -     |
| 13년차 (24') | 342,000                 | 5.3%  |       |                     |       |       |
| 14년차 (25') | 348,000                 | 2.6%  |       |                     |       |       |
| 15년차 (26') | 354,000                 | 0%    |       |                     |       |       |
| 16년차       | 해당 없음                   |       | 0%    |                     |       |       |

자료: 한-미FTA 협정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12')는 년도

한국 측 세이프가드 적용 물품인 모든 신선·냉장·냉동 소고기(제0201호, 제0202호)와 삼겹살 및 기타 신선·냉장 돼지고기(제0203.19호)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소고기(제0201호, 제0202호)의 경우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매년 세이프가드 적용 물량에 못 미치는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세이프가드 적용 연평균 증가율보다 실제 수입량의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한-미 FTA 발효 해인 2012년 대비 64% 증가한 물량이 수입되었다. 2012년 한국의 소고기 1위 수입국은 호주이며 전체 수입량의 61%인 137,927톤을 수입하였고 2위는 미국으로 36%인 95,082톤을 수입하였다. 2017년 현재까지 호주는 한국의 1위 소고기 수입국이나, 2016년 수입비중이 49%로 2015년 56%에 비해 감소한 반면, 미국은 2015년 36%에서 2016년 43%로 증가하였다. 2017년 5월 현재 1위 수입국과 맺은 한-호주 FTA의 경우 29.3%의 특혜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미 FTA의 24%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돼지고기(제0203.19호)의 경우에도 2012년을 제외하고는 세이프가드 물량에 못 미치는 물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수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의 돼지고기 총 수입물량 20,558톤의 40%인 8,339톤을 수입하였으나, 2016년에는 20,026톤의 16%인 3,237톤을 수입하였다. 2012년 한국의 돼지고기 1위 수입국은 미국(8,339톤, 40%), 2위는 캐나다(7,596톤, 37%), 3위 멕시코(2,039톤, 10%)였으나, 2016년에는 1위가 멕시코(8,405톤, 42%), 2위는 캐나다(5,816톤, 29%), 3위는 미국(3,237톤, 16%), 4위는 칠레(1,985톤, 10%) 순이었다. 2014년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5월 현재 1위 수입국인 멕시코와는 FTA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한-캐나다 FTA의 경우 17.3%의 특혜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한-미 FTA의 9%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4-6] 제2류 한국의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수입 현황

| 품목               | 기간   | SG 발동수준 | 연평균 증가율 | 총 수입증량  | 연평균 증가율 | 12대비 증가율 |
|------------------|------|---------|---------|---------|---------|----------|
| 소<br>고<br>기      | 2012 | 270,000 |         | 95,082  |         |          |
|                  | 2013 | 276,000 | 2%      | 92,145  | -3%     | -3%      |
|                  | 2014 | 282,000 | 2%      | 101,774 | 10%     | 7%       |
|                  | 2015 | 288,000 | 2%      | 106,493 | 5%      | 12%      |
|                  | 2016 | 294,000 | 2%      | 156,078 | 47%     | 64%      |
| 돼<br>지<br>고<br>기 | 2012 | 8,250   |         | 8,336   |         |          |
|                  | 2013 | 8,745   | 6%      | 6,098   | -27%    | -27%     |
|                  | 2014 | 9,270   | 6%      | 5,605   | -8%     | -33%     |
|                  | 2015 | 9,826   | 6%      | 5,057   | -10%    | -39%     |
|                  | 2016 | 10,415  | 6%      | 3,237   | -36%    | -61%     |

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단위: 톤

한편, 제2류 111개 품목 가운데 미국이 한-미 FTA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제0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의 7개 품목<sup>20)</sup>으로서 2017년 기준 평균 6.5cents/kg의 관세가 남아 있다.

제2류 품목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거의 전무하여 남아 있는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큰 품목들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관세를 조기 철폐(현행 2021년 혹은 2026년 완전 철폐)하거나 관세를 더욱 인하하는 방식의 재협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이다.

2017년 5월 현재,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이 다른 주요 수입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미국은 소고기 돼지고기 각각 2위, 3위 수입국이며 세이프가드 적용 물량에 못 미치고 있어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세철폐 및 인하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있을 수 있다.

## (2) 제8류(과실·견과류)

제8류 과실·견과류에 대한 미국의 평균 기본세율은 4.9%, 2016년 협정세율은 0.4%이며 제8류 131개 품목 중 126개가 무관세이다. 한국의 평균 기본세율은 35.1% (농림축산물양허관세 68.4%), 2016년 협정세율은 32.7%로 WTO 협정세율과 35%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제8류 88개 품목 중 53개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한-미 FTA 체결 전후 5년간의 누적 교역 양을 살펴보면, 제8류에 대한 對미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對미 수입이 기존 수입량의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 심화되었다.

한국의 제8류 중에는 기본세율보다 높은 농림축산물양허 관세가 책정되어 있는 품목들이 일부 존재한다. 주요 품목은 밤, 잣, 감귤, 대추로서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작용한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제0808.10호(사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적용, 2016년 기준 12,000톤 초과 물량에 4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FTA 이행 10년차(2011년)까지는 세이프가드 발동 수준에 모든 종류의 사과가 포함되나, 11년차(2022년)부터는 후지사과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sup>21)</sup>.

20) 제0207.13-00호(닭\_절단육과 설육, 신선 또는 냉장), 제0207.25-20호(칠면조\_절단하지 않은 육, 88cents/kg 미만, 냉동), 제0207.26-00호(칠면조\_절단육과 설육, 신선 또는 냉장), 제0207.27-00호(칠면조\_절단육과 설육, 냉동), 제0207.45-00호(오리\_기타, 냉동), 제0207.55-00호(거위\_기타, 냉동), 제0207.60-60호(기니아새\_기타, 냉동)

21) 제0808.10호(사과)의 수입은 2013~2014년 전혀 없었으며, 2015년에는 80.6톤 중 84%인 68톤을 미국에서 16%인 12.6톤을 대만에서 수입하였고, 2016년에는 30.9톤 전량을 미국에서만 수입하였다.

[표 4-7] 제8류 한국의 高관세 적용 품목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 HS           | 품명               | 기본세율 | 기준세율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0802.41-0000 | 밤(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50   | 219.4 | 204.7 | 190.1 | 175.5 | 160.8 | 146.2 |
| 0802.42-0000 | 밤(껍데기를 벗긴 것)     | 50   | 219.4 | 204.7 | 190.1 | 175.5 | 160.8 | 146.2 |
| 0802.90-1010 | 잣(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30   | 566.8 | 529   | 491.2 | 453.4 | 415.6 | 377.8 |
| 0802.90-1020 | 잣(껍데기를 벗긴 것)     | 30   | 566.8 | 529   | 491.2 | 453.4 | 415.6 | 377.8 |
| 0805.20-1000 | 감귤               | 50   | 144   | 134.4 | 124.8 | 115.2 | 105.6 | 96    |
| 0805.20-9000 | 기타 감귤류           | 50   | 144   | 134.4 | 124.8 | 115.2 | 105.6 | 96    |
| 0805.90-0000 | 기타 감귤류           | 50   | 144   | 134.4 | 124.8 | 115.2 | 105.6 | 96    |
| 0810.90-3000 | 신선 대추            | 50   | 611.5 | 560.5 | 509.5 | 458.6 | 407.6 | 356.7 |
| 0813.40-2000 | 건 대추             | 50   | 611.5 | 560.5 | 509.5 | 458.6 | 407.6 | 356.7 |

자료: 한-미FTA 협정문,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또한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제0805.10호(신선·건조 오렌지)와 제0806.10호(신선 포도)가 있다.

오렌지의 경우, 비수기인 3월 ~ 8월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30%에서 인하된 관세가 이행 2년차부터 6단계 균등 철폐되어 2016년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7년차인 2018년 0%가 된다. 9월 ~ 2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로서 현행 50%의 관세를 유지하되, TRQ물량을 제공하여 협정 상 기재된 물량(2,814톤)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 관세가 부여되고, 그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수입된다.

포도의 경우, 비수기인 10월 16일 ~ 4월 30일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24%로 인하된 관세가 이행 2년차부터 4단계 균등 철폐되어 5년차인 2016년 0%가 되고, 5월 1일 ~ 10월 15일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45%의 관세가 17단계 균등 철폐되어 2017년 현재 29.1%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표 4-8] 제8류 한국의 계절관세 적용 품목 양허 현황 (톤)

| 구분                 | 기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오렌지<br>(제0805.10호) | 3/1~8/31<br>(비수기)   | 30%              | 25%              | 20%              | 15%              | 10%              | 5%            |
|                    | 9/30~2/28<br>(성수기)  | (2,500이하)<br>0%  | (2,575이하)<br>0%  | (2,652이하)<br>0%  | (2,732이하)<br>0%  | (2,814이하)<br>0%  | (주 참고)<br>0%  |
|                    |                     | (2,500초과)<br>50% | (2,575초과)<br>50% | (2,652초과)<br>50% | (2,732초과)<br>50% | (2,814초과)<br>50% | (주 참고)<br>50% |
| 포도<br>(제0806.10호)  | 10/16~4/30<br>(비수기) | 24%              | 18%              | 12%              | 6%               | 0%               | 0%            |
|                    | 5/1~10/15<br>(성수기)  | 42.3%            | 39.7%            | 37%              | 34.4%            | 31.7%            | 29.1%         |

자료: 한-미FTA 협정문,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오렌지의 경우,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한편, 미국은 관세 구조 상 일부 품목에 대해 특정 수입 기간을 명시한 HS세번이 별도로 구분되어 계절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제0807호에 해당하는 수박(4월 ~ 11월), 멜론(8월1일 ~ 9월15일), 캔탈롭종 멜론(1월 ~ 7월 또는 9월16일 ~ 12월)은 2017년 기준 미국이 既체결한 협정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이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미 수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9] 특정 수입기간에 따른 미국 HS 분류 및 한-미FTA 양허현황 (제8류)

| HS         | 품명            | 기간                         | MFN                   | 양허유형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0804.50-40 |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 9/1 ~ 다음해 5/31             | 6.6t/kg               | 즉시철폐 | 0     | 0     | 0    | 0     | 0    |
| 0804.50-60 |               | 6/1 ~ 다음해 8/31             |                       |      |       |       |      |       |      |
| 0805.40-40 | 자몽 (건조 포함)    | 8/1 ~ 9/30                 | 1.9t/kg               | 5년균등 | 1.5t  | 1.1t  | 0.7t | 0.3t  | 0    |
| 0805.40-60 |               | 10월                        | 1.5t/kg               | 5년균등 | 1.2t  | 0.9t  | 0.6t | 0.3t  | 0    |
| 0805.40-80 |               | 11/1 ~ 다음해 7/31            | 2.5t/kg               | 7년균등 | 2.1t  | 1.7t  | 1.4t | 1t    | 0.7t |
| 0806.10-20 | 포도            | 2/15 ~ 3/31                | \$1.13/m <sup>3</sup> | 즉시철폐 | 0     | 0     | 0    | 0     | 0    |
| 0806.10-40 |               | 4/1 ~ 6/30                 | Free                  | -    | 0     | 0     | 0    | 0     | 0    |
| 0806.10-60 |               | 7/1 ~ 다음해 2/14             | \$1.80/m <sup>3</sup> | 즉시철폐 | 0     | 0     | 0    | 0     | 0    |
| 0807.11-30 | 수박            | 12/1 ~ 다음해 3/31            | 9%                    | 5년균등 | 7.2%  | 5.4%  | 3.6% | 1.8%  | 0    |
| 0807.11-40 |               | 4/1 ~ 11/30                | 17%                   | 7년균등 | 14.5% | 12.1% | 9.7% | 7.2%  | 4.8% |
| 0807.19-10 | 멜론            | 8/1 ~ 9/15                 | 12.8%                 | 7년균등 | 10.9% | 9.1%  | 7.3% | 5.4%  | 3.6% |
| 0807.19-20 | 캔탈롭종 멜론       | 1/1 ~ 7/31 또는 9/16 ~ 12/31 | 29.8%                 | 7년균등 | 25.5% | 21.2% | 17%  | 12.7% | 8.5% |
| 0807.19-50 | 오렌&갈리아        | 12/1 ~ 다음해 5/31            | 1.6%                  | 즉시철폐 | 0     | 0     | 0    | 0     | 0    |
| 0807.19-60 | 멜론            | 6/1 ~ 11/30                | 6.3%                  | 5년균등 | 5%    | 3.7%  | 2.5% | 1.2%  | 0    |
| 0807.19-70 | 기타 멜론         | 12/1 ~ 다음해 5/31            | 5.4%                  | 5년균등 | 4.3%  | 3.2%  | 2.1% | 1%    | 0    |
| 0807.19-80 |               | 6/1 ~ 11/30                | 28%                   | 7년균등 | 24%   | 20%   | 16%  | 12%   | 8%   |
| 0808.30-20 | 배             | 4/1 ~ 6/30                 | Free                  | -    | 0     | 0     | 0    | 0     | 0    |
| 0808.30-40 |               | 7/1 ~ 다음해 5/31             | 0.3t/kg               | 즉시철폐 | 0     | 0     | 0    | 0     | 0    |
| 0808.40-20 | 마르멜로          | 4/1 ~ 6/30                 | Free                  | -    | 0     | 0     | 0    | 0     | 0    |
| 0808.40-40 |               | 7/1 ~ 다음해 5/31             | 0.3t/kg               | 즉시철폐 | 0     | 0     | 0    | 0     | 0    |
| 0809.30-20 | 복숭아           | 6/1 ~ 11/30                | 0.2t/kg               | 즉시철폐 | 0     | 0     | 0    | 0     | 0    |
| 0809.30-40 |               | 12/1 ~ 다음해 5/31            | Free                  | -    | 0     | 0     | 0    | 0     | 0    |
| 0809.40-20 | 자두, 슬로        | 1/1 ~ 5/31                 | Free                  | -    | 0     | 0     | 0    | 0     | 0    |
| 0809.40-40 |               | 6/1 ~ 12/31                | 0.5t/kg               | 즉시철폐 | 0     | 0     | 0    | 0     | 0    |
| 0810.10-20 | 초본류딸기         | 6/15 ~ 9/15                | 0.2t/kg               | 즉시철폐 | 0     | 0     | 0    | 0     | 0    |
| 0810.10-40 |               | 9/16 ~ 다음해 6/14            | 1.1t/kg               | 즉시철폐 | 0     | 0     | 0    | 0     | 0    |
| 0810.20-10 | 나무딸기, 로간베리    | 9/1 ~ 다음해 6/30             | 0.18t/kg              | 즉시철폐 | 0     | 0     | 0    | 0     | 0    |

자료: 협정문,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8류 품목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큰 품목들이기 때문에 현행 관세 양허안을 수정할 것을 미국 측에서 요구할 수 있으나 한국 측에 민감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오렌지의 경우, 제8류의 과실 중에서 對미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sup>22)</sup> 2016년 9월~ 2017년 2월까지 수입된 물량은 20,388톤으로 TRQ 허용 물량인 2,814톤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미국 측이 계절관세에 대한 조건 완화 및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3)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기본세율은 7.8%, 2016년 협정세율은 0.5%이며 제21류 90개 품목 중 58개 품목이 무관세이다. 한국의 기본세율은 21% (기준세율 35.3%<sup>23)</sup>), 2016년 협정세율은 12.8%로 큰 관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제21류 74개 품목 중 25개 제품에 관세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한-미 FTA 체결 전후 5년간의 누적 교역 양을 살펴보면, FTA 체결 전 대비 수출은 약 3억 달러, 수입은 약 16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류에 대한 對미 수출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對미 수입이 기존 수입량의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심화되었다.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에서는 미국 측이 4개 품목(제2105.00-40호, 제2106.90-09호, 제2106.90-66호, 제2106.90-87호)에 대해 TRQ를 적용하고 있다. 협정에 따라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연도별 Quota 내의 물량으로 미국 내 수입될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기본세율이 10단계 균등 철폐되어, 이행 10년차인 2021년에 무관세가 된다.

---

22) 제0805.10호(오렌지)의 對미 수입액은 2014년 156,281천 달러, 2015년 163,001천 달러, 2016년 209,984천 달러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전체 제8류 수입액(720,428천 달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오렌지 1위 수입국으로서 2016년 총 수입중량 및 금액의 95%를 미국에서 수입하였다.

23) 제21류에서 한국 측의 협정관세가 높게 나타난 가장 큰 요인은 제2106.90-3021호(홍삼차) 및 제2106.90-3029호(기타 홍삼제품)의 기준관세가 754.3%로 매우 높고 양허유형도 10년 균등철폐로 2016년 기준 협정관세 또한 377.1%로서 제21류의 다른 품목보다 높은 관세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2개 품목을 제외한다면, 제21류의 평균 기준세율은 15.4%, 2016년 협정세율은 2.7%이다.

[표 4-10] 미국의 TRQ 적용 품목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제21류)

| 이행년도      | 물량<br>(톤) | HS       | 2105.00-40        | 2106.90-09                                  | 2106.90-66                             | 2106.90-87                             |
|-----------|-----------|----------|-------------------|---------------------------------------------|----------------------------------------|----------------------------------------|
|           |           | 품명       | 아이스크림을 제외한<br>빙과류 | 조제식료품 (버터지가<br>5.5% 이하인 것, 기타<br>성분과 혼합한 것) | 기타 조제식료품<br>(밀크고형분이 전중량의<br>10% 초과인 것) | 기타 조제식료품<br>(밀크고형분이 전중량의<br>10% 이하인 것) |
|           |           | 기본<br>세율 | 50.2¢/kg + 17%    | 86.2¢/kg                                    | 70.4¢/kg + 8.5%                        | 28.8¢/kg + 8.5%                        |
| 1년차(12')  | 300       | 협정<br>세율 | 45.1¢/kg + 15.3%  | 77.5¢/kg                                    | 63.3¢/kg + 7.6%                        | 25.9¢/kg + 7.6%                        |
| 2년차(13')  | 309       |          | 40.1¢/kg + 13.6%  | 68.9¢/kg                                    | 56.3¢/kg + 6.8%                        | 23.0¢/kg + 6.8%                        |
| 3년차(14')  | 318       |          | 35.1¢/kg + 11.9%  | 60.3¢/kg                                    | 49.2¢/kg + 5.9%                        | 20.1¢/kg + 5.9%                        |
| 4년차(15')  | 328       |          | 30.1¢/kg + 10.2%  | 51.7¢/kg                                    | 42.2¢/kg + 5.1%                        | 17.2¢/kg + 5.1%                        |
| 5년차(16')  | 338       |          | 25.1¢/kg + 8.5%   | 43.1¢/kg                                    | 35.2¢/kg + 4.2%                        | 14.4¢/kg + 4.2%                        |
| 6년차(17')  | 348       |          | 20¢/kg + 6.8%     | 34.4¢/kg                                    | 28.1¢/kg + 3.4%                        | 11.5¢/kg + 3.4%                        |
| 7년차(18')  | 358       |          | 15¢/kg + 5.1%     | 25.8¢/kg                                    | 21.1¢/kg + 2.5%                        | 8.6¢/kg + 2.5%                         |
| 8년차(19')  | 369       |          | 10¢/kg + 3.4%     | 17.2¢/kg                                    | 14.0¢/kg + 1.7%                        | 5.7¢/kg + 1.7%                         |
| 9년차(20')  | 380       |          | 5¢/kg + 1.7%      | 8.6¢/kg                                     | 7.0¢/kg + 0.8%                         | 2.8¢/kg + 0.8%                         |
| 10년차(21') | 무제한       |          | 0                 | 0                                           | 0                                      | 0                                      |

자료: 협정문, 미국 실행 관세율표(HT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괄호는 연도

또한 미국은 6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게만 차별적 관세를 부여, 2016년 기준 해당 품목은 평균 5%의 관세가 남아 있다. 미국 측 제21류 평균 MFN 관세가 7.8%, 2016년 협정 관세가 0.5%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잔여 관세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 품목에 대한 2016년 한국의 對미 수출이 적기 때문에 남아 있는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4-11] 미국의 제21류 對한 잔여관세(2017년 기준) 품목 및 양허 현황

| HS         | 품명                                                         | MFN               | 양허유형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2101.12-32 |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br>또는 커피를 기제로한 조제품                            | 10%               | 10년균등 | 9%                | 8%                | 7%                | 6%             | 5%                | 4%                |
| 2105.00-05 | 아이스크림(코코아를<br>함유한것인지 여부 불문)                                | 20%               | 7년균등  | 17.1%             | 14.2%             | 11.4%             | 8.5%           | 5.6%              | 2.8%              |
| 2105.00-25 | 빙과류(유제품. add US note 1<br>to Ch. 4 <sup>24</sup> )에 명시된 것) | 20%               | 7년균등  | 17.1%             | 14.2%             | 11.4%             | 8.5%           | 5.6%              | 2.8%              |
| 2106.90-83 | 조제식료품 기타(기타,<br>밀크고형물 10% 미만)                              | 10%               | 10년균등 | 9%                | 8%                | 7%                | 6%             | 5%                | 4%                |
| 2106.90-22 | 버터 대용물(밀크 고형물 10%<br>이상, 버터지방 45% 이상)                      | 15.4¢/kg          | 10년균등 | 13.8¢/kg          | 12.3¢/kg          | 10.7¢/kg          | 9.2¢/kg        | 7.7¢/kg           | 6.1¢/kg           |
| 2106.90-15 | 혼합 알코올조제품(음료<br>베이스용, 알코올 20% 이상<br>50% 미만)                | 8.4¢/kg<br>+ 1.9% | 10년균등 | 7.5¢/kg<br>+ 1.7% | 6.7¢/kg<br>+ 1.5% | 5.8¢/kg<br>+ 1.3% | 5¢/kg+<br>1.1% | 4.2¢/kg<br>+ 0.9% | 3.3¢/kg<br>+ 0.7% |

자료: 협정문,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21류에서 한-미 간 교역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제2106.90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기타)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은 동 호에 대해 전체 21류 중 약 58%에 해당하는 9천 8백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이중 6천 7백만 달러가 제2106.90-4010호(김) 제품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은 동 호에 대해 전체 21류 중 약 90%에 해당하는 6억 5천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이중 6억 3천만 달러가 제2106.90-9099호(기타)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품목에 대한 양국의 양허 관세는 2017년 현재 모두 0%이다.

제2106.90호 중에서 한국 측 잔여관세는 홍삼 관련 제품을 제외하면 2017년 평균 1.9%로 높지 않은 반면, 미국 측의 제2106.90호 평균 관세는 4% 및 36.3¢/kg 등 다수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고, TRQ 물량도 규정함으로써 미국이 동 호에 대한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한국 측 잔여 관세가 높은 홍삼 관련 제품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7천 달러 정도로 미미하며 미국 측 수출 물량이 많은 품목의 경우 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제21류 품목 가운데 미국 측이 관세 관련한 재협상을 요구할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4) 제3류(어류·갑각류)

제3류 어류·갑각류에 대한 미국의 평균 기본세율은 0.7%, 2016년 협정세율은 0.2%이며 제3류 272개 품목 중 246개가 무관세이다. 한국의 기본세율은 16.4% (기준세율 17.4%), 2016년 협정세율은 4%이고, 제3류 441개 품목 중 195개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제3류의 한-미 FTA 체결 전후 5년간의 누적 교역 양을 살펴보면, 對미 수출은 FTA 발효 전 3.4억 달러에서 발효 후 5.4억 달러로 56.9% 증가하였고, 수입은 FTA 발효 전 6.2억 2달러에서 발효 후 10.5억 달러로 70.3% 증가하였다.

한국은 제0303호(냉동어류) 5개 품목에 대해 TRQ를 적용하여, 협정에 따라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연도별 Quota 내의 물량으로 한국 내 수입될 경우 무관세가 되고,

24) Additional U.S. Notes 1 : For the purposes of this schedule, the term "dairy products described in additional U.S. note 1 to chapter 4" means any of the following goods: malted milk, and articles of milk or cream (except (a) white chocolate and (b) inedible dried milk powders certified to be used for calibrating infrared milk analyzers); articles containing over 5.5 percent by weight of butterfat which are suitable for use as ingredients in the commercial production of edible articles (except articles within the scope of other import quotas provided for in additional U.S. notes 2 and 3 to chapter 18); or, dried milk, whey or buttermilk (of the type provided for in subheadings 0402.10, 0402.21, 0403.90 or 0404.10) which contains not over 5.5 percent by weight of butterfat and which is mixed with other ingredi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ugar, if such mixtures contain over 16 percent milk solids by weight, are capable of being further processed or mixed with similar or other ingredients and are not prepared for marketing to the ultimate consumer in the identical form and package in which imported.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협정 세율이 부과된다.

[표 4-12] 한국의 TRQ 적용 품목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제3류)

| 구 분     | 0303.34-0000(터벗, 냉동)<br>0303.39-0000(기타 납치류, 냉동) |      | 0303.67-0000(명태, 냉동)<br>0303.69-0000(기타 명태, 냉동) |      | 0303.89-9091(민어, 냉동) |       |
|---------|--------------------------------------------------|------|-------------------------------------------------|------|----------------------|-------|
| 기본/기준세율 | 10% / 10%                                        |      | 10% / 30%                                       |      | 10% / 63%            |       |
| 이행년도    | 물량 (톤)                                           | 협정세율 | 물량 (톤)                                          | 협정세율 | 물량 (톤)               | 협정세율  |
| 1년차     | 1,530                                            | 10%  | 4,000                                           | 30%  | 1,000                | 63%   |
| 2년차     | 1,652                                            | 10%  | 4,360                                           | 30%  | 1,050                | 63%   |
| 3년차     | 1,785                                            | 10%  | 4,752                                           | 30%  | 1,103                | 63%   |
| 4년차     | 1,927                                            | 10%  | 5,180                                           | 30%  | 1,158                | 63%   |
| 5년차     | 2,082                                            | 10%  | 5,646                                           | 30%  | 1,216                | 63%   |
| 6년차     | 2,248                                            | 10%  | 6,154                                           | 30%  | 1,276                | 63%   |
| 7년차     | 2,428                                            | 10%  | 6,708                                           | 30%  | 1,340                | 63%   |
| 8년차     | 2,622                                            | 10%  | 7,312                                           | 30%  | 1,407                | 63%   |
| 9년차     | 2,832                                            | 7.5% | 7,970                                           | 30%  | 1,477                | 47.2% |
| 10년차    | 3,058                                            | 5%   | 8,688                                           | 30%  | 1,551                | 31.5% |
| 11년차    | 3,303                                            | 2.5% | 9,469                                           | 24%  | 1,629                | 15.7% |
| 12년차    | 무제한                                              | 0    | 10,322                                          | 18%  | 무제한                  | 0     |
| 13년차    | -                                                | -    | 11,251                                          | 12%  | -                    | -     |
| 14년차    |                                                  |      | 12,263                                          | 6%   |                      |       |
| 15년차    |                                                  |      | 무제한                                             | 0    |                      |       |

자료: 협정문,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2016년 기준 미국이 한-미 FTA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26개에 달하는데, 제3류 총272개(HS 8단위) 품목 가운데 227개가 원래 무관세(MFN FREE)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종가·종량세가 남아있는 45개 품목 중에 약 57%인 26개 품목에 한국에만 차별적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4-13] 미국의 제3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어 현황

| HS         | 품명                      | MFN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0302.23-00 | 서대(신선,냉장)               | 1.1t/kg | 0.9t/kg | 0.8t/kg | 0.7t/kg | 0.6t/kg | 0.5t/kg |
| 0302.45-11 | 비늘 제거된 전갱이(신선,냉장)       | 3%      | 2.7%    | 2.4%    | 2.1%    | 1.8%    | 1.5%    |
| 0302.46-11 | 비늘 제거된 날쌔기(신선,냉장)       | 3%      | 2.7%    | 2.4%    | 2.1%    | 1.8%    | 1.5%    |
| 0302.54-11 | 비늘 제거된 민대구(신선,냉장)       | 3%      | 2.7%    | 2.4%    | 2.1%    | 1.8%    | 1.5%    |
| 0302.55-11 | 비늘 제거된 명태(신선,냉장)        | 3%      | 2.7%    | 2.4%    | 2.1%    | 1.8%    | 1.5%    |
| 0302.56-11 | 비늘 제거된 블루하이팅스(신선,냉장)    | 3%      | 2.7%    | 2.4%    | 2.1%    | 1.8%    | 1.5%    |
| 0302.59-11 | 비늘 제거된 기타 어류(신선,냉장)     | 3%      | 2.7%    | 2.4%    | 2.1%    | 1.8%    | 1.5%    |
| 0302.71-11 | 비늘 제거된 틸라피아(신선,냉장)      | 3%      | 2.7%    | 2.4%    | 2.1%    | 1.8%    | 1.5%    |
| 0302.72-11 | 비늘 제거된 메기(신선,냉장)        | 3%      | 2.7%    | 2.4%    | 2.1%    | 1.8%    | 1.5%    |
| 0302.73-11 | 비늘 제거된 잉어(신선,냉장)        | 3%      | 2.7%    | 2.4%    | 2.1%    | 1.8%    | 1.5%    |
| 0302.79-11 | 비늘 제거된 기타(신선,냉장)        | 3%      | 2.7%    | 2.4%    | 2.1%    | 1.8%    | 1.5%    |
| 0302.84-11 | 비늘 제거된 농어(신선,냉장)        | 3%      | 2.7%    | 2.4%    | 2.1%    | 1.8%    | 1.5%    |
| 0302.85-11 | 비늘 제거된 돔(신선,냉장)         | 3%      | 2.7%    | 2.4%    | 2.1%    | 1.8%    | 1.5%    |
| 0302.89-11 | 비늘 제거된 기타 어류(신선,냉장)     | 3%      | 2.7%    | 2.4%    | 2.1%    | 1.8%    | 1.5%    |
| 0302.91-20 | 철갑상어의 간,어란,어백(신선,냉장)    | 15%     | 13.5%   | 12%     | 10.5%   | 9%      | 7.5%    |
| 0303.33-00 | 서대(냉동)                  | 1.1t/kg | 0.9t/kg | 0.8t/kg | 0.7t/kg | 0.6t/kg | 0.5t/kg |
| 0303.34-00 | 터벗(냉동)                  | 1.1t/kg | 0.9t/kg | 0.8t/kg | 0.7t/kg | 0.6t/kg | 0.5t/kg |
| 0303.39-01 | 기타 넙치류(냉동)              | 1.1t/kg | 0.9t/kg | 0.8t/kg | 0.7t/kg | 0.6t/kg | 0.5t/kg |
| 0303.91-20 | 철갑상어의 간,어란,어백(냉동)       | 15%     | 13.5%   | 12%     | 10.5%   | 9%      | 7.5%    |
| 0305.20-20 | 철갑상어의 간,어란,어백(건조,훈제,염장) | 7.5%    | 6.7%    | 6%      | 5.2%    | 4.5%    | 3.7%    |
| 0305.63-20 | 건조·훈제하지 않은 염장 멸치        | 5%      | 4.5%    | 4%      | 3.5%    | 3%      | 2.5%    |
| 0305.69-20 | 건조·훈제하지 않은 염장 고등어       | 5%      | 4.5%    | 4%      | 3.5%    | 3%      | 2.5%    |
| 0305.69-40 | 건조·훈제하지 않은 염장 연어        | 3%      | 2.7%    | 2.4%    | 2.1%    | 1.8%    | 1.5%    |
| 0306.14-20 | 게살(냉동)                  | 7.5%    | 6.7%    | 6%      | 5.2%    | 4.5%    | 3.7%    |
| 0306.33-20 | 게살(신선,냉장)               | 7.5%    | 6.7%    | 6%      | 5.2%    | 4.5%    | 3.7%    |
| 0306.93-20 | 기타 게살                   | 7.5%    | 6.7%    | 6%      | 5.2%    | 4.5%    | 3.7%    |

자료: 한-미FTA 협정문, USIT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비늘 제거된(Scaled)’ 은 머리, 내장 그리고 비늘이 제거되지만 달리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한국과 미국의 제3류 잔여관세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관세 품목 개수 및 평균 관세가 미국에 비해 많이 남아 있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對한 수출이 가장 많은 제0303호(냉동어류) 중 35개 품목에 평균 6.2%의 관세가 남아있고, TRQ 적용 물품 모두 제0303호이며, 초과물량에 부과되는 관세가 높은 점 등을 들어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측도 제0303호를 가장 많이 수출하지만, 미국 측 관세가 남아있는 제0303.91-20호(철갑상어의 간,어란,어백(냉동)), 제0303.33-00호(냉동 서대), 제0303.34-00호(냉동 터벗) 등은 주요 생산품이 아니며 수출량도 미비하기 때문에 영향력은 거의 없다.

한국의 두 번째로 수출규모가 큰 제0307호(연체동물)와 세 번째로 수출규모가 큰 제0304호(어류의 필레) 모두 미국 측 관세가 없는 반면, 미국의 경우 제3류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0304호에 한국 측 관세가 10개 품목, 평균 6.5%의 관세가 남아있고 세 번째로 수출규모가 큰 제0306호(갑각류)에도 한국 측 관세가 19개 품목, 3.7%의 관세가 남아있어 제3류에 대한 미국 측의 전체적인 양허안 수정 요구가 예상된다.

[표 4-14] 한-미 제3류(HS 4단위) 잔여 관세 품목 현황

| 구분     | 품명          | 관세有 개수 |       | 평균관세  |               | 수출액     | 수입액     |
|--------|-------------|--------|-------|-------|---------------|---------|---------|
|        |             | 한국     | 미국    | 한국    | 미국            |         |         |
| 제3류    | -           | 195    | 26    | -     | -             | 123,685 | 225,040 |
| 제0301호 | 활어          | 14     | -     | 9.3%  | -             | 12,230  | 10,713  |
| 제0302호 | 신선·냉장 어류    | 39     | 14(1) | 10.3% | 1.9%(0.5t/kg) | 4,227   | 79      |
| 제0303호 | 냉동어류        | 35     | 1(3)  | 6.2%  | 7.5%(0.5t/kg) | 42,538  | 104,731 |
| 제0304호 | 어류의 필레      | 10     | -     | 6.5%  | -             | 19,338  | 69,297  |
| 제0305호 | 건조·염장·훈제 어류 | 11     | 4     | 10%   | 2.3%          | 10,003  | 299     |
| 제0306호 | 갑각류         | 19     | 3     | 12.1% | 3.7%          | 5,360   | 37,364  |
| 제0307호 | 연체동물        | 48     | -     | 9.7%  | -             | 28,547  | 2,101   |
| 제0308호 | 수생무척추동물     | 14     | -     | 10%   | -             | 1,443   | 456     |

자료: 관세청, USITC,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관세 및 수출입액은 2016년 기준, 괄호 안은 종량세, 단위: 1,000 달러

## (5) 제22류(음료·주류)

제22류 음료·주류에 대한 미국의 평균 기본세율은 1.4%, 2016년 협정세율은 0.3%이며 제22류 76개 품목 중 67개가 무관세이다. 한국의 기본세율은 24.5% (기준세율 21.1%), 2016년 협정세율은 4.7%로서 미국의 관세 인하 폭보다 한국의 관세 인하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2류 52개 품목 중 11개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제22류의 FTA 발효 전 5년간의 對미 누적 수출·수입 규모는 모두 2억 달러 초반으로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약 3천만 달러 미만이었으나, FTA 발효 후 5년간의 對미 누적 수입이 크게 증가, 누적 무역수지가 적자가 약 1.3억3천만 달러로 늘어나면서 높았던 산업 내지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류에서 미국은 1개 품목(제2202호)에 TRQ를 적용하였고, 한국은 1개 품목(제2207호)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연도별 Quota 내 물량으로 미국 내 수입되는 제2202.99-28호의 음료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그 외의 물량에는 기본세율이 10년 균등 철폐되는 관세로 부과된다. 그러나 제2202.99-28호에 대한 미국의 수입액은 USITC 수출입통계상에서 확인한 결과 2012년 이후 전무하여 제2202.99-28호에 적용된 TRQ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이 제2207.10-9010호에 적용한 세이프가드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4년차까지는 중간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중간 발동수준을 초과하되 주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협정상 기재된 중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행 5년차부터 주 발동수준 이하로 들어오는 모든 물량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제2207.10-9010호에 대한 한국의 수입액은 관세청 수출입통계상에서 확인한 결과 2000년 이후 전무하여, 제2207.10-9010호에 적용된 세이프가드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5] 미국과 한국의 TRQ·SG 적용 품목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제22류)**

| 구분        | 미국 TRQ                                              |                     | 한국 SG                      |                   |
|-----------|-----------------------------------------------------|---------------------|----------------------------|-------------------|
| HS/품명     | 2202.99-28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초콜릿을 제외한 밀크를 기제로 한 것) |                     | 2207.10-9010 /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                   |
| 기본/기준세율   | 23.5¢/liter + 14.9%                                 |                     | 30% / 270%                 |                   |
| 이행년도      | 물량 (톤)                                              | 협정세율                | 물량 (톤)                     | SG 관세율            |
| 1년차(12')  | 300                                                 | 21.1¢/liter + 13.4% | 주: 236 / 중간: 118           | 주: 264% / 중간: 55% |
| 2년차(13')  | 309                                                 | 18.8¢/liter + 11.9% | 주: 295 / 중간: 184           | 주: 258% / 중간: 40% |
| 3년차(14')  | 318                                                 | 16.4¢/liter + 10.4% | 주: 354 / 중간: 266           | 주: 253% / 중간: 25% |
| 4년차(15')  | 328                                                 | 14.1¢/liter + 8.9%  | 주: 413 / 중간: 361           | 주: 247% / 중간: 15% |
| 5년차(16')  | 338                                                 | 11.7¢/liter + 7.4%  | 주: 472                     | 주: 241%           |
| 6년차(17')  | 348                                                 | 9.4¢/liter + 5.9%   | 주: 496                     | 주: 217%           |
| 7년차(18')  | 358                                                 | 7.0¢/liter + 4.4%   | 주: 519                     | 주: 208%           |
| 8년차(19')  | 369                                                 | 4.7¢/liter + 2.9%   | 주: 543                     | 주: 199%           |
| 9년차(20')  | 380                                                 | 2.3¢/liter + 1.4%   | 주: 566                     | 주: 191%           |
| 10년차(21') | 무제한                                                 | 0                   | 주: 590                     | 주: 182%           |
| 11년차(22') | -                                                   | -                   | 주: 614                     | 주: 139%           |
| 12년차(23') |                                                     |                     | 주: 637                     | 주: 127%           |
| 13년차(24') |                                                     |                     | 주: 661                     | 주: 116%           |
| 14년차(25') |                                                     |                     | 주: 684                     | 주: 104%           |
| 15년차(26') |                                                     |                     | 주: 708                     | 주: 91.8%          |
| 16년차(27') |                                                     |                     | 해당없음                       | 0                 |

자료: 한-미FTA 협정문, 미국 실행관세율표(HT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괄호 안은 년도

한편, 미국이 맺고 있는 FTA 협정국 중 한국에게만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은 제 2202.99-22호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초콜릿을 제외한 밀크를 기제로 한 것)로서 17.5%의 기본세율이 7년 균등 철폐되어 2017년 기준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USITC 수출입통계에서 확인한 제2202.99-22호에 대한 미국의 수입액은 전무하여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6] 관세가 남아있는 한국의 품목의 對미 수출입 현황 (제22류)**

| HS           | 품명                 | 2017년 관세 | 누적수출액  | 누적수입액  |
|--------------|--------------------|----------|--------|--------|
| 2201.90-1000 | 얼음과 눈              | 3.2%     | 5      | 18     |
| 2202.90-2000 | 과실주스 음료            | 3.6%     | 18,692 | 79,565 |
| 2202.90-3000 | 식혜                 | 3.2%     | 2,237  | -      |
| 2203.00-0000 | 맥주                 | 4.2%     | 17,652 | 39,424 |
| 2205.10-000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포도주 | 6%       | -      | 2,141  |
| 2205.90-0000 | 기타 포도주             | 6%       | 18     | 1,294  |
| 2207.10-1000 | 조주정(粗酒精)           | 6%       | -      | 23     |
| 2207.10-9010 |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 SG       | -      | -      |
| 2208.70-2000 | 오가피주               | 8%       | -      | -      |
| 2208.90-1000 | 브랜디류               | 8%       | -      | -      |
| 2209.00-9000 | 기타 식초류             | 3.2%     | 1,835  | 710    |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對미)누적수출입액은 2012~2016년 합산금액임, 단위: 1,000 달러

한국 측의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인 발효 주정은 사실상 對미 수입이 전혀 없어 영향력이 미비하나, 한국 측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들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 2202.90-2000호(과실주스 음료) 및 제2203.00-0000호(맥주)의 對미 수입이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2017년 기준 각각 3.6%, 4.2%의 관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22류 중에는 과실주스 음료와 맥주가 미국 측이 관세 철폐를 요구할 만한 품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과일주스 음료의 경우 미국제품의 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 비중이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이 既체결한 FTA 중에서 한-칠레, 한-EU, 한-페루, 한-싱가포르, 한-터키 등의 FTA에서는 2017년 기준 동 제품에 대해 0%의 특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의 경우 9%의 기본세율이 10단계에 걸쳐 균등 인하되어 2017년에는 3.6%가 적용되고 2021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표 4-17] 한국의 제2202.90-2000호 제품 수입 현황

| 순위 | 2014 |        |      | 2015 |        |      | 2016 |        |      |
|----|------|--------|------|------|--------|------|------|--------|------|
|    | 국가 명 | 수입액    | 수입비중 | 국가 명 | 수입액    | 수입비중 | 국가 명 | 수입액    | 수입비중 |
| 1  | 미국   | 17,593 | 74%  | 미국   | 17,341 | 68%  | 미국   | 15,149 | 67%  |
| 2  | 이탈리아 | 1,236  | 5%   | 이탈리아 | 3,324  | 13%  | 이탈리아 | 3,354  | 15%  |
| 3  | 스페인  | 920    | 4%   | 캐나다  | 794    | 3%   | 일본   | 779    | 3%   |
| 4  | 중국   | 803    | 3%   | 스페인  | 787    | 3%   | 스페인  | 578    | 3%   |
| 5  | 독일   | 700    | 3%   | 싱가포르 | 770    | 3%   | 태국   | 472    | 2%   |

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단위: 1,000 달러

## (6) 제16류(육류·어류 조제품)

제16류 육류·어류 조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기본세율은 3.6%, 2016년 협정세율은 1.1%이며, 제16류 117개 품목 중 90개가 무관세이다. 한국의 기본세율은 22.3% (기준세율 23.0%), 2016년 협정세율은 4.1%이고 제16류 110개 품목 중 28개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다.

제16류의 경우, FTA 발효 전 5년간의 對미 누적수입(1.5억 달러)보다 누적수출(1.6억 달러)이 더 많은 흑자 품목이었으나, FTA 발효 후 5년간의 對미 누적 수입액(2.3억 달러)이 누적 수출액(1.7억 달러)을 크게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전체 제16류 중 약 20%에 해당하는 22개 품목에 대해 미국이 FTA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 중 한국에게만 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세율은 2016년 종가세 기준 평균 3.5%이다.

한국과 미국의 제16류 잔여관세 품목 수는 각각 28개, 27개로 비슷하나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다.

한국은 제1604호와 제1605호에 對미 수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1604호 22개 품목에 평균관세 4.9%가, 1개 품목에 0.5¢/kg의 관세가 남아 있고 제1605호 3개 품목에 3.2%의 평균관세가 남아 있다.

제1604호와 제1605호의 잔여 관세 품목 가운데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제1605.51호(조제·보존처리된 굴)로서 제16류 수출 중 약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측 1.8%(2017년 기준)의 관세가 남아있다. 제1604.14호(조제·보존처리된 다랑어·가다랑어) 또한 수출이 많은 품목으로서(전체 수출의 약 7%) 미국 측 6.3%(2017년 기준)의 관세가 남아있다.

[표 4-18] 미국의 제16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허 현황

| 분류                                                               | HS         | 품명                                                                       | MFN      | 양허유형   | 2016     |
|------------------------------------------------------------------|------------|--------------------------------------------------------------------------|----------|--------|----------|
| 제1604호<br>(조제하거나<br>보존처리한<br>어류, 캐비아,<br>어란으로<br>조제한 캐비아<br>대용물) | 1604.13-30 | 정어리, 사르디넬라, 브리스팅, 스프래트(껍질을 벗기거나 또는 뼈를 발라낸 것)-기름에 담근 것, 밀폐용기에 넣은 것        | 20%      | 10년 균등 | 10%      |
|                                                                  | 1604.14-40 | 다랑어 및 가다랑어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기름에 담그지 않은 것 6.8kg이상으로 벌크상태인 것 또는 내포장용기에 넣은 것 | 1.1\$/kg |        | 0.5\$/kg |
|                                                                  | 1604.14-50 | 다랑어 및 가다랑어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6.8kg이상으로 벌크 상태아닌 것 또는 내포장용기에 넣은 것             | 6%       |        | 3%       |
|                                                                  | 1604.14-70 | 가다랑어 -기름에 담근 것                                                           | 4.9%     |        | 2.4%     |
|                                                                  | 1604.14-80 | 가다랑어 -기름에 담그지 않은 것                                                       | 6%       |        | 3%       |
|                                                                  | 1604.17-10 | 뱀장어 -밀폐용기에 넣은 것                                                          | 4%       |        | 2%       |
|                                                                  | 1604.17-40 | 뱀장어 필렛 -조리되거나 기름에 담그지 않은 것)                                              | 10%      |        | 5%       |
|                                                                  | 1604.17-50 | 기타 뱀장어 필렛                                                                | 7.5%     |        | 3.7%     |
|                                                                  | 1604.17-80 | 기타 뱀장어                                                                   | 6%       |        | 3%       |
|                                                                  | 1604.18-10 | 상어지느러미(밀폐용기에 넣은 것)                                                       | 4%       |        | 2%       |
|                                                                  | 1604.18-90 | 기타 상어지느러미                                                                | 6%       |        | 3%       |
|                                                                  | 1604.19-10 | 가다랑어, 방어, 대구류 (원상·조각으로한 것에 한하며 다진 것은 제외)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름에 담그지 않은 것       | 4%       |        | 2%       |
|                                                                  | 1604.19-22 | 기타 (가다랑어, 방어, 대구류 제외)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름에 담그지 않은 것                          | 4%       |        | 2%       |
|                                                                  | 1604.19-25 | 가다랑어, 방어, 대구류 (원상·조각으로한 것에 한하며 다진 것은 제외)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름에 담근 것           | 5%       |        | 2.5%     |
|                                                                  | 1604.19-32 | 기타 (가다랑어, 방어, 대구류 제외)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름에 담근 것                              | 4%       |        | 2%       |
|                                                                  | 1604.19-41 | 기타 필렛 -조리되거나 기름에 담그지 않은 것                                                | 10%      |        | 5%       |
|                                                                  | 1604.19-51 | 기타 필렛 -조리되거나 기름에 담근 것                                                    | 7.5%     |        | 3.7%     |
|                                                                  | 1604.19-82 | 기타 보존처리된 어류(원상·조각으로한 것에 한하며 다진 것은 제외)                                    | 6%       |        | 3%       |
|                                                                  | 1604.31-00 | 캐비아                                                                      | 15%      |        | 7.5      |
| 제1605호<br>(조제하거나<br>보존처리한<br>갑각류·연체동<br>물·기타 수생<br>무척추동물)        | 1605.51-50 | 조제·보존처리된 굴(훈제된 것은 제외)                                                    | 4.7%     | 10년 균등 | 2.3%     |
|                                                                  | 1605.56-15 | 익힌 조개 -밀폐용기에 넣은 것 (680g 이하)                                              | 10%      |        | 5%       |
|                                                                  | 1605.58-55 | 조제·보존처리된 달팽이                                                             | 5%       |        | 2.5%     |

자료: 한-미FTA 협정문, USIT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미국의 對한 수출은 제1601호와 제1602호가 전체 제16류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1602호 14개 품목에 대해 한국의 평균 관세가 20.6% 남아 있다.

미국 제16류 수출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는 제1601호의 한국 측 관세는 현재 0%이고, 두 번째로 수출이 많은 제1602호에는 14개 품목에 평균 20.6%의 한국 측 관세가 남아있

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수출품은 제1602.41호(조제·보존처리한 돼지 넓적다리살)과 제1602.49호(기타 조제·보존처리한 돼지고기)로서 제16류 수출 중 약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측 관세는 0%이다.

[표 4-19] 한-미 제16류(HS 4단위) 잔여 관세 품목 현황

| 구분     | 품명                | 관세有 개수 |       | 평균관세  |               | 수출액    | 수입액    |
|--------|-------------------|--------|-------|-------|---------------|--------|--------|
|        |                   | 한국     | 미국    | 한국    | 미국            |        |        |
| 제16류   | -                 | 28     | 27    | -     | -             | 37,266 | 53,931 |
| 제1601호 | 소시지 및 유사 조제품      | -      | -     | -     | -             | 35     | 33,455 |
| 제1602호 | 기타 조제·보존처리한 육·설육  | 14     | (1)   | 20.6% | (1.4¢/kg)     | 3,079  | 17,958 |
| 제1603호 | 육·어류·갑각류 등의 추출물   | 2      | -     | 18.7% | -             | 530    | 87     |
| 제1604호 | 조제·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 11     | 22(1) | 10%   | 4.9%(0.5¢/kg) | 15,145 | 368    |
| 제1605호 | 조제·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 1      | 3     | 10%   | 3.2%          | 18,476 | 2,064  |

자료: 관세청, USITC,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관세 및 수출입액은 2016년 기준, 괄호 안은 종량세, 단위: 1,000 달러

이와 같이 미국의 對한 수출 품목의 약 90%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고, 수출 주력 상품들은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제16류 품목에 대해 미국 측이 관세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제16류 품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 측도 제1604호 및 제1605호의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의 조기 철폐 및 인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7) 제7류(식용채소)

제7류 식용채소에 대한 미국의 평균 기본세율은 3.6%, 2016년 협정세율은 1.1%이며, 제7류 185개 품목 중 179개가 무관세이다. 한국의 기본세율은 28.9% (농림축산물양허관세 116.7%), 2016년 협정세율은 40.6%로 큰 관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제7류 151개 품목 중 92개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다.

한국의 제7류의 경우, 기준세율(농림축산물양허관세)은 평균 116.7%로 매우 높았으나, FTA 발효 5년차인 2016년 기준으로 기준관세에서 약 65%가 인하되면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FTA 수입활용율이 92.4%로 FTA 수출활용률(64.3%)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제7류의 FTA 체결 전 5년간의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천2백만 달러이었으나, 체결 후 5년간의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6천9백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제7류 중 19개 품목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양파, 마늘, 고추, 콩류, 고구마, 기타 뿌리·괴경류 등으로서 한국이 주로 생산하는 농산품들이다.

[표 4-20] 한국의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제7류)

| 분류       | HS           | 품명           | 발동수준(톤) | SG 관세율 | 철폐 년도           |
|----------|--------------|--------------|---------|--------|-----------------|
| 양파       | 0703.10-1000 | 양파           | 3,734   | 135%   | 19년차<br>(2030년) |
|          | 0712.20-0000 | 건조 양파        |         |        |                 |
| 마늘       | 0703.20-1000 | 껍질을 깠 마늘     | 1,476   | 360%   | 19년차<br>(2030년) |
|          | 0703.20-9000 | 기타 마늘        |         |        |                 |
|          | 0711.90-1000 | 보존처리한 마늘     |         |        |                 |
|          | 0712.90-1000 | 건조 마늘        |         |        |                 |
| 고추       | 0709.60-1000 | 단고추(벨타입)     | 1,064   | 270%   | 19년차<br>(2030년) |
|          | 0709.60-9000 | 기타 고추        |         |        |                 |
|          | 0711.90-5091 | 보존처리한 고추류 열매 |         |        |                 |
| 콩류       | 0713.31-9000 | 기타 건조 녹두     | 476     | 543%   | 16년차<br>(2027년) |
|          | 0713.32-9000 | 기타 건조 팥      |         | 376%   |                 |
| 고구마      | 0714.20-1000 | 신선 고구마       | 424     | 323%   | 11년차<br>(2022년) |
|          | 0714.20-2000 | 건조 고구마       |         |        |                 |
|          | 0714.20-3000 | 냉장 고구마       |         |        |                 |
|          | 0714.20-9000 | 기타 고구마       |         |        |                 |
| 뿌리 및 괴경류 | 0714.30-9000 | 기타 Yam       | 30      | 323%   | 11년차<br>(2022년) |
|          | 0714.40-9000 | 기타 토란        |         |        |                 |
|          | 0714.50-9000 | 기타 아메리카토란    |         |        |                 |
|          | 0714.90-9090 | 기타 뿌리 및 괴경류  |         |        |                 |

자료: 한-미FTA 협정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발동수준 및 관세율은 5년차(2016년) 기준

미국은 제0701호(감자, 신선·냉장)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나, 한국은 제7류 품목 중에서 특별히 제0701.90-0000호(종자용을 제외한 기타 신선·냉장 감자)에 대해 계절관세 및 TRQ를 적용하고 있다.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칩용 감자는 비수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성수기인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7년차까지 기준관세율(304%)이 유지된다. 동 관세는 이행 8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칩용 및 종자용을 제외한 기타 감자는 협정상 규정된 물량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가 적용되고, 초과 물량의 상품에 대해서는 기준관세율(304%)이 유지된다.

[표 4-21] 제0701.90-0000호의 한국의 관세 양허 현황

| 품명                     | 구분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칩용 감자                  | 계절관세 | 12월 ~ 다음해 4월<br>(비수기) | 0%    | 0%    | 0%    | 0%    | 0%    |
|                        |      | 5월 ~ 11월<br>(성수기)     | 304%  | 304%  | 304%  | 304%  | 304%  |
| 기타 감자 (칩용<br>및 종자용 제외) | TRQ  | 물량(톤)                 | 3,000 | 3,090 | 3,183 | 3,278 | 3,377 |
|                        |      | 협정세율                  | 304%  | 304%  | 304%  | 304%  | 304%  |

자료: 한-미FTA 협정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기타 감자(칩용 및 종자용 제외)의 경우,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

제7류 신선 채소 중에서 對미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감자(제0701.90호)의 경우, 연도별 총 수입액을 살펴보면 미국은 2015년까지 1위의 수입국으로 한국의 전체 감자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6년 28%까지 감소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이중 칩용 감자에 대해 한-미 FTA와 한-호주 FTA 모두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비성수기에는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한-미 FTA의 경우 성수기에 304%가 한-호주 FTA에는 2017년 기준 22.95%가 적용되고 있다. 호주는 2014년 12월 협정 발효 이후 균등 인하되고 있으나 미국은 8년차인 2019년부터 균등 인하될 예정이며, 미국이 2017년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일부 지역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조치 철회를 위해 계속 협상 중에 있다고 밝힌 바, 미국 측에서 비관세 분야 뿐 아니라 관세 분야에서도 감자의 계절관세 및 관세율할당에 대한 조건 완화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표 4-22] 한국의 감자(제0701.90호) 수입 현황

|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
|     | 수입증량     | 수입비중 | 수입증량     | 수입비중 | 수입증량     | 수입비중 | 수입증량   | 수입비중 |
| 미국  | 17,344.3 | 63%  | 15,256.6 | 72%  | 22,780.1 | 61%  | 9,320  | 28%  |
| 호주  | 10,310.1 | 37%  | 5,942.0  | 28%  | 14,344.5 | 39%  | 24,220 | 72%  |
| 러시아 |          | 0%   | 12.8     | 0%   |          | 0%   |        | 0%   |
| 일본  |          | 0%   | 0.3      | 0%   |          | 0%   |        | 0%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단위: 톤)

한편, 제7류 가운데 미국이 한-미 FTA에만 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품목은 5개 품목으로 2017년 종가세 기준 평균 3.7%의 관세가 남아있다. 제7류 중에서 미국 측 對한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들은 실제 교역량이 미비하여 큰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4-23] 미국의 제7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어 현황

| HS         | 품명                                            | MFN     | 양허유형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0703.10-40 | 양파(양파 세트 또는 알이 작은 양파 이외 지름 16mm미만, 쪽파, 신선/냉장) | 3.14/kg | 10년균등 | 2.74/kg | 2.44/kg | 2.14/kg | 1.84/kg | 1.54/kg | 1.24/kg |
| 0703.90-00 |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기타, 신선 또는 냉장)                   | 20%     | 10년균등 | 18%     | 16%     | 14%     | 12%     | 10%     | 8%      |
| 0704.90-40 | 콜라비, 케일 및 유사한 식용 배추속(기타 신선/냉장)                | 20%     | 7년균등  | 17.1%   | 14.2%   | 11.4%   | 8.5%    | 5.7%    | 2.8%    |
| 0706.10-05 | 당근(신선/냉장, 크기 줄인것)                             | 14.9%   | 7년균등  | 12.7%   | 10.6%   | 8.5%    | 6.3%    | 4%      | 2.1%    |
| 0710.10-00 | 감자(냉동)                                        | 14%     | 7년균등  | 12%     | 10%     | 8%      | 6%      | 4%      | 2%      |

자료: 한-미FTA 협정문, USIT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8) 제11류(밀가루·전분)

제11류 밀가루·전분에 대한 미국의 평균 기본세율은 4.2%, 2016년 협정세율은 0%이며, 제11류 38개 모든 품목이 무관세이다. 한국의 기본세율은 7.5% (농림축산물양허관세 313.1%), 2016년 협정세율은 144%로 극명한 관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제11류 47개 품목 중 31개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다.

제11류는 FTA발효 이후 5년간의 對미 누적 수출은 감소하고 누적 수입은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에서 적자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며, 산업내지수가 0.94에서 0.73으로 하락하였다.

제11류에는 쌀 관련 제품 등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정 내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1102.90-2000호(쌀가루) · 제1103.19-3000호(부순 알곡·거친 가루; 쌀로 만든 것) · 제1103.20-2000호(펠릿; 쌀로 만든 것) · 제1104.19-1000호(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것; 쌀로 만든 것) 등 4개는 미양허 품목이다.

또한 전체 제11류 중 31.3%에 해당하는 15개 품목에 세이프가드를 규정하고 있으며 발동수준 및 적용 관세율 등은 품목마다 상이하다.

제1102호 내지 제1105호의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은 2016년 세이프가드 발동수준 이하로 수입되는 물량의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고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세이프가드 관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맥아(제1107.10호) 및 옥수수전분(제1108.12호)은 TRQ가 별도로 규정되고 있으나 할당 물량이 세이프가드 발동물량과 동일하여, 발동수준 이하로 수입되는 물량의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그 외 감자·매니옥·고구마·기타 전분은 2016년 기준 2.5톤 이하 물량에 한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2.5톤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발동수준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세이프가드 관세율이 부과된다.

[표 4-24] 한국의 제11류 세이프가드 품목 및 현황 (2016)

| HS           | 품명                | 발동수준   | SG 관세율 | 협정 세율  | 발동수준 내 무관세 물량 |
|--------------|-------------------|--------|--------|--------|---------------|
| 1102.90-9000 | 기타 곡물가루           | 163    | 715%   | 115.2% | -             |
| 1103.20-9000 | 기타 펠릿             |        |        |        |               |
| 1104.19-9000 | 압착된 기타 곡물         |        |        |        |               |
| 1104.29-1000 | 울무로 만든 가공 곡물      |        |        |        |               |
| 1104.29-9000 | 기타 가공 곡물          |        |        |        |               |
| 1105.10-0000 | 감자의 분, 조분, 분말     | 5,628  | 255%   | 121.6% | -             |
| 1105.20-0000 | 감자의 플레이크, 알갱이, 펠릿 |        |        |        |               |
| 1107.10-0000 | 볶지 않은 맥아          | 9,742  | 240%   | 161.4% | TRQ(9,742)    |
| 1108.12-1000 | 식품용 옥수수전분         | 11,255 | 202%   | 135.6% | TRQ(11,255)   |
| 1108.12-9000 | 기타 옥수수전분          |        |        |        |               |
| 1108.13-0000 | 감자전분              | 478    | 406%   | 273%   | 2.5           |
| 1108.14-1000 | 식품용 매니옥전분         | 866    | 406%   | 273%   | 2.5           |
| 1108.14-9000 | 기타 매니옥전분          |        |        |        |               |
| 1108.19-1000 | 고구마전분             | 404    | 215%   | 144.7% | 2.5           |
| 1108.19-9000 | 기타 전분             | 106    | 715%   | 480.1% | 2.5           |

자료: 한-미FTA 협정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발동수준 및 관세율은 5년차(2016년) 기준, (단위: 톤)

제11류는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을 제외하더라도 한국 측 나머지 품목들의 2016년 평균 관세가 42.3%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은 對미 수입이 없거나 미비하여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

제11류의 對미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제1106.30호(제8류의 가루)로서 2016년 기준 제11류 수입(1.4억 달러) 중 약 58%(8천백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관세는 0%이다.

그 뒤를 이어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인 제1105.10호(감자가루)가 약 18%(2천 6백만 달러), 제1105.20호(감자 플레이크·펠릿)가 약 10%(1천3백만 달러) 수입되고 있다. 제1105.10호(감자가루)의 2016년 수입 중량은 1,715톤이며 제1105.20호(감자 플레이크·펠릿)는 891톤으로 두 품목의 총 수입 중량은 2,606톤으로서 세이프가드 발동 수준인 5,628톤의 46% 수준이다. 2016년 수입된 물량은 세이프가드 발동 수준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인

다. 맥아(제1107.10호)와 옥수수전분(제1108.12호) 역시 2016년에 수입된 물량이 각각 28.2톤과 80.8톤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수준인 9,742톤과 11,255톤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그 외 2016년 감자전분(제1108.13호)과 고구마 및 기타 전분(제1108.19호)의 수입 물량은 각각 0.4톤과 0.3톤으로 2.5톤 이하 물량이 수입되고 있어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제11류 중에서 세이프가드 및 TRQ를 규정하고 있는 물품들이 모두 세이프가드 발동수준 및 TRQ 할당량 미만의 물량으로 수입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무관세 적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 2.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

산업간 무역의 교역형태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제87류(일반차량), 제40류(고무제품), 제89류(선박) 등이다. 이들 품목들은 FTA 발효 전후 5년간 누적수출액이 누적수입액 보다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심화되었다.

한편, 산업내 무역의 교역형태에서 산업간 무역의 교역형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은 제72류(철강), 제73류(철강제품), 제94류(가구류·조명기구), 제82류(비금속 공구), 제83류(비금속 제품) 등이다. 이들 품목들은 모두 한-미 FTA 발효이후 산업내지수가 감소하였고, 누적 수출 증가액이 누적 수입 증가액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동등한 경쟁구도에서 점차 한국 측이 경쟁력을 선점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4-25] 주요 무역수지 흑자 증가 품목의 수출·입 현황

| 구분                    | HS2 | 수입면세 | 수출면세 | 수입할용률 | 수출할용률 | 前수출액       | 後수출액        | 前수입액      | 後수입액      | 무역수지변화     | 前 IIT | 後 IIT |
|-----------------------|-----|------|------|-------|-------|------------|-------------|-----------|-----------|------------|-------|-------|
| 산업간<br>무역             | 87  | 0    | 0*   | 75.9  | 67.3  | 53,605,247 | 101,956,010 | 3,322,390 | 7,642,238 | 44,030,907 | 0.12  | 0.14  |
|                       | 40  | 0*   | 0    | 68.9  | 72.8  | 6,422,614  | 9,092,631   | 885,492   | 1,129,796 | 2,425,713  | 0.24  | 0.22  |
|                       | 89  | 0    | 0    | 73.7  | 15.9  | 2,359,619  | 4,009,930   | 184,133   | 199,201   | 1,635,240  | 0.14  | 0.09  |
| 산업내<br>→<br>산업간<br>무역 | 72  | 0    | 0    | 99.5  | 75.3  | 5,862,843  | 9,215,046   | 6,938,446 | 3,689,109 | 6,601,527  | 0.92  | 0.57  |
|                       | 73  | 0    | 0*   | 76.8  | 65.1  | 8,539,852  | 12,839,069  | 3,070,034 | 3,813,637 | 3,555,615  | 0.53  | 0.46  |
|                       | 94  | 0    | 0*   | 75.0  | 57.2  | 636,684    | 1,647,963   | 494,825   | 483,523   | 1,022,574  | 0.87  | 0.45  |
|                       | 83  | 0    | 0*   | 49.8  | 56.3  | 590,799    | 1,527,265   | 286,678   | 360,658   | 862,487    | 0.65  | 0.38  |
|                       | 82  | 0    | 0*   | 67.2  | 53.9  | 898,259    | 1,498,532   | 324,102   | 335,739   | 588,640    | 0.53  | 0.37  |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FTA前 조회기간: 2007.03 ~ 2012.02 / FTA後 조회기간: 2012.02 ~ 2017.02, \* : 일부 세번 제외

산업내 무역지수가 크게 감소하고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들에 대한 한국의 특혜 양허 관세는 모두 0%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제87류(일반차량)에 6개, 제73류(철강제품)에 7개, 제94류(가구류·조명기구)에 2개, 제82류(비금속 공구)에 7개, 제83류(비금속 제품)에 1개 품목에 양허 관세가 남아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이러한 품목들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품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이들 품목의 한-미 FTA 두 당사국들의 류별 평균 MFN 관세율 및 연도별 특혜세율 등을 [표 4-26]에 정리하였다.

[표 4-26] 주요 무역수지 흑자 품목의 류별 평균 관세 현황

| HS2 |         | 류별 개수*<br>(FREE/관세율) | MFN(기본세율) | 기준세율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한국만** |     |                                              |
|-----|---------|----------------------|-----------|------|------|------|------|------|------|-------|-----|----------------------------------------------|
|     |         |                      |           |      |      |      |      |      |      | 개수    | 비중  | 품목                                           |
| 87  | 미국 측 관세 | 201(195/6)           | 2.4       | -    | 1.1  | 1    | 0.9  | 0.9  | 0.8  | 6     | 2.9 | 8704(6개)                                     |
|     | 한국 측 관세 | 192(192/0)           | 8.6       | 8    | 0.7  | 0.6  | 0.5  | 0.5  | 0    | -     | -   | -                                            |
| 73  | 미국 측 관세 | 250(243/7)           | 1.1       | -    | 0.2  | 0.2  | 0.1  | 0.1  | 0.1  | 7     | 2.8 | 7307(6개)<br>7321(1개)                         |
|     | 한국 측 관세 | 210(210/0)           | 8         | 4.1  | 0.3  | 0.1  | 0    | 0    | 0    | -     | -   | -                                            |
| 94  | 미국 측 관세 | 91(89/2)             | 2.2       | -    | 0.3  | 0.2  | 0.2  | 0.2  | 0.1  | 2     | 2.1 | 9405(2개)                                     |
|     | 한국 측 관세 | 89(88/1)             | 8         | 3.6  | 0.3  | 0.2  | 0.1  | 0.1  | 0    | -     | -   | -                                            |
| 83  | 미국 측 관세 | 59(58/1)             | 3         | -    | 0    | 0    | 0    | 0    | 0    | 1     | 1.6 | 8302(1개)                                     |
|     | 한국 측 관세 | 53(53/0)             | 8         | 8    | 0.1  | 0    | 0    | 0    | 0    | -     | -   | -                                            |
| 82  | 미국 측 관세 | 135(128/7)           | 3.1       | -    | 0.4  | 0.3  | 0.2  | 0.2  | 0.1  | 7     | 5.1 | 8203(1개)<br>8211(1개)<br>8213(2개)<br>8215(3개) |
|     | 한국 측 관세 | 147(147/0)           | 8         | 8    | 0.9  | 0.5  | 0.1  | 0.1  | 0    | -     | -   | -                                            |

자료: USITC,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미국의 경우 HS 8단위, 한국의 경우 HS 10단위 / 괄호 안은 2017년 기준 관세 현황

주\*\*: 2017년 기준 미국의 既체결 협정 중 한국만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

제940591호에 대한 미국의 특혜양허 관세가 4.8%로 남아있으나 관세청 수출입 통계자료에서 확인한 동일 호에 대한 2016년 한국의 수출액은 전혀 없고 수입액은 2만 불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한국 측의 관세 인하 및 철폐 등의 재협상 요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830210호(경첩)의 경우 0.8%의 관세가 남아 있고 2020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한국의 2016년 수출액은 3천2백만 달러이고 수입은 4백만 달러여서 3천만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다. 이 품목의 수출액은 제83류 전체 수출액의 9% 정도이고 남아 있는 관세율이 미미하여, 한국 측의 재협상 논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73류(철강제품)은 2016년 18억 달러를 수출하고 5.6억 달러를 수입하여 12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중 관세가 남아 있는 7개 품목들의 수출 금액은 전

제 73류 전체 수출의 5%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철강제품은 미국 측의 민감 품목이므로 재협상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제 87류(일반차량)와 제82류(비금속 공구)에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들의 수출은 거의 없거나 2백만 달러 미만의 금액이어서 한국 측의 추가 재협상 논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들 품목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한 동류의 품목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양상을 보이므로 관세 조기 철폐라는 한국 측의 재협상 요구에 미국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4-27] 미국의 對한 잔여관세 품목들의 특혜관세율 및 한국의 수출·입 현황

| HS2 | 품목번호       | 품목 명                 | 미국 특혜 관세율       | 수출액    | 수입액    |
|-----|------------|----------------------|-----------------|--------|--------|
| 87  |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25%             | 190    | 1,806  |
|     | 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25%             | 194    | 13     |
|     | 8704.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25%             | 25     | 1,471  |
|     | 8704.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25%             | 0      | 12,285 |
|     | 8704.32    | 일반 화물 자동차            | 25%             | 0      | 0      |
|     | 8704.90    | 기타                   | 25%             | 114    | 49     |
| 73  | 7307.91-10 | 플랜지(flange)          | 1.3%            | 5,535  | 6,065  |
|     | 7307.91-30 |                      | 1.2%            |        |        |
|     | 7307.91-50 |                      | 2.2%            |        |        |
|     | 7307.93-30 |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 3.6%            | 38,485 | 1,007  |
|     | 7307.93-60 |                      | 3.2%            |        |        |
|     | 7307.93-90 |                      | 2.5%            |        |        |
|     | 7321.11-10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화 기타 연료 겸용 | 2.2%            | 55,674 | 624    |
| 94  | 9405.91-10 | 유리로 만든 것             | 4.8%            | 0      | 20     |
|     | 9405.91-30 |                      |                 |        |        |
| 83  | 8302.10    | 경첩                   | 0.8%            | 32,781 | 3,944  |
| 82  | 8203.20-40 | 못 뽑기                 | 4.8%            | 0      | 0      |
|     | 8211.91-30 |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 0.3% each +4.2% | 87     | 1,052  |
|     | 8213.00-30 | 매니큐어용 가위             | 0.6% each +1.7% | 5      | 7      |
|     | 8213.00-90 | 기타 가위                | 1.2% each +1.2% | 88     | 43     |
|     | 8215.99-01 | 스푼                   | 0.3% each +6.3% | 0      | 0      |
|     | 8215.99-10 |                      | 0.2% each +2.5% | 0      | 0      |
|     | 8215.99-30 | 국자와 스킴머(skimmer)     | 5.6%            | 108    | 1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단위: 1,000 달러

양허 관세율은 2017년, 수출·입 액은 2016년 자료

이와 같이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한 품목들은 대부분 미국 측 양허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거나 관세가 남아 있어도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그러므로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관세 장벽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와 같은 무역구제조치와 별개로, 한-미 FTA의 재협상이 진행될 때 FTA 수출 활용률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에 대한 원산지 규정 내용들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산업내 무역지수가 증가한 품목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감소하여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의 교역형태로 전환된 품목은 제88류(항공기·우주선), 제93류(무기·총포탄),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0류(유리·유리제품), 제36류(화약류·화공품), 제37류(사진용·염화용 재료) 등이다. 이들 품목은 FTA 발효 전후 5년간 누적 수입액보다 누적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된 경우들로서 상대적으로 한국 측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품목들이다.

한편,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은 증가하였으나, FTA발효 전 대비 수출량 증가로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된 품목은 제33류(조제향료·화장품) 등이 있다. 이러한 품목은 對미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 FTA발효 이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었으나,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표 4-28] 주요 산업내무역 전환 품목의 수출·입 현황

| 구분   | HS2 | 수입관세 | 수출관세 | 수입활용률 | 수출활용률 | 前수출액      | 後수출액      | 前수입액       | 後수입액       | 무역수지변화    | 前 IIT | 後 IIT |
|------|-----|------|------|-------|-------|-----------|-----------|------------|------------|-----------|-------|-------|
| 적자 ↓ | 88  | 0    | 0    | 87.0  | 69.4  | 2,652,598 | 3,960,501 | 10,415,334 | 10,498,584 | 1,224,645 | 0.41  | 0.55  |
|      | 93  | 0    | 0    | 85.6  | 26.0  | 352,273   | 791,556   | 1,327,638  | 1,342,159  | 424,770   | 0.42  | 0.74  |
|      | 76  | 0    | 0.5  | 64.3  | 55.7  | 571,296   | 991,394   | 2,707,853  | 2,865,072  | 262,880   | 0.35  | 0.51  |
|      | 70  | 0    | 1.3  | 80.6  | 52.8  | 299,296   | 561,770   | 1,047,276  | 1,189,981  | 119,773   | 0.44  | 0.64  |
|      | 36  | 0    | 0    | 77.1  | -     | 7,553     | 56,785    | 53,788     | 85,870     | 17,148    | 0.25  | 0.80  |
|      | 37  | 0    | 0    | 74.1  | 75.4  | 209,073   | 436,703   | 588,631    | 351,544    | 464,717   | 0.52  | 0.89  |
| 적자 ↑ | 33  | 0    | 0    | 64.3  | 49.2  | 240,996   | 977,254   | 1,354,130  | 2,277,902  | -187,511  | 0.30  | 0.60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단위: 1,000 달러, 활용률은 2016년 자료

주: 前은 2007년 3월~2012년 2월, 後는 2012년 3월~2017년 2월까지의 누적 금액

관세 양허 측면에서 재협상이 가능한 품목은 2016년 기준으로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들로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감소한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0류(유리·유리제품)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의 한-미 FTA 두 당사국들의 류별 평균 MFN 관세율 및 연도별 특혜세율 등을 [표 4-29]에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품목별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표 4-29] 주요 산업내무역 전환 품목의 류별 평균 관세 현황

| HS2 |         | 류별 개수*<br>(FREE/관세有) | MFN(기본세율) | 기준세율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한국만** |      |                                                                                  |
|-----|---------|----------------------|-----------|------|------|------|------|------|------|-------|------|----------------------------------------------------------------------------------|
|     |         |                      |           |      |      |      |      |      |      | 개수    | 비중   | 품목                                                                               |
| 76  | 미국 측 관세 | 65(46/19)            | 3.7       | -    | 1.6  | 1.3  | 1.0  | 0.9  | 0.5  | 19    | 29.2 | 7603(2개)<br>7604(3개)<br>7605(2개)<br>7606(3개)<br>7607(6개)<br>7608(2개)<br>7609(1개) |
|     | 한국 측 관세 | 60(60/0)             | 7.4       | 7.6  | 1.0  | 0.6  | 0.1  | 0.1  | 0.0  | -     | -    | -                                                                                |
| 70  | 미국 측 관세 | 170(137/33)          | 6.4       | -    | 2.6  | 2.3  | 2.0  | 1.7  | 1.3  | 33    | 19.4 | 7011(2개)<br>7013(31개)                                                            |
|     | 한국 측 관세 | 170(170/0)           | 7.6       | 7.6  | 0.5  | 0.3  | 0.1  | 0.1  | 0.0  | -     | -    | -                                                                                |

자료: USITC,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미국의 경우 HS 8단위, 한국의 경우 HS 10단위 / 괄호 안은 2017년 기준 관세 현황

주\*\*: 2017년 기준 미국의 既 체결 협정 중 한국만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

## (1)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기본세율은 3.7%, 2016년 협정세율은 0.5%이며, 제76류 65개 품목 중 46개가 무관세이다. 한국의 기본세율은 7.4% (기준세율 7.6%), 2016년 협정세율은 0%로 미국만 관세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제76류의 경우, FTA 발효 전후 5년간 對미 누적수입이 27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FTA발효 전 대비 5.8% 증가한 반면, 對미 누적수출은 5.7억 달러에서 9.9억 달러로 73.5% 증가하여 여전히 적자 폭은 크지만, 2.6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FTA 협정국 중 제76류에 대해 한국만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은 19개 품목으로서 전체 76류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2.3%의 관세가 남아있다.

[표 4-30] 미국의 제76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허 현황

| HS         | 품명                                                | MFN  | 양허유형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7603.10-00 | 알루미늄의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 5%   | 10년균등 | 4.5  | 4    | 3.5  | 3    | 2.5  |
| 7603.20-00 | 알루미늄의 충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                              | 3.9% |       | 3.5  | 3.1  | 2.7  | 2.3  | 1.9  |
| 7604.10-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프로파일                                 | 5%   |       | 4.5  | 4    | 3.5  | 3    | 2.5  |
| 7604.10-50 | 기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봉                                 | 3%   |       | 2.7  | 2.4  | 2.1  | 1.8  | 1.5  |
| 7604.29-10 | 기타 알루미늄 합금의 프로파일                                  | 5%   |       | 4.5  | 4    | 3.5  | 3    | 2.5  |
| 7605.19-00 | 기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선                                 | 4.2% |       | 3.7  | 3.3  | 2.9  | 2.5  | 2.1  |
| 7605.29-00 | 기타 알루미늄 합금의 선                                     | 4.2% |       | 3.7  | 3.3  | 2.9  | 2.5  | 2.1  |
| 7606.12-60 | 알루미늄 합금의 판·시트(클래드) - 사각형                          | 6.5% |       | 5.8  | 5.2  | 4.5  | 3.9  | 3.2  |
| 7606.92-30 | 기타 알루미늄 합금의 판·시트(클래드 아닌 것) - 사각형 아닌 것             | 3%   |       | 2.7  | 2.4  | 2.1  | 1.8  | 1.5  |
| 7606.92-60 | 기타 알루미늄 합금의 판·시트(클래드) - 사각형 아닌 것                  | 6.5% |       | 5.8  | 5.2  | 4.5  | 3.9  | 3.2  |
| 7607.11-60 | 뒷면을 붙이지 않고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알루미늄 박(두께0.01mm~0.15mm) | 5.3% |       | 4.7  | 4.2  | 3.7  | 3.1  | 2.6  |
| 7607.11-90 | 뒷면을 붙이지 않고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알루미늄 박(0.15mm~0.2mm)    | 3%   |       | 2.7  | 2.4  | 2.1  | 1.8  | 1.5  |
| 7607.19-10 | 뒷면을 붙이지 않고 압연하지 않은 콘덴서용 에칭 알루미늄 박                 | 5.3% |       | 4.7  | 4.2  | 3.7  | 3.1  | 2.6  |
| 7607.19-30 | 뒷면을 붙이지 않고 압연·절단하지 않은 기타 알루미늄 박(0.15mm 이하)        | 5.7% |       | 5.1  | 4.5  | 3.9  | 3.4  | 2.8  |
| 7607.19-60 | 뒷면을 붙이지 않고 압연·절단하지 않은 기타 알루미늄 박(0.15mm~0.2mm)     | 3%   |       | 2.7  | 2.4  | 2.1  | 1.8  | 1.5  |
| 7607.20-10 | 뒷면을 붙이고 가공된 알루미늄 박                                | 3.7% |       | 3.3  | 2.9  | 2.5  | 2.2  | 1.8  |
| 7608.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관                                   | 5.7% |       | 5.1  | 4.5  | 3.9  | 3.4  | 2.8  |
| 76082000   | 알루미늄 합금의 관                                        | 5.7% |       | 5.1  | 4.5  | 3.9  | 3.4  | 2.8  |
| 7609.00-00 |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                                  | 5.7% |       | 5.1  | 4.5  | 3.9  | 3.4  | 2.8  |

자료: 협정문, USIT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76류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제품은 다수 품목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이후 對미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으로서 잔여 관세가 철폐될 경우, 무역수지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미 FTA의 재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 측은 관세 조기 철폐를 요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상무부는 알루미늄 산업을 6대 핵심 산업으로 지목하고, 자국의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무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sup>25)</sup>, 재협상 시 난

25) 이을 기자, 美상무 "한미FTA 개정 검토...반도체·조선도 추가 무역조치", 연합뉴스, 2017.4.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6/0200000000AKR201704260722000009.HTML?input=1195m>)

항이 예상되는 품목 중 하나이다. 특히, 제7606.12호와 제7606.92호는 미국의 양허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남아 있으며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경우로서 한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들이다.

[표 4-31] 미국의 제76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의 수출·입 현황

| 품목 번호   | 2014    |      |        |       | 2015    |       |        |      |
|---------|---------|------|--------|-------|---------|-------|--------|------|
|         | 미국수출    | 증가율  | 미국수입   | 증가율   | 미국수출    | 증가율   | 미국수입   | 증가율  |
| 7603.10 | 46      | -84% | 1,608  | -15%  | 89      | 93%   | 1,678  | 4%   |
| 7603.20 | 44      | -52% | 18     | 144%  | 1,555   | 3397% | 27     | 47%  |
| 7604.10 | 413     | -32% | 2,025  | -36%  | 346     | -16%  | 2,078  | 3%   |
| 7604.29 | 33,557  | -5%  | 3,130  | 83%   | 34,874  | 4%    | 4,897  | 56%  |
| 7605.19 | 1,111   | -9%  | 158    | -50%  | 689     | -38%  | 55     | -65% |
| 7605.29 | 48      | -47% | 50     | -56%  | 569     | 1088% | 84     | 68%  |
| 7606.12 | 164,879 | 29%  | 64,362 | 2790% | 195,190 | 18%   | 53,579 | -17% |
| 7606.92 | 717     | 23%  | 290    | 363%  | 513     | -28%  | 178    | -39% |
| 7607.11 | 566     | -8%  | 5,013  | -18%  | 551     | -3%   | 7,430  | 48%  |
| 7607.19 | 494     | 0%   | 4,292  | 101%  | 483     | -2%   | 5,407  | 26%  |
| 7607.20 | 997     | -18% | 1,224  | -15%  | 1,605   | 61%   | 1,611  | 32%  |
| 7608.10 | 50      | -93% | 1,347  | 28%   | 130     | 162%  | 893    | -34% |
| 7608.20 | 1,511   | 19%  | 3,493  | -6%   | 7,614   | 404%  | 4,174  | 19%  |
| 7609.00 | 4,036   | 48%  | 3,754  | 40%   | 5,062   | 25%   | 5,113  | 36%  |

자료: UN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reporter: USA, 단위: 1,000 달러)

## (2) 제70류(유리·유리제품)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기본세율은 6.4%, 2016년 협정세율은 1.3%이며, 제70류 170개 품목 중 137개가 무관세이다. 한국의 기본세율은 7.6% (기준세율 7.6%), 2016년 협정세율은 0%로 제70류 역시 미국만 관세가 남아있다.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은 FTA 발효 이전 5년간의 누적수출액이 2.2억 달러, 누적수입액이 10.4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7.4억 달러였으나, FTA 발효 이후 5년간의 누적수출액은 87% 증가하여 5.6억 달러, 누적수입액은 13% 증가하여 11.8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6.2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70류 가운데 미국 측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은 33개로 전체 제70류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33개 품목은 모두 미국의 既체결 협정 중 유일하게 한국만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이다. 이들의 2016년 평균 관세는 6.9%로 매우 높은 편이며, 한국만 차별 관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재협상 시 관세 인하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다.

[표 4-32] 미국 측 제70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허 현황

| 분류                                                                        | HS         | 품명                                                              | MFN   | 양허유형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제7011호<br>(밀폐되지 않은<br>유리로 만든<br>외피와<br>부분품)                               | 7011.20-10 | 음극선관용 유리cone                                                    | 5.2%  | 10년균등 | 4.6  | 4.1  | 3.6  | 3.1  | 2.6  |
|                                                                           | 7011.20-85 | 기타 음극선관용 유리외피                                                   | 5.2%  |       | 4.6  | 4.1  | 3.6  | 3.1  | 2.6  |
| 제7013호<br>(유리제품;<br>식탁용·주방용·화장<br>실용·사무용·실내장<br>식용이나 이와<br>유사한<br>용도로 한정) | 7013.10-50 | 기타 유리 도자제의 것                                                    | 26%   |       | 23.4 | 20.8 | 18.2 | 15.6 | 13   |
|                                                                           | 7013.22-10 | 납 크리스탈제의 유리컵류, \$1 이하                                           | 15%   |       | 13.5 | 12   | 10.5 | 9    | 7.5  |
|                                                                           | 7013.22-20 | 납 크리스탈제의 유리컵류, \$1~\$3                                          | 14%   |       | 12.6 | 11.2 | 9.8  | 8.4  | 7    |
|                                                                           | 7013.28-05 | 압축·강화된 유리의 음료용 유리컵류(납 크리스탈제는 제외)                                | 12.5% |       | 11.2 | 10   | 8.7  | 7.5  | 6.2  |
|                                                                           | 7013.28-30 | 기타 자르거나, 도안을 새긴 유리제의 음료용 컵류(납크리스탈제는 제외), \$3~\$5                | 11.3% |       | 10.1 | 9    | 7.9  | 6.7  | 5.6  |
|                                                                           | 7013.28-50 | 기타 자르거나, 도안을 새기지 않은 유리제의 음료용 컵류(납크리스탈제는 제외), \$3~\$5            | 7.5%  |       | 6.7  | 6    | 5.2  | 4.5  | 3.7  |
|                                                                           | 7013.28-60 | 기타 자르거나, 도안을 새기지 않은 유리제의 음료용 컵류(납크리스탈제는 제외), \$5                | 5%    |       | 4.5  | 4    | 3.5  | 3    | 2.5  |
|                                                                           | 7013.33-10 | 기타 납 크리스탈제의 음료용 유리컵류, \$1 이하                                    | 15%   |       | 13.5 | 12   | 10.5 | 9    | 7.5  |
|                                                                           | 7013.33-20 | 기타 납 크리스탈제의 음료용 유리컵류, \$1~\$3                                   | 14%   |       | 12.6 | 11.2 | 9.8  | 8.4  | 7    |
|                                                                           | 7013.37-05 | 기타 압축·강화된 유리제의 음료용 유리컵류(납 크리스탈제는 제외)                            | 12.5% |       | 11.2 | 10   | 8.7  | 7.5  | 6.2  |
|                                                                           | 7013.37-30 | 기타 자르거나, 도안을 새긴 유리제의 음료용 컵류(납크리스탈제 및 압축강화 유리제는 제외), \$3~\$5     | 11.3% |       | 10.1 | 9    | 7.9  | 6.7  | 5.6  |
|                                                                           | 7013.37-50 | 기타 자르거나, 도안을 새기지 않은 유리제의 음료용 컵류(납크리스탈제 및 압축강화 유리제는 제외), \$3~\$5 | 7.5%  |       | 6.7  | 6    | 5.2  | 4.5  | 3.7  |
|                                                                           | 7013.37-60 | 기타 자르거나, 도안을 새기지 않은 유리제의 음료용 컵류(납크리스탈제 및 압축강화 유리제는 제외), \$5초과   | 5%    |       | 4.5  | 4    | 3.5  | 3    | 2.5  |
|                                                                           | 7013.41-10 | 식탁용·주방용(음료용 유리제 제외)으로 사용하는 납 크리스탈의 유리제, \$1이하                   | 15%   |       | 13.5 | 12   | 10.5 | 9    | 7.5  |
|                                                                           | 7013.41-20 | 식탁용·주방용(음료용 유리제 제외)으로 사용하는 납 크리스탈의 유리제, \$1~\$3                 | 14%   |       | 12.6 | 11.2 | 9.8  | 8.4  | 7    |
|                                                                           | 7013.41-30 | 식탁용·주방용(음료용 유리제 제외)으로 사용하는 납 크리스탈의 유리제, \$3~\$5                 | 10.5% |       | 9.4  | 8.4  | 7.3  | 6.3  | 5.2  |
|                                                                           | 7013.42-10 | 식탁용·주방용(음료용 유리제 제외)으로 사용하는 낮은 열팽창 계수로 압축, 강화된 유리제               | 12.5% |       | 11.2 | 10   | 8.7  | 7.5  | 6.2  |
|                                                                           | 7013.42-20 | 식탁용·주방용(음료용 유리제 제외)으로 사용하는 낮은 열팽창 계수의 유리제, \$3 이하               | 22.5% |       | 20.2 | 18   | 15.7 | 13.5 | 11.2 |

|            |                                                                   |       |      |      |      |      |     |
|------------|-------------------------------------------------------------------|-------|------|------|------|------|-----|
| 7013.42-30 | 식탁용·주방용(음료용 유리제 제외)으로 사용하는 낮은 열팽창 계수의 유리제, \$3~\$5                | 11.3% | 10.1 | 9    | 7.9  | 6.7  | 5.6 |
| 7013.49-10 | 기타 식탁용·주방용(음료용 유리제 제외)으로 사용하는 압축, 강화된 유리제                         | 12.5% | 11.2 | 10   | 8.7  | 7.5  | 6.2 |
| 7013.49-30 | 기타 자르거나, 도안을 새긴 식탁용·주방용(음료용 유리제를 제외)유리제, \$3~\$5                  | 11.3% | 10.1 | 9    | 7.9  | 6.7  | 5.6 |
| 7013.49-50 | 기타 자르거나, 도안을 새기지 않은 식탁용·주방용(음료용 유리제를 제외)유리제, \$3~\$5              | 15%   | 13.5 | 12   | 10.5 | 9    | 7.5 |
| 7013.91-10 | 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납 크리스탈의 유리제, \$1 이하             | 20%   | 18   | 16   | 14   | 12   | 10  |
| 7013.91-20 | 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납 크리스탈의 유리제, \$1~\$3            | 14%   | 12.6 | 11.2 | 9.8  | 8.4  | 7   |
| 7013.91-30 | 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납 크리스탈의 유리제, \$3~\$5            | 10.5% | 9.4  | 8.4  | 7.3  | 6.3  | 5.2 |
| 7013.99-10 | 유리공예 유리제품과 기포 등으로 채색된 유리제품                                        | 15%   | 13.5 | 12   | 10.5 | 9    | 7.5 |
| 7013.99-20 | 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압축, 강화된 유리제                     | 12.5% | 11.2 | 10   | 8.7  | 7.5  | 6.2 |
| 7013.99-40 | 기타 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유리제, \$0.30 이하               | 38%   | 34.2 | 30.4 | 26.6 | 22.8 | 19  |
| 7013.99-50 | 기타 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유리제, \$0.30~\$3              | 30%   | 27   | 24   | 21   | 18   | 15  |
| 7013.99-60 | 기타 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르거나 도안을 새긴 유리제, \$3~\$5     | 15%   | 13.5 | 12   | 10.5 | 9    | 7.5 |
| 7013.99-80 | 기타 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르거나 도안을 새기지 않은 유리제, \$3~\$5 | 11.3% | 10.1 | 9    | 7.9  | 6.7  | 5.6 |

자료: 협정문, USIT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70류 품목들은 FTA 발효 전후로 누적 對미 수출액이 급증한 품목으로서 특히 다수 관세가 남아있는 제7013호는 2016년 기준 전체 제70류 가운데 수출 물량의 약10%<sup>26)</sup>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관세 인하가 필요한 품목 중 하나이다.

26) 제7001호 ~ 제7020호 가운데 4번째로 수출량이 많은 품목임(4단위 기준)

[표 4-33] 미국 측 제7013호 對한 잔여관세 품목의 한국의 수출·입 현황

| 품목코드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
|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 수입액    |
| 7013.10 | 1      | 168    | 39    | 159    | 230   | 1,170  | 466   | 339    | 210   | 131    |
| 7013.22 | 95     | 0      | 144   | 64     | 153   | 34     | 80    | 0      | 51    | 0      |
| 7013.28 | 0      | 95     | 6     | 74     | 7     | 141    | 9     | 263    | 7     | 320    |
| 7013.33 | 0      | 1      | 55    | 4      | 0     | 4      | 0     | 0      |       |        |
| 7013.37 | 152    | 661    | 109   | 740    | 201   | 508    | 155   | 511    | 158   | 402    |
| 7013.41 | 0      | 1      | 23    | 0      | 28    | 6      | 0     | 0      | 0     | 0      |
| 7013.49 | 15,332 | 30,967 | 5,483 | 34,827 | 5,385 | 39,168 | 8,897 | 32,420 | 5,535 | 30,864 |
| 7013.91 | 0      | 25     | 0     | 25     | 2     | 32     | 1     | 35     | 5     | 10     |
| 7013.99 | 280    | 882    | 256   | 1,073  | 270   | 1,109  | 168   | 733    | 245   | 1,221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단위: 1,000 달러)

####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한-미 FTA 재협상에서 관세양허 관련하여 논의 될 수 있는 품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한 품목 중 관세가 남아 있는 경우 관세 조기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우선, 한-미 FTA 발효 전후 5년 동안 미국의 누적 무역수지 흑자폭이 가장 크게 증가한 제2류(육과 식용 설육)의 소고기(제0201호, 제0202호)와 돼지고기(제0203.19호)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있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미국산 소고기는 300,0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30%의 관세가 적용되고, 돼지고기는 11,04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15.8%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셰이프가드 발동수준에 못 미치는 물량이 수입되고 있어 각각 24%와 9%의 특혜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관세율은 2017년 5월 기준 다른 주요 수입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소고기 2위 수입국인 미국은 1위 수입국인 호주와 달리 수입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2012년 1위 수입국이었으나 2016년 멕시코(1위), 캐나다(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 한국시장에서의 소고기 수입국 1위를 달성하고 돼지고기 수입국 1위 재탈환을 목표로 관세 조기철폐 및 인하 등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류(어류·갑각류)에 속한 품목 중 미국의 對한 수출이 가장 많은 제0303호(냉동어류)의 경우 35개 품목에 평균 6.2%의 관세가 남아있고 TRQ 적용 물품 모두 제0303호이며,

초과물량에 부과되는 관세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3류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0304호(어류의 필레)에 한국 측 관세가 10개 품목에 평균 6.5%의 관세가 남아있고 세 번째로 수출규모가 큰 제0306호(갑각류)에도 한국 측 관세가 19개 품목에 3.7%의 관세가 남아있어 제3류에 대한 미국의 양허안 수정 요구가 예상된다.

제7류(신선 채소) 중에서 對미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감자(제0701.90호)의 경우, 연도별 총 수입액을 살펴보면 미국은 2015년까지 1위의 수입국으로 한국의 전체 감자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6년 28%까지 감소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이중 칩용 감자에 대해 한-미 FTA와 한-호주 FTA 모두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비성수기에는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한-미 FTA의 경우 성수기에 304%, 한-호주 FTA에는 2017년 기준 22.95%가 적용되고 있다. 호주는 2014년 12월 협정 발효 이후 균등 인하되고 있으나 미국은 8년차인 2019년부터 균등 인하될 예정이며, 미국이 2017년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일부 지역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조치 철회를 위해 계속 협상 중에 있다고 밝힌 바, 미국 측에서 비관세 분야 뿐 아니라 관세 분야에서도 감자의 관세 조기 인하, 계절관세 및 관세율할당에 대한 조건 완화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제22류(음료·주류)에 속한 제2202.90-2000호(과실주스 음료) 및 제2203.00-0000호(맥주)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입이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2017년 기준 각각 3.6%, 4.2%의 관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실주스 음료와 맥주에 대한 관세 철폐 요구가 예상된다. 특히 과일주스의 경우 미국제품이 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비중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既체결한 FTA 중에서 한-칠레, 한-EU, 한-페루, 한-싱가포르, 한-터키 등의 FTA에는 동 제품에 대해 2017년 기준 0%의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미 FTA의 경우 9%의 기본세율이 10단계에 걸쳐 균등 인하되어 2017년에는 3.6%가 적용되고 2021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둘째, 미국은 관세율 할당 및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규정 완화 및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제8류(과실·견과류)에 속한 오렌지이다. 오렌지는 제8류의 과실 중에서 對미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 2017년 2월까지 수입된 물량은 20,388톤으로 TRQ 허용 물량인 2,814톤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미국 측이 계절관세에 대한 조건 완화 및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오렌지는 현재, 비수기인 3월 ~ 8월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30%에서 인하된 관세가 이행 2년차부터 6단계 균등 철폐되어 2016년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7년차인 2018년 0%가 된다. 그러나 9월 ~ 2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로서 현행 50%의 관세를 유지하되, TRQ물량을 제공하여 협정 상 기재된 물량(2,814톤)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 관세가 부여되고, 그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셋째, 한국은 미국이 既체결한 FTA 중 한국 혹은 한국을 포함한 소수의 국가에게만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조기 철폐 및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HS 8 단위 11,081개(HS 98~99류 제외) 중에서 868개 품목으로서 전체 8% 정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FTA 협정국간의 상품 경쟁력을 고려하여 협정별로 차별적인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 품목 중 상당수 품목에 대한 2016년 한국의 수출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차별적 조치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수출금액이 미미하지만 미국이 잠재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FTA 협상당시 미리 이런 차별적 관세를 적용했는지의 여부는 품목별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차별적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잔여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무역수지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품목들이다.

제70류(유리·유리제품) 가운데 미국 측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은 33개로 전체 제70류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33개 품목은 모두 미국의 既체결 협정 중 유일하게 한국만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이다. 이들의 2016년 평균 관세는 6.9%로 매우 높은 편이며, 한국만 차별 관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재협상 시 관세 인하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다. 특히, FTA 발효 전후로 누적 對미 수출액이 급증한 제7013호는 2016년 기준 전체 제70류 가운데 수출 물량의 약10%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관세 인하가 필요한 품목 중 하나이다.

제76류(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제품)의 제7606.12호와 제7606.92호는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미국의 양허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남아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이다. 그러므로 잔여 관세가 철폐될 경우 무역수지가 더욱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상무부는 알루미늄 산업을 6대 핵심 산업으로 지목하고 자국의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무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재협상 시 난항이 예상된다.

## 제2절 FTA 활용률 및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상호협력 방안

### 1. FTA 활용률과 원산지결정기준의 관계

FTA체약당사국은 보호하고자 하는 품목들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서만 FTA 특혜를 적용함으로써, 해당물품의 특혜수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원산지 규정을 활용할 것이다<sup>27)</sup>. 즉, 각 FTA체약국마다 취약산업 보호·국내시장 교란방지·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일정부분 원산지결정기준을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FTA협정상에서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요구할수록 FTA 활용 기업들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이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특혜허용 품목들에 대한 FTA 활용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정도와 FTA활용률간의 관계에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Cadot *et al.*(2006)은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인 부가가치기준 단일적용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부가가치기준 원산지 규정이 10% 완화될수록 FTA 활용률이 2.5~8.2%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김한성 등(2008)은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를 기초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FTA 활용률 간에 특별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고, 한국의 산업 및 교역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FTA활용도 간에는 특정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의 우세한 결론이다.

그러나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요구하는 농산품의 경우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한 국가 안에서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격한 원산지 결정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지 않지만,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Roh and Park(2014)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입투입계수를 활용하여 상품별 역내산의 비율을 계산한 후 이를 반영한 새로운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Bindingness Index)를 고안하였다. 동 지수와 한-미 FTA 활용률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고려하여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제대로 측정했을 경우,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은 FTA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7) Estevadeordal(2000)과 Roh and Park(2014)는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일수록 관세의 완전철폐를 양허해주는 기간을 길게 설정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미국-멕시코, 미국-한국 자료를 이용하여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관세완전철폐기간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미국과 한-미 FTA 재협상을 진행할 때 미국은 한국의 對미 수출액이 많고 FTA활용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 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요구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對한 수출 금액이 많고 FTA활용률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HS 6단위 기준으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과 FTA활용률(utilization rate)을 연계 분석하여 향후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이슈 품목을 선정하는 한편,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개괄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이 4,152개(79.8%)로 가장 많고,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등의 선택기준이 573개(11.0%),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결합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430개(8.3%) 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협정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既체결 FTA 협정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한-미 FTA는 한-EU 및 한-아세안 FTA 등과 같이 기초농수축산물 분야에서 완전 생산기준(WO)를 PSR로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CC를 적용함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또한 한-미 FTA협정에서는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과 달리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육류(소고기, 돼지고기)<sup>29)</sup>에 대해서는 도축기준을 허용하여 생육여부를 불문하고 도축이 일어난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위생검역,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내용은 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담배의 경우 연간 수량 제한 조건으로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담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제2402호 제품의 경우 제2401에 해당하는 원산지 잎담배가 담배 중량의 6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2017년 23억 개피(2018년 이후 25억 개피)에 한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28)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기 발효 FTA 원산지 운영실태 조사, 2012,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참고.

29) 제0105호에 해당하는 닭은 제외.

[표 4-34] 한-미 FTA PSR 구성 현황

| 구 분                         | 완전생산       | 세번변경            | 부가가치        | 선택기준          | 결합기준         | 가공공정        | 소 계              |
|-----------------------------|------------|-----------------|-------------|---------------|--------------|-------------|------------------|
| 기초농수축산품<br>(HS 제1류~제14류)    | 0          | 634             | 0           | 6             | 0            | 0           | 640              |
| 가공농수축산품<br>(HS 제15류~제24류)   | 0          | 245             | 0           | 12            | 2            | 0           | 259              |
| 광물성 생산품<br>(HS 제25류~제27류)   | 0          | 136             | 0           | 12            | 0            | 0           | 148              |
| 화학공업 생산품<br>(HS 제28류~제40류)  | 0          | 922             | 0           | 7             | 69           | 0           | 998              |
| 가죽제품<br>(HS 제41류~제43류)      | 0          | 52              | 0           | 17            | 0            | 0           | 69               |
| 나무제품<br>(HS 제44류~제49류)      | 0          | 235             | 0           | 0             | 0            | 0           | 235              |
| 섬유 및 의류<br>(HS 제50류~제63류)   | 0          | 484             | 0           | 25            | 268          | 19          | 796              |
| 신발류 등<br>(HS 제64류~제67류)     | 0          | 21              | 0           | 1             | 25           | 0           | 47               |
| 석재와 귀금속제품<br>(HS 제68류~제71류) | 0          | 195             | 0           | 0             | 0            | 0           | 195              |
| 비금속제품<br>(HS 제72류~제83류)     | 0          | 463             | 0           | 95            | 5            | 0           | 563              |
| 기계류 등<br>(HS 제84류~제85류)     | 0          | 588             | 3           | 120           | 60           | 0           | 771              |
| 운송기기<br>(HS 제86류~제89류)      | 0          | 41              | 28          | 61            | 0            | 0           | 130              |
| 기타제품<br>(HS 제90류~제97류)      | 0          | 136             | 0           | 217           | 1            | 0           | 354              |
| 소 계                         | 0<br>(0.0) | 4,152<br>(79.8) | 31<br>(0.6) | 573<br>(11.0) | 430<br>(8.3) | 19<br>(0.3) | 5,205<br>(100.0) |

주 : 1. ( )내는 HS 6단위 전체 품목수 5,205개(HS 2012기준)에 대한 비율 (단위 : 개, %)

2.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류·호·소호의 구분이나 제외세번 포함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구분

화학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양국 입장을 반영하여 미국의 주요 공정기준과 우리의 세번변경기준을 모두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제27류의 경우 화학반응<sup>30)</sup>, 상압증류·감압증류 공정을 거치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제6부 및 제7부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부 주의 각 규칙에 규정된 화학반응, 혼합 및 배합, 정제, 입자 크기의 변화, 이성체 분리 등의 특정공정이 수행될 시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섬유·의류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협정문 제4장의 <부속서 4-가>에 별도로 규정하여 제4202호(여행가방), 제50류 내지 제63류(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7019호(유리섬유 로빙 및 사) 및 제9404호 이불류 등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0)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거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 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을 말한다.

양국의 수출입 주력품목으로 산업내 무역지수가 높은 기계, 전기·전자, 철강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한 교역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되, 민감한 산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sup>31)</sup>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공제법·집적법 외에도 순원가법을 채택하여 수출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원가는 총비용에서 관측, 마케팅, 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비허용이자 비용 등을 차감한 가격이다.<sup>32)</sup>

추가적으로 한-미 FTA협정문 제2.10조에는 행정 수수료 및 형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물품취급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유지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원산지결정기준 등 FTA특혜요건을 충족하는 한-미 FTA적용 수출제품에 대하여는 FTA관세 철폐 외에도 행정 수수료인 물품취급수수료도 동시에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의 0.3464%에 해당하는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sup>33)</sup>를 수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자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미국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미국 수입자는 FTA 협정세율 적용을 통한 관세인하 특혜이외에 물품 취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3. 한-미 FTA활용 주요 특혜수출 품목현황

미국과의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될 때, 對미 수출액이 많은 품목으로서 FTA수출활용률이 높으나 미국의 對한 수출액이 적은 품목이 논의 대상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16년 현재 對미 수출금액 1억 달러 이상, FTA 수출활용률이 80%이상인 HS 6단위 기준으로 대표적인 한-미 FTA 수출활용 품목 총 21개를 추출하였다. 이 중 對미

31) 제8407.31호 내지 제8407.34호(엔진), 제8408.20호(자동차를 위한 디젤엔진), 제8409호(엔진 부품), 제8701호 내지 8705호(자동차), 제8706호(샤시), 제8707호(차체) 및 제8708호(자동차 부품)등의 호와 소호로 분류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32)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와의 FTA에서 자동차류(자동차 및 그 부분품)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캐나다 콜롬비아와의 FTA보다 더 포괄적인 품목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33)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란,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명목으로 통합예산총괄조정법에 근거하여 수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비관세 행정수수료이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상 및 항공화물 모두에 대하여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 신고건별 화물금액(FOB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 또는 최대/최저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500달러가 넘는 일반수입신고건(Formal Entry)의 경우 화물금액이 7,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MPF 수수료의 최저금액이 적용되어 25달러가 부과되고, 화물금액이 7,200 ~ 14만 달러인 경우에는 해당 화물금액기준 0.3464%의 MPF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MPF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최대금액기준(수입화물금액 14만 달러 초과 대상)을 적용하여 수입화물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수입자는 최대 485달러의 MPF 수수료를 부과 받게 된다.

수입액이 적은 각 산업별 대표품목 1개를 선정하여 수출입동향과 FTA활용률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연계분석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 개정 논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 4-35] 한-미 FTA 주요 특혜수출 품목현황

| 연번  | 산업분야       | 품목번호    | 총 수출금액         | 특혜수출금액        | FTA활용률 |
|-----|------------|---------|----------------|---------------|--------|
| 1   | 플라스틱       | 3903.30 | 113,522,200    | 112,858,833   | 99.4   |
| 2   |            | 3918.10 | 208,864,609    | 183,286,699   | 87.8   |
| 3   | 합성고무       | 4011.10 | 1,078,354,106  | 1,046,215,825 | 97.0   |
| 4   |            | 4011.20 | 334,759,862    | 334,676,213   | 100.0  |
| 5   | 섬유·의류      | 5503.20 | 142,871,396    | 132,319,828   | 92.6   |
| 6   | 비금속제품      | 7801.10 | 220,543,445    | 220,503,061   | 100.0  |
| 7   |            | 8302.30 | 151,746,664    | 126,349,197   | 83.3   |
| 8   | 기계·전자·전기기기 | 8407.34 | 234,582,304    | 234,299,134   | 99.9   |
| 9   |            | 8409.91 | 384,014,498    | 336,528,155   | 87.6   |
| 10  |            | 8413.30 | 178,396,696    | 172,600,894   | 96.8   |
| 11  |            | 8504.23 | 248,833,136    | 221,426,240   | 89.0   |
| 12  |            | 8507.10 | 181,222,423    | 171,692,076   | 94.7   |
| 13  |            | 8507.90 | 122,517,246    | 121,719,206   | 99.3   |
| 14  |            | 8512.90 | 147,809,037    | 134,255,896   | 90.8   |
| 15  |            | 8537.10 | 229,728,185    | 184,459,238   | 80.3   |
| 16  | 자동차류       | 8703.22 | 2,275,677,175  | 2,259,571,247 | 99.3   |
| 17  |            | 8708.29 | 833,606,140    | 758,629,133   | 91.0   |
| 18  |            | 8708.30 | 282,755,931    | 258,959,293   | 91.6   |
| 19  |            | 8708.70 | 173,573,310    | 167,531,675   | 96.5   |
| 20  |            | 8708.94 | 337,398,582    | 292,626,939   | 86.7   |
| 21  |            | 8708.99 | 2,939,024,517  | 2,395,468,143 | 81.5   |
| 총 계 |            |         | 10,819,801,462 | 9,865,976,925 | 91.2   |

주 : 1. FTA활용률 항목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 각 산업별 대표 선정품목은 음영처리하여 표시.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단위 : 달러, %)

#### 4. 한-미 FTA 활용 주요 이슈 품목 분석(수출)

##### (1) 플라스틱제 바닥 깔개와 벽·천장 피복재(제3918.10호)

###### ① 제3918.10호의 對미 수출입동향

제3918.10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큰 폭의 무역무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최근 5년간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양(+)의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6년의 수출증가율이 각각 44.3%, 57.1%, 31.9%로 확인되어 흑자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출증가세를 바탕으로 한국의 對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2억 달러까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6] 제3918.10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 구 분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수입금액  | 수입증감률 |         |
| 2012 | 96,602  | 44.3  | 1,985 | 2.3   | 94,617  |
| 2013 | 151,788 | 57.1  | 2,264 | 14.1  | 149,524 |
| 2014 | 150,183 | -1.1  | 1,936 | -14.5 | 148,247 |
| 2015 | 158,433 | 5.5   | 2,888 | 49.2  | 155,545 |
| 2016 | 208,911 | 31.9  | 2,147 | -25.7 | 206,764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천 달러, %)

## ② 제3918.10호의 FTA 수출활용률과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3918.10호에 대한 對미 수출금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2억 달러, FTA특혜수출금액은 약 1억 8천만 달러로 87.8%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FTA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주요 협정별 총 수출금액과 FTA특혜수출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수출비중과 FTA특혜수출규모 모두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FTA 수출활용률의 경우 한-EU FTA가 98.85%로 나타나 한-미 FTA 수출활용률보다도 약 10%를 상회하는 매우 우수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7] 제3918.1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HS.No | 3918.10 | 품 명         | 3918 |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                 |             |
|-------|---------|-------------|------|----------------------------------------------------------------------------------------|-----------------|-------------|
|       |         |             |      | 1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             |
| 협 정   |         | 총 수출금액      |      | FTA특혜수출금액                                                                              | FTA활용률          | 세율(MFN/FTA) |
| 한-미   |         | 208,864,609 |      | 183,286,699                                                                            | 87.8            | 5.1 / 2     |
| 한-EU  |         | 76,981,225  |      | 76,093,950                                                                             | 98.9            | 7 / 0       |
| 한-중   |         | 205,762     |      | 9,431                                                                                  | 4.6             | 10 / 8      |
| 한-아세안 |         | 20,664,252  |      | 10,832,890                                                                             | 52.4            | -           |

주 : 1. 해당 항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생략함.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단위: 달러, %)

제3918.10호에 대한 주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주요 협정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EU나 아세안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CTH 단일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38] 제3918.1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
| 한-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sup>34)</sup>                                                                                                      |
| 한-EU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br>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한-중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한-아세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자료: 각 협정문.

### ③ 제3918.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여부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918.10호에 대한 對미 무역흑자 규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으로 약 2억 달러까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로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용이한 규정으로 FTA활용률은 87.8%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가 현재 완전 철폐되지 않았으므로 양허스케줄을 재조정하거나 보다 강화된 형태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FTA 재협상을 통한 간접적 무역수지 개선노력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중 원산지결정기준 조정과 관련하여 해당물품인 제3918.10호가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바닥갈래나 벽·천장의 피복재인 바, 원재료인 염화비닐 중합체(제3904호)에 대하여 반드시 원산지상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부 세번변경기준으로의 변경이 검토될 수 있다. 또는 현재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추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결합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4) 추가적으로 한-미 FTA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는 제7부 주의 각 규칙에 규정된 화학반응, 혼합 및 배합 원산지, 정제, 입자 크기의 변화, 이성체 분리 등의 특정공정이 수행될 시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 협정에 비해 보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하다.

[표 4-39] 제3918.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PSR 약어표시      |
|-----|------------------------------------------------------------------|---------------|
| 예시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3904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CTH(ex.3904)  |
| 예시②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CTH+RVC(BD60) |

## (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제4011.10호)

### ① 제4011.10호의 對미 수출입동향

제4011.10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금액의 증가율은 등락을 거듭하며 다소 정체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약 10억 달러 내외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물품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입규모는 2012년 약 2천만 달러에서 2016년 현재 약 4천 9백만 달러로 확인되어 수입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나, 수출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표 4-40] 제4011.10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 구 분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수입금액   | 수입증감률 |           |
| 2012 | 1,253,267 | 9.3   | 22,111 | 27.5  | 1,231,156 |
| 2013 | 999,406   | -20.3 | 20,651 | -6.6  | 978,755   |
| 2014 | 964,706   | -3.5  | 20,339 | -1.5  | 944,367   |
| 2015 | 1,089,921 | 13    | 41,183 | 102.5 | 1,048,737 |
| 2016 | 1,078,354 | -1.1  | 49,459 | 20.1  | 1,028,895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천 달러, %)

### ② 제4011.10호의 FTA 수출활용률과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4011.10호에 대한 對미 수출금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10억 8천만 달러, FTA특혜 수출금액은 약 10억 5천만 달러로 97.0%의 매우 높은 FTA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주요 협정별 총 수출금액과 FTA특혜수출금액을 비교해본 결과, 수출비중과 FTA특혜수출규모 모두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 활용률 또한 미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1] 제4011.1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HS.No | 4011.10 | 품 명           | 4011 |               |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             |  |
|-------|---------|---------------|------|---------------|----------------------------------------------|-------------|--|
|       |         |               |      | 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             |  |
| 협 정   |         | 총 수출금액        |      | FTA특혜수출금액     | FTA활용률                                       | 세율(MFN/FTA) |  |
| 한-미   |         | 1,078,354,106 |      | 1,046,215,825 | 97.0                                         | 3.7 / 0     |  |
| 한-EU  |         | 411,031,954   |      | 395,446,002   | 96.2                                         | 4.5 / 0     |  |
| 한-중   |         | 3,030,336     |      | 2,063,747     | 68.1                                         | 10 / 8.6    |  |
| 한-아세안 |         | 19,197,399    |      | 9,228,513     | 48.1                                         | -           |  |

주 : 1. 해당 항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생략함.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단위: 달러, %)

제4011.10호에 대한 주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의 주요 협정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한-아세안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CTH 단일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42] 제4011.1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
| 한-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sup>35)</sup>                     |
| 한-EU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중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한-아세안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자료: 각 협정문.

### ③ 제4011.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여부 검토

제4011.10호에 대한 對미 무역흑자 규모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약 10억 달러 내외의 흑자폭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로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용이한 규정이며 FTA활용률은 97%로 아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은 이미 0%로 수렴하여 완전 철폐되었으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형태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역수지 개선노력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35) 동 물품 또한 제3918.10호와 같이 제7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한-미 FTA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7부 주의 각 규칙에 따른 화학반응, 혼합 및 배합 원산지, 정제, 입자 크기의 변화, 이성체 분리 등의 특정 공정이 수행될 시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원산지결정기준 조정 관련, 해당물품인 제4011.10호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은 주요 원재료로 구성되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3] 공기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품목분류

| 구 분           |                  | HS No.       |
|---------------|------------------|--------------|
| 고무            | 천연고무             | 4001.10-0000 |
|               | 합성고무(SBR)        | 4002.11-0000 |
|               |                  | 4002.19-0000 |
| 고무배합 약품       | 카본블랙(착색 등)       | 2803.00-9010 |
|               | 프로세스 오일          | 2710.19-7510 |
|               | 고무 노화방지제         | 3812.30-1000 |
|               | 유황(가루제)          | 2503.00-0000 |
| 강력사 타이어 코드 직물 | 나일론 또는 폴리아미드제의 것 | 5902.10-0000 |
|               | 폴리에스테르제의 것       | 5902.20-0000 |
|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 5902.90-0000 |
| 스틸 코드         | 스테인리스강의 선(황동 도금) | 7223.00-0000 |
|               | 철강제 코드           | 7312.10-2092 |

자료: FTA 불법특혜 고위험물품 원산지검증을 위한 위험동향 분석, 2014.7, 국제원산지정보원.

특히, 한-미 FTA 및 한-EU의 FTA활용률이 각각 97.0%, 96.2%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아세안 FTA의 경우 FTA활용률이 48.1%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FTA 활용환경·산업특성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일정부분 한-아세안 FTA에서 주요협정과 달리 CTH+RVC55의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sup>36)</sup>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인 CTH보다 엄격한 형태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입원재료의 수가 많은 해당물품의 특성상 특정원재료의 원산지재료 사용의무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보다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와 같이 현재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추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결합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6) 더불어 한-중 FTA의 경우 발효 경과기간이 여타 FTA에 상대적으로 짧고 현재 MFN세율과 FTA협정세율의 세율차가 1.4%임에도 불구하고 약 68.1%의 FTA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대조된다.

[표 4-44] 제4011.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PSR 약어표시      |
|-----|------------------------------------------------------------------|---------------|
| 예시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 CTH+RVC(BD55) |

### (3) 폴리에스테르제의 합성스테이플섬유(제5503.20호)

#### ① 제5503.20호의 對미 수출입동향

제5503.20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1억 5천만 달러 내외의 무역무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2년 한-미 FTA 발효년도와 2014년을 제외하고는 약 5~10%의 수출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미 FTA체결로 인한 수출증가 혜택은 다소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일품목에 대한 對미 수입 변화율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4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표 4-45] 제5503.20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 구 분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수입금액  | 수입증감률    |         |
| 2012 | 172,076 | 26.7  | 5     | -89.2    | 172,071 |
| 2013 | 161,943 | -5.9  | 2,649 | 56,615.7 | 159,294 |
| 2014 | 168,801 | 4.2   | 2,178 | -17.8    | 166,623 |
| 2015 | 153,283 | -9.2  | 1,837 | -15.7    | 151,446 |
| 2016 | 143,008 | -6.7  | 729   | -60.3    | 142,279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천 달러, %)

#### ② 제5503.20호의 FTA 수출활용률과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5503.20호에 대한 對미 수출금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 달러, FTA특혜 수출금액은 약 1억 3천만 달러로 92.6%의 높은 FTA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주요 협정별 총 수출금액과 FTA특혜수출금액을 비교해본 결과, 수출비중과 FTA특혜수출규모 모두 EU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활용률 또한 EU가 9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6] 제5503.2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HS.No | 5503.20 | 품 명         | 5503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             |      | 20                                                    | 폴리에스테르의 것 |             |
| 협 정   |         | 총 수출금액      |      | FTA특혜수출금액                                             | FTA활용률    | 세율(MFN/FTA) |
| 한-미   |         | 142,871,396 |      | 132,319,828                                           | 92.6      | 4.3 / 0     |
| 한-EU  |         | 261,641,510 |      | 250,449,903                                           | 95.7      | 4.0 / 0     |
| 한-중   |         | 73,048,791  |      | 60,930,227                                            | 83.4      | 5 / 4.3     |
| 한-아세안 |         | 18,699,881  |      | 14,204,846                                            | 76.0      | -           |

주 : 1. 해당 항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생략함.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단위: 달러, %)

제5503.20호에 대한 주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의 주요 협정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한-미 FTA 및 한-중 FTA에서는 제5401호 등의 특정 제외세번을 명시하여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제외 세번을 명시하지 않고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완화된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7)</sup> 한편, 한-EU FTA에서는 섬유 원재료인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가공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표 4-47] 제5503.2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
| 한-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 및 제5403.42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EU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로부터 생산된 것                                                                                             |
| 한-중   |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401호 내지 제54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한-아세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자료: 각 협정문.

37) 다만, 해당물품의 주요 원재료인 폴리에스테르는 제39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주로 제54류 물품을 제외 세번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 원산지결정기준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 ③ 제5503.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여부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5503.20호에 대한 對미 무역흑자 규모는 약 1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수출증가율은 다소 감소추세로 나타났으나 최근 5년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재협상 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해당 품목은 한-미 FTA상 제4장의 섬유 및 의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 품목으로 한-미 FTA 제4.1조에 따라 양자 긴급조치<sup>38)</sup>를 통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 실행관세율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

둘째, 한-미 FTA 제4.2조에 따른 원산지 규정 협의를 통해 보다 강화된 형태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안을 요구할 수 있다.

#### [표 4-48] 한-미 FTA 제4.2조 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 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 제6장의 적용

1. 부속서 4-가 및 4-나를 포함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규정은 비특혜 목적으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협의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공급 가능성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특정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4. 제3항에 언급된 협의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한 특정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자국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생산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다.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생산자가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상업적인 물량을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공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실질적인 생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양 당사국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전달 후 60일 이내에 협의를 종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그 협의에서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개정사항은 양 당사국이 제24.2조(개정)에 따라 승인한 때에 그러한 상품의 종전 원산지 규정을 대체한다.**

자료: 한-미 FTA 협정문 제4.2조.

이 중 원산지결정기준 조정과 관련하여 해당물품인 제5503.20호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합성스테이플섬유이므로, 기존의 원산지결정기준 틀은 유지하되 주요 원재료인 플라스틱(제39류) 또는 폴리에스테르(제3907호)에 대하여 반드시 원산지상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38) 이 경우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미국 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실제적 우려를 야기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그 상품의 국내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조사와 입증 필요할 것이다.

조건부 세번변경기준으로의 변경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제55류에 대한 한-미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의 통일성<sup>39)</sup>을 고려해볼 때 특정품목에만 제39류에 해당하는 제외세번을 추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

[표 4-49] 제5503.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PSR 약어표시                                                         |
|-----|-----------------------------------------------------------------------------------------------------------------------------|------------------------------------------------------------------|
| 예시④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3907호, 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 및 제5403.42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CC(ex.3907, 5201-5203, 5401-5402, 5403.33-5403.39, 5403.42-5405) |

#### (4) 유입식 변압기(제8504.23호)

##### ① 제8504.23호의 對미 수출입동향

제8504.23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해마다 상대적으로 큰 폭의 수출증감률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약 2억 달러 내외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2014년까지 지속적인 수출감소세를 보였고 2015년 이후 비로소 수출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한-미 FTA체결로 인한 수출증가 혜택은 다소 제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일품목에 대한 對미 수입 변화율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2.5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표 4-50] 제8504.23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 구 분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수입금액 | 수입증감률   |         |
| 2012 | 277,894 | -12.1 | 31   | 256.2   | 277,863 |
| 2013 | 196,434 | -29.3 | 34   | 8       | 196,400 |
| 2014 | 174,812 | -11   | 17   | -49.3   | 174,795 |
| 2015 | 239,621 | 37.1  | 942  | 5,441.2 | 238,679 |
| 2016 | 249,225 | 4     | 13   | -98.6   | 249,212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천 달러, %)

39) 한-미 FTA에서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는 제외세번이 추가된 조건부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류변경(CC), 호변경(CTH), 소호변경(CTSH)을 기본으로 특정원재료(제외세번)의 경우 반드시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제외세번에 해당되는 특정원재료들은 제5201호, 제5401호 등 섬유 및 사가 분류되는 호들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한-미 FTA 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Yarn-forward로 귀결되게 된다.

## ② 제8504.23호의 FTA 수출활용률과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8504.23호에 대한 對미 수출금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2억 5천만 달러, FTA특혜 수출금액은 약 2억 2천만 달러로 89.0%의 높은 FTA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주요 협정별 총 수출금액과 FTA특혜수출금액을 비교해본 결과, 수출비중과 FTA특혜수출규모 모두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활용률의 경우 EU가 100.0%, 중국이 99.9%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아세안의 경우 12.8%의 매우 저조한 FTA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FTA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51] 제8504.23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HS.No | 8504.23 | 품 명         | 8504 |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             |
|-------|---------|-------------|------|-------------|------------------------------------|-------------|
|       |         |             |      | 23          | 유입식 변압기(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
| 협 정   |         | 총 수출금액      |      | FTA특혜수출금액   | FTA활용률                             | 세율(MFN/FTA) |
| 한-미   |         | 248,833,136 |      | 221,426,240 | 89.0                               | 1.6 / 0     |
| 한-EU  |         | 27,704,008  |      | 27,704,008  | 100.0                              | 3.7 / 0     |
| 한-중   |         | 872,325     |      | 872,066     | 99.9                               | 8.4 / 6.3   |
| 한-아세안 |         | 22,090,604  |      | 2,824,900   | 12.8                               | -           |

주 : 1. 해당 항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생략함.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단위: 달러, %)

한편, 제8504.23호에 대한 주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의 경우 CTSH를 기본으로 하는 조건부 세번변경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부분품이 제8504.90호에 해당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매우 용이한 편에 속한다. 반면,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MC45, 한-중 FTA 및 한-아세안 FTA에서는 CTH와 RVC40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역외산 부분품(비원산지재료)을 일정수준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4-52] 제8504.23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
| 한-미   | 제8504.10호부터 제8504.5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EU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한-중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 한-아세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자료: 각 협정문.

### ③ 제8504.23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여부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제8504.23호에 대한 對미 무역흑자 규모는 약 2억 달러 정도로 발효 초기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수출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억 5천만 달러정도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로 여타 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족이 쉽고 FTA활용률은 89%를 기록함에 따라 현재보다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의 변경 요구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표 4-53] 제8504.23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PSR 약어표시                                |
|-----|-----------------------------------------------------------------------------------------------------------------------------------------------------------------------------------------------|-----------------------------------------|
| 예시①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4.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04.90호에서 제8504.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br><br>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br>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 CTH or [CTSH from 8504.90 + RVC(35/45)] |

따라서 해당물품인 제8504.23호의 부분품인 제8504.90호로부터의 변경에 대하여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되 부가가치기준을 결합하여 CTSH 단일기준보다 강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참고로 동 기준은 현재 한-미 FTA상 제8504.31호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동 물품에 대한 FTA활용률은 30.3%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승용자동차(제8703.22호)

### ① 제8703.22호의 對미 수출입동향

제8703.22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큰 폭의 무역무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한-미 FTA 발효 직후인 2013년 전년 대비 323%, 2015년에는 전년대비 44.7%의 기록적인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2016년 현재에도 양(+)의 수출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2년 3억 2천만 달러에서 2016년 현재 22억 7천만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반면, 해당물품에 대한 對미 수입규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그다지 큰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4] 제8703.22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 구 분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수입금액  | 수입증감률 |           |
| 2012 | 320,920   | 42,313.4 | 652   | -66.8 | 320,268   |
| 2013 | 1,357,613 | 323      | 987   | 51.4  | 1,356,625 |
| 2014 | 1,475,353 | 8.7      | 500   | -49.4 | 1,474,853 |
| 2015 | 2,135,236 | 44.7     | 605   | 21    | 2,134,631 |
| 2016 | 2,275,704 | 6.6      | 2,671 | 341.6 | 2,273,033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천 달러, %)

### ② 제8703.22호의 FTA 수출활용률과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8703.22호에 대한 對미 수출금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22억 7천만 달러, FTA특혜 수출금액은 약 22억 6천만 달러로 99.3%의 매우 우수한 FTA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주요 협정별 총 수출금액과 FTA특혜수출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수출비중과 FTA특혜수출규모 모두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활용률의 경우 EU가 99.9%, 아세안이 85.3%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55] 제8703.22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HS.No              | 8703.22 | 품 명           |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
|                    |         |               |      | 22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실린더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             |
| 협 정                |         | 총 수출금액        |      | FTA특혜수출금액                                                                                  | FTA활용률                                                              | 세율(MFN/FTA) |
| 한-미                |         | 2,275,677,175 |      | 2,259,571,247                                                                              | 99.3                                                                | 2.5 / 0     |
| 한-EU               |         | 1,076,346,008 |      | 1,075,650,159                                                                              | 99.9                                                                | 10 / 0      |
| 한-중 <sup>40)</sup> |         | -             |      | -                                                                                          | -                                                                   | 25 / 24     |
| 한-아세안              |         | 116,359,078   |      | 99,224,781                                                                                 | 85.3                                                                | -           |

주 : 1. 해당 항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아세안 세율의 경우 각 체약상대국별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생략함.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단위: 달러, %)

제8703.22호에 대한 주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모든 주요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며 한-중 FTA의 경우는 부가가치기준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추가한 결합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표 4-56] 제8703.22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
| 한-미   |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br>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br>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br>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
| 한-EU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한-중   |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
| 한-아세안 |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자료: 각 협정문.

40) 중국의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규모가 매우 미미하여 제외.

구체적으로는 한-미 FTA가 집적법과 공제법에 더불어 순원가법<sup>41)</sup>까지 총 3개의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는 RVC45, 한-EU FTA에서는 MC45를 채택하여 역외산 부분품(비원산지재료)을 일정수준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RVC60로 부가가치기준비율이 상당히 높아 주요 협정 중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 ③ 제8703.22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여부 검토

제8703.22호에 대한 對미 무역흑자 규모는 약 22억 7천만 달러 정도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FTA활용률이 99.3%를 기록함에 따라 현재보다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의 변경 요구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한-미 FTA상 자동차류에 대한 전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은 BU35, BD55, NC35의 부가가치 선택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물품인 제8703.22호의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해당 부가가치 선택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부가가치비율의 상향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강화하는 안이 제시될 수 있다.

**[표 4-57] 제8703.22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PSR 약어표시             |
|------------|----------------------------------------------------------------------------------------------------------|----------------------|
| <b>예시①</b> |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br>가. 집적법 45퍼센트 이상, 또는<br>나. 공제법 60퍼센트 이상, 또는<br>다. 순원가법 45퍼센트 이상 | BU45 or BD60 or NC45 |
| <b>예시②</b> |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br>가.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br>나. 순원가법 45퍼센트 이상                        | BD55 or NC45         |

참고로 미국이 최근 탈퇴선언을 하기는 했으나 그 동안 추진했던 TPP상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공제법 55%, 순원가법 45%로 현행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보다는 다소 강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중 FTA에서는 BD60을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수준 정도까지 부가가치비율을 조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1) 한-미 FTA, 한-캐나다 FTA 및 한-콜롬비아 FTA에서 자동차류에 대한 순원가법 적용가능

## 5. 한-미 FTA활용 주요 특혜수입 품목현황

지금까지 살펴본 수출과 달리 對미 수입(미국 입장에서는 對한 수출)의 경우, 수입금액이 많고 FTA활용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對미 수입액이 많은 품목으로서 FTA수입활용률이 저조하고 한국의 對미 수출액이 적은 품목이다.

이에 따라 2016년 현재 對미 수입금액 1억 달러 이상, FTA 수입활용률이 50%미만인 HS 6단위 기준으로 대표적인 수입품목 총 12개를 추출하였다. 이 중 한국의 對미 수출액이 적은 각 산업별 대표품목 1개를 선정하여 수출입동향과 FTA활용률 및 원산지결정기준 연계분석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 개정 논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참고적으로 품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산업군은 농산물·의약품·정밀기기 등 일반적으로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우선 선별하였고, 비금속과 기계·전자·전기기기 산업분야 품목은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이고 해당 품목에 대한 對미 수출금액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동 보고서상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토록 하였다.

[표 4-58] 한-미 FTA 주요 특혜수입 품목 현황

| 연번  | 산업분야       | 품목번호   | 총 수입금액        | 특혜수입금액      | FTA활용률 |
|-----|------------|--------|---------------|-------------|--------|
| 1   | 농산물        | 120190 | 109,546,092   | 17,865,395  | 16.3   |
| 2   | 석유화학       | 271012 | 136,196,366   | 18,734,839  | 13.8   |
| 3   |            | 271112 | 911,651,639   | 217,656,999 | 23.9   |
| 4   | 기초화학       | 280461 | 117,651,744   | 37,620,672  | 32.0   |
| 5   | 의약품        | 300490 | 481,052,299   | 173,563,608 | 36.1   |
| 6   | 비(卑)금속     | 732690 | 196,142,189   | 22,197,590  | 11.3   |
| 7   |            | 760612 | 157,744,535   | 53,042,026  | 33.6   |
| 8   | 기계·전자·전기기기 | 847989 | 243,694,760   | 54,455,949  | 22.3   |
| 9   |            | 848180 | 145,933,242   | 66,057,845  | 45.3   |
| 10  |            | 853710 | 177,005,904   | 71,406,598  | 40.3   |
| 11  | 정밀기기       | 901890 | 238,577,626   | 96,627,144  | 40.5   |
| 12  |            | 903289 | 117,260,298   | 33,872,523  | 28.9   |
| 총 계 |            |        | 3,032,456,694 | 863,101,188 | 28.5   |

주 : 1. FTA활용률 항목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 각 산업별 대표 선정품목은 음영처리하여 표시.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단위 : 달러, %)

## 6. 한-미 FTA 활용 주요 이슈 품목 분석(수입)

### (1) 대두(제1201.90호)

#### ① 제1201.90호의 對미 수출입동향

제1201.90호 물품의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對미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對미 수입의 경우 매년 약 3억 달러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이 바로 무역수지 적자로 반영되고 있으며 적자규모 또한 수입금액과 유사한 매년 약 3억 달러 규모로 확인되었다. 특히, 해당 품목은 한-미 FTA 발효 후 수입금액의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최근 감소추세로 나타나 한-미 FTA를 통한 미국 측 對한 수출증대효과는 다소 제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4-59] 제1201.90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 구 분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수입금액    | 수입증감률 |          |
| 2012 | 14   | 0     | 306,687 | 0     | -306,673 |
| 2013 | 75   | 435.8 | 370,374 | 20.8  | -370,300 |
| 2014 | 393  | 425.4 | 377,342 | 1.9   | -376,949 |
| 2015 | 42   | -89.4 | 285,417 | -24.4 | -285,376 |
| 2016 | 11   | -73.5 | 288,529 | 1.1   | -288,518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 천 달러, %)

#### ② 제1201.90호의 FTA 수입활용률과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1201.90호에 대한 對미 수입금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1억 달러<sup>42)</sup>, FTA특혜수입금액은 약 1,800만 달러로 16.3%의 상당히 저조한 FTA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의 경우 주요 협정에서 모두 TRQ 또는 초민감 품목 등으로 지정하여 FTA활용을 통한 관세혜택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어 FTA활용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42) 해당 품목에 대한 對미 수입금액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는 288,529천 달러로, 관세청 제공자료에서는 109,546천 달러로 나타나 관세청 제공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동 보고서상 인용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관세청 자료를 사용.

[표 4-60] 제1201.9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HS.No | 1201.90 | 품 명         | 1201 |            |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             |      | 90         | 기타              |                                     |  |
| 협 정   |         | 총 수입금액      |      | FTA특혜수입금액  | FTA활용률          | 세율(MFN/FTA)                         |  |
| 한-미   |         | 109,546,092 |      | 17,865,395 | 16.3            | 487% 또는 956원/kg / 0                 |  |
| 한-EU  |         | 415         |      | -          | -               | 487% 또는 956원/kg / 487% 또는 956원/kg   |  |
| 한-중   |         | 34,472,850  |      | 10,344,010 | 30.0            | 487% 또는 956원/kg / 0                 |  |
| 한-아세안 |         | -           |      | -          | -               | 487% 또는 956원/kg / 389.6% 또는 765원/kg |  |

주 : 1. 해당 항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의 경우 한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2. 해당 품목에 대한 MFN세율은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FTA협정세율은 TRQ 쿼터 내 물량에 대한 세율(미국, 중국), 기준세율 유지(EU), 초민감품목 B그룹 세율(아세안) 기준.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단위 : 달러, %)

제1201.90호에 대한 주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주요 협정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WO)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비록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해당 물품의 생산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동 물품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완전생산기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4-61] 제1201.9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
| 한-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EU  |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
| 한-중   | 완전생산기준                              |
| 한-아세안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

자료: 각 협정문.

### ③ 제1201.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여부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201.90호 물품은 미국의 주요 수출품으로서 한국의 對미 무역수지는 매년 약 3억 달러 내외의 지속적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의 對미 수입금액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 내지 정체를 보이고 있었으며 FTA활용률 또한 16.3%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의 수출증대 노력이 수반될 개연성이 높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의 경우 농산물이라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미 FTA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여 실질적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1차 농산물에 대한 일반적 원산지결정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완화시키는 등의 조정방안보다는 해당품목의 TRQ 물량을 증대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對한 수출 증대방안을 모색할 확률이 높다.

구체적으로 해당 물품(제1201.90호)의 TRQ 쿼터 물량은 [표 4-62]와 같으며 이행 6년차인 2017년부터는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하게 되어 현재는 27,319미터톤의 TRQ물량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쿼터 내 물량의 증가폭을 현재 매년 3% 복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TRQ 물량을 확대하는 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62] 제1201.90호의 한-미 FTA상 현재 TRQ 물량**

| 연도       | 물량(미터톤) | 비고                                 |
|----------|---------|------------------------------------|
| 1(2012년) | 10,000  | 5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한다. |
| 2(2013년) | 20,000  |                                    |
| 3(2014년) | 25,000  |                                    |
| 4(2015년) | 25,750  |                                    |
| 5(2016년) | 26,523  |                                    |

자료: 한-미 FTA 협정 부록 2-나-1.

## **(2) 액화 프로판(제2711.12호)**

### **① 제2711.12호의 對미 수출입동향**

제2711.12호 물품의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對미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對미 수입의 경우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693.3%, 2015년 147.2%, 2016년 80.9%라는 기록적인 수입증가율을 보이며 2016년 현재 수입규모가 약 9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동 금액이 바로 무역수지 적자로 반영되고 있다.

[표 4-63] 제2711.12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입동향

| 구 분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수입금액    | 수입증감률  |          |
| 2012 | 4,002 | -48.2 | 56,687  | 16,787 | -52,685  |
| 2013 | 0     | -100  | 25,714  | -54.6  | -25,715  |
| 2014 | 0     | 0     | 203,995 | 693.3  | -203,995 |
| 2015 | 0     | 0     | 504,288 | 147.2  | -504,288 |
| 2016 | 0     | 0     | 912,007 | 80.9   | -912,007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 천 달러, %)

## ② 제2711.12호의 FTA 수입활용률과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2711.12호에 대한 對美 수입금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9억 달러, FTA특혜수입금액은 약 2억 달러로 23.9%의 저조한 FTA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품목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FTA활용률은 이에 상응하는 높은 활용률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FTA 이외의 다른 수입증가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표 4-64] 제2711.12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HS.No | 2711.12 | 품 명         | 2711 |             |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             |
|-------|---------|-------------|------|-------------|------------------------|--------|-------------|
|       |         |             |      | 12          | 액화 프로판                 |        |             |
| 협 정   |         | 총 수입금액      |      | FTA특혜수입금액   |                        | FTA활용률 | 세율(MFN/FTA) |
| 한-미   |         | 911,651,639 |      | 217,656,999 |                        | 23.9   | 3 / 0       |
| 한-EU  |         | 18,885,466  |      | -           |                        | -      | 3 / 0       |
| 한-중   |         | 31          |      | -           |                        | -      | 3 / 2.6     |
| 한-아세안 |         | 25,920,669  |      | -           |                        | -      | 3 / 0       |

주 : 1. 해당 항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의 경우 한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단위 : 달러, %)

제2711.12호에 대한 주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를 비롯한 전체 주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만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제2711.29호로부터의 세번변경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가스 상태의 프로판을 액화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서 인정받

을 수 없게 된다.

한편, EU의 경우에는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이 수행된다면 동일 세번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4-65] 제2711.12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
| 한-미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2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한-EU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한-중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한-아세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자료: 각 협정문.

### ③ 제2711.12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여부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711.12호 물품은 미국의 주요 수출품으로서 한국의 對미 무역수지는 2012년 약 5천만 달러 적자에서 2016년에는 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폭발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폭발적인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FTA특혜수입금액은 약 2억 달러로 23.9%의 저조한 FTA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활용률이 수입증가율에 상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FTA 이외의 다른 수입증가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해당물품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711.2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석유화학공정을 거치면 충분히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활용률이 23.9%라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에는 동 제품의 제조공정이나 거래·유통·보관특성 등의 사유<sup>43)</sup>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해서는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이들 소호 중 하나 내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원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해설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동일 호(또는 소호)의 다른 상품 또는 재료에서의 변경을 의

43) 해당품목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EU FTA 및 한-ASEAN FTA의 FTA활용률도 0%로 저조한 활용률을 기록함에 따라 품목 또는 산업특성상 FTA특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정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물품은 동일한 소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 사용이 가능하며 한-캐나다 FTA에서는 불인정공정 규정 또한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제품의 비원산지 원료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49%이하이면 원산지 상품으로서 인정 받게 된다.<sup>44)</sup> 이는 결과적으로 캐나다에서는 해당물품의 제조공정 등에 있어서 동일한 호나 소호에 해당하는 역외산 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이 한-미 FTA에서도 동일 호의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제시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제27류 주 규정 개정 또는 해당 품목의 PSR 개정 중 적합한 한 가지 방식을 통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3) 규소(제2804.61호)

#### ① 제2804.61호의 對미 수출입동향

제2804.61호 물품의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對미 수출은 2012년 이후로 급감하여 2016년 현재 약 130만 달러의 수출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2016년 기준 약 1억 2천만 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약 1억 달러 내외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4-66] 제2804.61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 구 분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수입금액    | 수입증감률 |          |
| 2012 | 12,829 | 24    | 148,309 | -14.6 | -135,480 |
| 2013 | 2,170  | -83.1 | 99,570  | -32.9 | -97,400  |
| 2014 | 1,096  | -49.5 | 134,002 | 34.6  | -132,906 |
| 2015 | 3,999  | 264.9 | 145,281 | 8.4   | -141,283 |
| 2016 | 1,358  | -66   | 117,652 | -19   | -116,294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 천 달러, %)

#### ② 제2804.61호의 FTA 수입활용률과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2804.61호에 대한 對미 수입금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 달러, FTA특혜 수입금액은 약 3천 7백만 달러로 타 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32.0%의 FTA활용률

44) 예를 들면, 동일 소호에 속하는 역외산 저순도의 프로판 가스를 이용하여 고순도의 프로판 가스를 생산하거나 또는 제2711.12호로 분류할 수 있는 역외산 프로판·부탄 혼합물로부터 프로판 가스를 정제·추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입비중은 미국이 가장 많았으나 FTA특혜 수입규모는 EU가 4천만 달러로 미국을 앞서고 있었으며 FTA활용률의 경우에도 아세안이 77.6%, 중국이 68.4, EU가 53.3%로 나타나 주요 협정 중 미국의 FTA수입활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7] 제2804.61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HS.No | 2804.61 | 품 명         | 2804 |            |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             |  |
|-------|---------|-------------|------|------------|--------------------------------------|-------------|--|
|       |         |             |      | 61         | 규소(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             |  |
| 협 정   |         | 총 수입금액      |      | FTA특혜수입금액  | FTA활용률                               | 세율(MFN/FTA) |  |
| 한-미   |         | 117,651,744 |      | 37,620,672 | 32.0                                 | 3 / 0       |  |
| 한-EU  |         | 75,203,326  |      | 40,053,268 | 53.3                                 | 3 / 0       |  |
| 한-중   |         | 6,842,328   |      | 4,681,106  | 68.4                                 | 3 / 0       |  |
| 한-아세안 |         | 610,790     |      | 474,196    | 77.6                                 | 3 / 0       |  |

주 : 1. 해당 항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의 경우 한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단위 : 달러, %)

제2804.61호에 대한 주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68] 제2804.61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
| 한-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sup>45)</sup>                                                                                                                                                                                   |
| 한-EU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br>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한-중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한-아세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자료: 각 협정문.

45) 해당물품 또한 전술한 플라스틱, 합성고무와 동일하게 한-미 FTA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6부 주의 각 규칙에 규정된 화학반응, 정제, 이성체 분리 등의 특정공정이 수행될 시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대부분의 주요 협정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EU나 아세안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CTH 단일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제6부 주 규정을 통해 화학반응 등의 특정공정 수행 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고 있고 EU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서 비원산지재료를 EXW가격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CTH 단일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한-중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제2804.61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여부 검토

제2804.61호 물품의 對미 무역수지는 매년 약 1억 달러 내외의 지속적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의 對미 수입금액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 내지 정체를 보이고 있었으며 FTA활용률 또한 주요 기타 협정에 비해 저조한 32.0%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제조공정<sup>46)</sup>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의 경우 화학반응 등의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 조정과 관련된 이슈는 발생확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의약품(제3004.90호)

### ① 제3004.90호의 對미 수출입동향

제3004.90호 물품의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對미 수출입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미 수출의 경우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양(+)의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對미 수입의 경우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한-미 FTA 발효 초기인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22.8%, 28.3%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수입증가 추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對미 수입규모가 對미 수출규모보다 약 20배 정도 많고 수입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폭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46) 관세율표 제2806호 총설에 따르면, 규소는 일반적으로 전기아크로(爐 : electric arc-furnaces)를 이용하여 이산화규소를 탄소열환원법(carbothermal reduction)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얻는다. 이산화규소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2811호로 분류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9] 제3004.90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 구 분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수입금액    | 수입증감률 |          |
| 2012 | 12,896 | 22    | 306,408 | 22.8  | -293,512 |
| 2013 | 17,149 | 33    | 393,265 | 28.3  | -376,117 |
| 2014 | 17,254 | 0.6   | 468,766 | 19.2  | -451,512 |
| 2015 | 20,335 | 17.9  | 464,862 | -0.8  | -444,528 |
| 2016 | 25,741 | 26.6  | 499,767 | 7.5   | -474,026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 천 달러, %)

## ② 제3004.90호의 FTA 수입활용률과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3004.90호에 대한 對미 수입금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4억 8천만 달러, FTA특혜 수입금액은 약 1억 8천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FTA 활용률은 타 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36.0%를 보이고 있다. 총 수입금액의 경우 EU가 약 15억 달러로 월등한 수입규모를 보이고 있었고 이어 미국, 아세안, 중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FTA활용률 측면에서는 중국, EU, 아세안, 미국 순으로 나타나 수입규모에 비해 한-미 FTA활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0] 제3004.9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HS.No | 3004.90 | 품 명           | 3004 |             |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
|       |         |               |      | 90          | 기타                                                                                                                                |             |  |
| 협 정   |         | 총 수입금액        |      | FTA특혜수입금액   | FTA활용률                                                                                                                            | 세율(MFN/FTA) |  |
| 한-미   |         | 481,727,625   |      | 173,563,608 | 36.0                                                                                                                              | 8 / 0       |  |
| 한-EU  |         | 1,541,081,542 |      | 944,366,070 | 61.3                                                                                                                              | 8 / 0       |  |
| 한-중   |         | 62,212,269    |      | 46,757,852  | 75.2                                                                                                                              | 8 / 0.9     |  |
| 한-아세안 |         | 80,666,538    |      | 37,420,308  | 46.4                                                                                                                              | 8 / 0       |  |

주 : 1. 해당 항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의 경우 한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단위 : 달러, %)

제3004.90호에 대한 주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주요 협정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아세안의 경우에만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물품은 관세율표 제6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한-미 FTA상 제6부 주 규정을 통해 화학반응 등 특정공정 수행 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EU의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서 비원산지재료를 EXW가격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CTH단일기준보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쉽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004호 물품은 제3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거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하는 경우 제3004호로 세번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FTA 및 한-중 FTA에서는 제3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변경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 물론, 한-EU FTA 및 한-아세안 FTA에서는 단순한 포장 등의 경우 불인정공정으로 명시, ‘충분한 정도의 가공이나 공정(실질적 변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sup>47)</sup>

**[표 4-71] 제3004.9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
| 한-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sup>48)</sup>                                      |
| 한-EU  |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
| 한-중   |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3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 한-아세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자료: 각 협정문.

### ③ 제3004.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여부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004.90호에 대한 對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으로 약 4억 달러까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ex.3003), FTA활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36.0%로 나타났다.

47)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실제 포장 등의 공정 및 그 제품에 대하여 행해진 모든 공정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포장 등의 공정만이 행해졌다고 모두 불인정공정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48) 해당물품 또한 전술한 플라스틱, 합성고무와 동일하게 한-미 FTA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6부 주의 각 규칙에 규정된 화학반응, 정제, 이성체 분리 등의 특정공정이 수행될 시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우선 해당물품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인 CTH(ex.3003)는 대부분의 협정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규정이고, 해당물품의 일반적인 원재료들은 대부분 제28류 및 제29류에 분류되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한-미 FTA의 경우 제6부 주 규정에 명시된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의 공정이 수행될 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과 관련되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조정보다는 한-미 FTA 제5장(의약품), 제18장(지식재산권) 등의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시장 전반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까지 미국이 주도했던 TPP상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CTH(ex.3003) or BD40]으로 현행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보다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 정도까지 조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72] 제3004.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PSR 약어표시                                     |
|-----|---------------------------------------------------------------------------------------------------------------------------------------------------------------------|----------------------------------------------|
| 예시① |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에서 제3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p> <p>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 <p>CTH(ex.3003) or</p> <p>(BU30 or BD40)</p> |

## **(5) 의료기기(제9018.90호)**

### **① 제9018.90호의 對미 수출입동향**

제9018.90호 물품의 수출입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對미 수출입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미 수출의 경우 2012년 한-미 FTA 발효 첫 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양(+)의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2016년에는 2012년 대비 수출규모가 약 4배 증가하였다.

한편, 對미 수입의 경우 수입증가율이 등락을 반복하며 2016년에는 2012년 대비 약 1천 1백만 달러 상승, 對미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한 對미 무역수지 적자 폭은 점차 감소, 2012년 약 2

억 달러 규모에서 2016년 현재에는 약 1억 4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4-73] 제9018.90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 구 분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수출금액   | 수출증감률 | 수입금액    | 수입증감률 |          |
| 2012 | 24,894 | -26.9 | 229,067 | -12.1 | -204,173 |
| 2013 | 33,780 | 35.7  | 231,775 | 1.2   | -197,995 |
| 2014 | 67,236 | 99    | 217,433 | -6.2  | -150,197 |
| 2015 | 82,945 | 23.4  | 230,300 | 5.9   | -147,355 |
| 2016 | 99,939 | 20.5  | 240,668 | 4.5   | -140,729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 천 달러, %)

## ② 제9018.90호의 FTA 수입활용률과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9018.90호에 대한 對미 수입금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2억 4천만 달러, FTA특혜 수입금액은 약 9천 6백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FTA 활용률은 40.5%로 확인되었다. 총 수입 금액의 경우 미국이 EU의 2배 수준으로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FTA활용률 측면에서는 EU, 미국, 중국, 아세안 순으로 나타나 수입규모에 비해 한-미 FTA활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4] 제9018.9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 HS.No | 9018.90 | 품 명         | 9018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             |
|-------|---------|-------------|------|------------|------------------------------------------------------------------------------|--------|-------------|
|       |         |             |      | 90         | 기타                                                                           |        |             |
| 협 정   |         | 총 수입금액      |      | FTA특혜수입금액  |                                                                              | FTA활용률 | 세율(MFN/FTA) |
| 한-미   |         | 238,577,626 |      | 96,627,144 |                                                                              | 40.5   | 8 / 1.3     |
| 한-EU  |         | 119,720,332 |      | 58,079,887 |                                                                              | 48.5   | 8 / 0.8     |
| 한-중   |         | 52,404,939  |      | 19,321,677 |                                                                              | 36.9   | 8 / 5.7     |
| 한-아세안 |         | 7,318,375   |      | 1,997,039  |                                                                              | 27.3   | 8 / 0       |

주 : 1. 해당 항목들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의 경우 한국의 HS 6단위 기준 평균세율.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단위 : 달러, %)

제9018.90호에 대한 주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주요 협정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중국의 경우<sup>49)</sup>에만 4단위 세 번변경기준(CTH) 단일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아닌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를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50)</sup>

**[표 4-75] 제9018.9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
| 한-미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7.10호 내지 제902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br>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br>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
| 한-EU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br>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 한-중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 한-아세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br>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br>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자료: 각 협정문.

### ③ 제901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여부 검토

제9018.90호에 대한 對미 무역적자 규모는 2016년 현재 약 1억 4천만 달러 정도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며 적자 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규모에 비해 FTA활용률이 40.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현재보다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으로의 변경 요구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49) 대부분의 제90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기준과의 선택기준이 아닌 4단위 세번변경기준만을 채택하고 있는 한-중 FTA의 경우에는 해당 기기와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역내산만을 사용해야만 하므로 향후 FTA활용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산업특성상 이러한 부분품들이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어 누적기준이나 최소허용기준을 활용하여 FTA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관세율표 구조 및 여타 FTA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0) 다만, 제90류에 해당하는 기기의 경우 제90류 주 제1호 및 주 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되므로 제9018.90호의 기기와 전용·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모두 제9018.90호에 분류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6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상 제9018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CTSH or RVC(35/45)로서 해당물품인 제901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부가가치비율의 하향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하는 안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해당물품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은 중국, 칠레 등 일부 협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정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는 품목분류상 제9018호에 분류되는 완제품과 그 부분품이 동일한 호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부분품이 역외산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기준 선택을 통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개정 논의 시 제시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은 해당 부가가치기준의 부가가치비율 조정을 통한 방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비율과 관련해서는 TPP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참고로 할 수 있는데, TPP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집적법(BU) 30%, 공제법(BD) 40%, 특정원재료공제법(FV)<sup>51)</sup> 50%의 3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표 4-76] TPP의 제9018.90호 원산지결정기준**

---

A change to a good of subheading 9018.90 from any other subheading; or

No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equired for a good of subheading 9018.90, provided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a) 30 per cent under the build-up method; or

(b) 40 per cent under the build-down method; or

(c) 50 per cent under the focused value method taking into account only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of subheading 9018.90.

---

자료: TPP 협정문.

따라서 TPP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제9018.90호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집적법 30%, 공제법 40% 정도 수준의 부가가치비율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51) 특정원재료공제법(Focused value; FV)은 TPP에서 새로이 채택된 부가가치기준으로서 명시된 특정 세번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만을 공제하는 방식의 원산지결정기준이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제9018.90호가 그 대상이 되며 제9018.90호의 비원산지재료만을 공제하여 50%이상의 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표 4-77] 제901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 구 분 | 원 산 지 결 정 기 준                                                                                                                                                    | PSR 약어표시                             |
|-----|------------------------------------------------------------------------------------------------------------------------------------------------------------------|--------------------------------------|
| 예시① |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9017.10호 내지 제 902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p> <p>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p> <p>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p> | <p>CTSH or</p> <p>(BU30 or BD40)</p> |

## 7. 소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對미 주요 수출입물품 중 대표품목에 대한 수출입현황과 한-미 FTA 활용률을 바탕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재논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HS 6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2016년 對미 수출입동향과 FTA활용률(utilization rate)을 연계 분석하여 향후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이슈 품목을 선정, 제한적이나마 해당 품목의 향후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FTA활용을 통한 관세혜택으로 체약상대국 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시장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과 원산지규정이 엄격하게 규정될수록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수출규모와 더불어 FTA활용률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물품에 대한 對미 무역수지 흑자폭도 상당한 규모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러한 바탕에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이 대기업 중심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체약상대국과의 비교우위제품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짐에 따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를 통해 자동차 등 대표적인 무역수지 적자 품목에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 FTA활용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sup>52)</sup>

반면, 미국의 경우 對한 수출증진을 위해 농산물·석유화학·의약품 등 미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완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품목들의 경우 현행 원산지결정기준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설정

52) 2017년 산업연구원의 「한미 FTA 변화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입 관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 관련 ① 한미 FTA 파기 ②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뒤 FTA 존치 ③ 물품취급 수수료(MPF) 부활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특히,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부분개정으로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한-미 FTA 제2.10조에 의해 한-미 FTA적용 원산지물품에 대하여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만약 다시 부활한다면 한국의 대미수출이 약 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추정하였다.

되어 있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조정보다는 TRQ 물량의 확대, 의약품(제5장)이나 지식재산권(제18장)의 개정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개정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개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완화라는 방법보다는 해당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개방을 확대하거나 규제완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각 산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한-미 FTA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정부·학계·산업계간 협의체를 구성,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향후 FTA 원산지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제5장 결 론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교역 부진으로 인해 양국의 對세계 교역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교역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은 동반 상승하였다. 더 불어 한-미 FTA 발효 이후 전체 수출품목 수뿐만 아니라特惠세율을 적용받은 수출품목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고, 한-미 FTA 수출·입 활용률은 2014년을 제외하고 2012년 대비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 현재 한-미 FTA의 수출 활용률은 76%, 수입 활용률은 71%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년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한국이 既체결한 14개 FTA 협정들의 평균 FTA 수출활용률 64%보다 12%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뿐 아니라, 한-미 FTA는 양국의 상대국 시장점유율 증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대비 미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 및 직접투자 증가 등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 협정문 제24.2조 및 제 24.5조에 따라 협정 개정은 물론, 미국 정부가 희망할 경우 협정 종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 양국 모두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종료가 아닌 재협상을 유도하고 향후 FTA 활용 제고와 양국 간 균형적인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발효 전후 5년 동안의 누적 상품교역현황을 바탕으로 관세양허, 원산지 규정 관련 재협상 가능 품목들과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및 원산지 규정 관련 논의 될 수 있는 품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세양허관련 가장 주목해야 할 품목은 한-미 FTA 발효 전후 5년 동안 미국의 누적 무역수지 흑자폭이 가장 크게 증가한 제2류(육과 식용 설육)의 소고기(제0201호, 제 0202호)와 돼지고기(제0203.19호)이다.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관세율은 2017년 기준 다른 주요 수입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미국으로부터의 소고기 수입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의 수입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 한국시장에서 소고기 수입국 1위를 달성하고 돼지고기 수입국 1위 재탈환을 목표로 관세 조기철폐 및 인하 등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류(어류·갑각류)에 속한 품목 중 미국의 對한 수출이 가장 많은 제0303호(냉동어류)의 경우 35개 품목에 평균 6.2%의 관세가 남아있고 TRQ 적용 물품 모두 제0303호이다. 또한 제3류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0304호(어류의 필레)에 한국 측 관세가 10개 품

목에 평균 6.5%의 관세가 남아있고 세 번째로 수출규모가 큰 제0306호(감각류)에도 한국 측 관세가 19개 품목에 3.7%의 관세가 남아있어 제3류에 대한 미국의 양허안 수정 요구가 예상된다.

제7류 신선 채소 중에서 對미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감자(제070190호)의 경우, 연도별 총 수입액을 살펴보면 미국은 2015년까지 1위의 수입국으로 한국의 전체 감자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6년 28%까지 감소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이중 칩용 감자에 대해 한-미 FTA와 한-호주 FTA 모두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비성수기에는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한-미 FTA의 경우 성수기에 304%, 한-호주 FTA에는 2017년 기준 22.95%가 적용되고 있다. 호주는 2014년 12월 협정 발효 이후 균등 인하되고 있으나 미국은 8년차인 2019년부터 균등 인하될 예정이며, 미국이 2017년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일부 지역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조치 철회를 위해 계속 협상 중에 있다고 밝힌 바, 미국 측에서 비관세 분야 뿐 아니라 관세 분야에서도 감자의 관세 조기 인하, 계절관세 및 관세율할당에 대한 조건 완화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제22류(음료·주류)에 속한 과일주스의 경우 미국제품이 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비중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既체결한 FTA 중에서 한-칠레, 한-EU, 한-페루, 한-싱가포르, 한-터키 등의 FTA에는 동 제품에 대해 2017년 기준 0%의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미 FTA의 경우 9%의 기본세율이 10단계에 걸쳐 균등 인하되어 2017년에는 3.6%가 적용되고 2021년 완전 철폐될 예정이므로, 관세 조기철폐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오렌지는 제8류의 과일 중에서 對미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 2017년 2월까지 수입된 물량은 20,388톤으로 TRQ 허용 물량인 2,814톤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미국 측이 계절관세에 대한 조건 완화 및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오렌지는 현재, 비수기인 3월 ~ 8월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30%에서 인하된 관세가 이행 2년차부터 6단계 균등 철폐되어 2016년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7년차인 2018년 0%가 된다. 그러나 9월 ~ 2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로서 현행 50%의 관세를 유지하되, TRQ물량을 제공하여 협정 상 기재된 물량(2,814톤)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 관세가 부여되고, 그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한편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對한 수출증진을 위해 농산물·석유화학·의약품 등 미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완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품목들의 경우 현행 원산지결정기준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조정보다는 TRQ 물량의 확대, 의약품(제5장)이나 지식재산권(제18장)의 개정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개정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개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완화라는 방

법보다는 해당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개방을 확대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및 원산지 규정 관련 논의 될 수 있는 품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세양허관련 주목해야 할 결과들을 살펴보면,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한 품목 중에서 산업내 무역지수가 크게 감소하고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들에 대한 한국의 특혜 양허 관세는 모두 0%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제87류(일반차량)에 6개, 제73류(철강제품)에 7개, 제94류(가구류·조명기구)에 2개, 제82류(비금속 공구)에 7개, 제83류(비금속 제품)에 1개 품목에 양허 관세가 남아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한국의 수출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미국의 양허 관세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이 미미한 이유가 차별적 조치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수출금액이 미미하지만 미국이 잠재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FTA 협상당시 미리 이런 차별적 관세를 적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수출규모와 더불어 FTA활용률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물품에 대한 對미 무역수지 흑자폭도 상당한 규모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러한 바탕에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체약상대국과의 비교우위제품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짐에 따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를 통해 자동차 등 대표적인 무역수지 적자 품목에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 FTA활용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업내무역지수가 증가한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규정 관련 논의 될 수 있는 품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관세양허관련 주목해야 할 품목들은 관세가 남아있으며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감소한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0류(유리·유리제품)이다.

제70류(유리·유리제품)는 전체의 약 20%인 33개 품목에 관세가 남아 있으며 미국의 既 체결 협정 중 유일하게 한국만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이다. 이들의 2016년 평균 관세는 6.9%로 매우 높은 편이며, 한국만 차별 관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재협상 시 관세 인하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다.

제76류(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제품)의 제7606.12호와 제7606.92호는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한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이다. 그러나 미국의 양허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남아 있어 잔여 관세가 철폐될 경우 무역수지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양허 및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각 산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한-미 FTA 대응책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향후 한국형 관세양허 및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특히, 관세양허 관련 규정들은 한국의 생산·수요 현황, 품목별·국가별 교역 현황, 상품의 경쟁관계, 시장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협정별·상품별로 차별적인 ‘한국형 관세양허 규정’에 대한 일반원칙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출품목의 생산시설 현황, 역외가공여부, 중간재 경쟁관계 및 상품교역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한국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정부·학계·산업계간 협의체를 구성,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향후 FTA 개정 및 새로운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FTA를 통한 자유무역이 심화될수록 FTA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유발하지 않도록 협정 간 일관성·통일성을 부여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FTA활용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FTA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특성·수출입구조 등이 반영되어 우리기업들에게 보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한-미 FTA를 포함한 한국의 既체결된 FTA의 활용성을 증진시키고, 실질적으로 양적·질적 교역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신규 FTA를 확대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첨부 1]

류 단위별 2016년 관세 철폐된 품목 수

| 분류(류) | 품목명                | 관세 철폐된 품목 수 | 특혜 적용된 품목 수 |
|-------|--------------------|-------------|-------------|
| 1     | 산동물                | 1           |             |
| 2     | 육과 식용 설육           | 19          |             |
| 3     | 어패류                | 8           |             |
| 4     | 낙농품, 조란, 천연꿀       | 76          |             |
| 5     | 기타 동물성 생산품         | 1           |             |
| 6     | 산수목/꽃              | 1           |             |
| 7     | 채소                 | 51          |             |
| 8     | 과실/견과류             | 13          |             |
| 11    | 곡물의분과 조분말가루, 전분    | 5           |             |
| 15    | 동식물성 유지            | 4           |             |
| 16    | 육/어류 조제품           | 7           | 2           |
| 17    | 당류 설탕과자            | 13          | 1           |
| 18    | 코코아, 초코렛           | 29          |             |
| 19    |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 14          | 6           |
| 20    | 채소/과실의 조제품         | 33          | 5           |
| 21    | 기타의 조제식료품          | 23          | 7           |
| 23    | 조제사료               | 4           |             |
| 29    | 유기화학품              | 33          | 14          |
| 30    | 의료용품               | 1           | 1           |
| 34    | 비주, 계명활성제, 왁스      | 14          | 14          |
| 35    |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 4           | 1           |
| 38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16          | 4           |
| 39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39          | 30          |
| 40    | 고무와 그 제품           | 4           | 5           |
| 42    | 가죽제품               | 1           |             |
| 43    | 모피, 모피제품           | 1           |             |
| 44    | 목재, 목탄             | 5           | 3           |
| 51    | 양모, 수모             | 1           |             |
| 52    | 면                  | 111         | 30          |
| 54    | 인조필라멘트섬유           | 5           | 2           |
| 55    | 인조스테이플섬유           | 2           | 1           |
| 58    | 특수직물               | 4           | 4           |
| 59    | 침투, 도포한 직물         | 3           | 3           |
| 60    | 편물                 | 3           | 3           |

|     |               |     |     |
|-----|---------------|-----|-----|
| 61  | 의류(편물제)       | 10  | 8   |
| 62  | 의류(편물제이외)     | 3   | 2   |
| 63  | 기타섬유제품/닝마     | 1   |     |
| 65  | 모자류           | 1   |     |
| 66  | 우산/지팡이        | 1   |     |
| 67  | 조제우모 인조제품     | 1   |     |
| 68  | 석, 시멘트, 석면제품  | 3   | 1   |
| 69  | 도자제품          | 1   |     |
| 70  | 유리와 유리제품      | 2   | 3   |
| 72  | 철강            | 16  | 5   |
| 73  | 철강제품          | 1   | 1   |
| 76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4   | 4   |
| 84  | 보일러, 기계류      | 13  | 11  |
| 85  | 전기기기, TV, VTR | 9   | 7   |
| 87  | 일반차량          | 5   |     |
| 96  | 잡품            | 2   |     |
| 총합계 |               | 622 | 180 |

자료: 관세청(FTA 활용률), USITC(관세율) 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첨부 2]

### 산업별 관세율 및 수출·입 활용률

| 분류(류) | 품목명             | 미국평균MFN | 미국양허율 | 수출활용률 | 수입활용률 |
|-------|-----------------|---------|-------|-------|-------|
| 1     | 산동물             | 0.78    | 0.00  | 0     | 99    |
| 2     | 육과 식용 설육        | 4.50    | 1.33  |       | 100   |
| 3     | 어패류             | 0.46    | 0.11  | 50    | 86    |
| 4     | 낙농품, 조란, 천연꿀    | 12.29   | 1.13  | 47    | 99    |
| 5     | 기타 동물성 생산품      | 0.42    | 0.00  | 0     | 100   |
| 6     | 산수목/꽃           | 3.59    | 0.00  | 88    | 91    |
| 7     | 채소              | 8.66    | 0.16  | 77    | 97    |
| 8     | 과실/견과류          | 3.43    | 0.17  | 70    | 96    |
| 9     | 커피/차/향신료        | 0.26    | 0.00  | 83    | 98    |
| 10    | 곡물              | 1.53    | 0.26  | 54    | 87    |
| 11    | 곡물의분과 조분가루, 전분  | 3.75    | 0.00  | 62    | 99    |
| 12    | 채유용 종자/인삼       | 13.14   | 2.48  | 22    | 48    |
| 13    | 식물성 엑스          | 0.89    | 0.00  | 62    | 66    |
| 14    | 기타 식물성 생산품      | 1.11    | 0.00  | 76    | 99    |
| 15    | 동식물성 유지         | 3.48    | 0.37  | 39    | 84    |
| 16    | 육/어류 조제품        | 3.14    | 1.16  | 69    | 99    |
| 17    | 당류 설탕과자         | 5.84    | 0.28  | 50    | 96    |
| 18    | 코코아, 초코렛        | 3.18    | 0.09  | 36    | 89    |
| 19    |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 5.40    | 0.50  | 60    | 91    |
| 20    | 채소/과실의 조제품      | 10.84   | 1.23  | 45    | 95    |
| 21    | 기타의 조제식료품       | 5.26    | 0.31  | 61    | 73    |
| 22    | 음료, 주류, 식초      | 1.80    | 0.10  | 65    | 83    |
| 23    | 조제사료            | 0.56    | 0.00  | 100   | 100   |
| 24    | 담배              | 204.98  | 56.25 | 0     | 96    |
| 25    | 토석류/소금          | 0.23    | 0.00  | 1     | 93    |
| 26    | 광, 슬랙, 회        | 0.08    | 0.00  |       | 97    |
| 27    | 광물성연료, 에너지      | 0.50    | 0.00  | 78    | 41    |
| 28    | 무기화합물           | 2.21    | 0.00  | 53    | 80    |
| 29    | 유기 화합품          | 2.70    | 0.03  | 63    | 89    |
| 30    | 의료용품            | 0.22    | 0.00  | 80    | 35    |
| 31    | 비료              | 0.00    | 0.00  |       | 89    |
| 32    | 염료, 페인트, 잉크     | 3.77    | 0.60  | 62    | 86    |
| 33    | 향료, 화장품         | 1.51    | 0.00  | 49    | 71    |
| 34    | 비주, 계명활성제, 왁스   | 1.67    | 0.00  | 76    | 74    |

|    |                    |       |      |    |     |
|----|--------------------|-------|------|----|-----|
| 35 |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 1.90  | 0.00 | 71 | 84  |
| 36 | 화약류/성냥             | 2.87  | 0.00 |    | 99  |
| 37 |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 2.70  | 0.00 | 81 | 59  |
| 38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3.22  | 0.00 | 68 | 83  |
| 39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4.23  | 1.15 | 77 | 87  |
| 40 | 고무와 그 제품           | 1.54  | 0.00 | 96 | 83  |
| 41 | 원피(모피 제외)와 가죽      | 2.27  | 0.00 | 46 | 90  |
| 42 | 가죽제품               | 7.33  | 0.50 | 42 | 40  |
| 43 | 모피, 모피제품           | 2.14  | 0.00 | 89 | 98  |
| 44 | 목재, 목탄             | 1.28  | 0.84 | 59 | 91  |
| 45 | 코르크/짚              | 0.67  | 0.37 | 0  | 97  |
| 46 | 조물재료의 제품           | 4.05  | 0.37 | 22 | 31  |
| 47 | 펄프                 | 0.00  | 0.00 |    | 100 |
| 48 | 지와 판지              | 0.00  | 0.00 |    | 100 |
| 49 | 서적/신문, 인쇄물         | 0.00  | 0.00 |    | 99  |
| 50 | 견                  | 0.66  | 0.00 | 29 | 95  |
| 51 | 양모, 수모             | 6.36  | 0.00 | 9  | 78  |
| 52 | 면                  | 8.29  | 0.00 | 60 | 63  |
| 53 | 마류의사와 직물           | 0.97  | 0.00 | 48 | 20  |
| 54 | 인조필라멘트섬유           | 10.03 | 1.91 | 85 | 97  |
| 55 | 인조스테이플섬유           | 10.52 | 0.00 | 90 | 96  |
| 56 | 워딩부직포              | 3.89  | 0.11 | 71 | 69  |
| 57 | 양탄자                | 2.95  | 0.00 | 25 | 85  |
| 58 | 특수직물               | 8.60  | 0.06 | 61 | 56  |
| 59 | 침투, 도포한 직물         | 3.19  | 0.13 | 85 | 64  |
| 60 | 편물                 | 10.33 | 1.90 | 65 | 85  |
| 61 | 의류(편물제)            | 12.79 | 0.60 | 72 | 45  |
| 62 | 의류(편물제외)           | 10.08 | 0.29 | 51 | 26  |
| 63 | 기타섬유제품/넙마          | 6.85  | 0.00 | 71 | 75  |
| 64 | 신발류                | 10.47 | 3.21 | 76 | 47  |
| 65 | 모자류                | 2.75  | 0.00 | 76 | 57  |
| 66 | 우산/지팡이             | 4.55  | 0.00 | 21 | 27  |
| 67 | 조제우모 인조제품          | 2.60  | 0.00 | 95 | 33  |
| 68 | 석, 시멘트, 석면제품       | 1.49  | 0.00 | 81 | 75  |
| 69 | 도자제품               | 3.98  | 1.48 | 42 | 49  |
| 70 | 유리와 유리제품           | 5.08  | 1.05 | 60 | 68  |
| 71 | 귀석, 반귀석, 귀금속       | 2.11  | 0.21 | 59 | 83  |
| 72 | 철강                 | 0.31  | 0.00 | 66 | 99  |
| 73 | 철강제품               | 1.21  | 0.07 | 78 | 28  |

|    |                   |      |      |     |     |
|----|-------------------|------|------|-----|-----|
| 74 | 동과 그 제품           | 1.91 | 0.00 | 63  | 81  |
| 75 | 니켈과 그 제품          | 1.75 | 0.00 | 9   | 75  |
| 76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3.49 | 0.58 | 68  | 36  |
| 77 | 유보                |      |      |     |     |
| 78 | 납과 그 제품           | 1.45 | 0.00 | 100 | 46  |
| 79 | 아연과 그 제품          | 2.47 | 0.00 | 27  | 69  |
| 80 | 주석과 그 제품          | 1.12 | 0.00 | 10  | 71  |
| 81 | 기타의 비금속           | 3.36 | 0.00 | 37  | 56  |
| 82 | 비금속, 제공구, 스푼/포크   | 2.79 | 0.07 | 70  | 78  |
| 83 | 각종 비금속 제품         | 2.42 | 0.01 | 81  | 52  |
| 84 | 보일러, 기계류          | 1.25 | 0.15 | 70  | 56  |
| 85 | 전기기기, TV, VTR     | 1.59 | 0.02 | 73  | 57  |
| 86 | 철도차량              | 5.15 | 0.00 | 54  | 76  |
| 87 | 일반차량              | 3.38 | 1.02 | 77  | 92  |
| 88 | 항공기               | 0.20 | 0.00 | 47  | 95  |
| 89 | 선박                | 0.37 | 0.00 | 27  | 26  |
| 90 |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 기기 | 1.54 | 0.00 | 51  | 65  |
| 91 | 시계                | 3.73 | 0.25 | 43  | 16  |
| 92 | 악기                | 3.44 | 0.00 | 70  | 90  |
| 93 | 무기화합물             | 1.13 | 0.00 | 8   | 65  |
| 94 | 가구류, 조명기구         | 1.67 | 0.06 | 63  | 63  |
| 95 | 완구, 운동요구          | 2.04 | 0.00 | 38  | 79  |
| 96 | 잡품                | 4.37 | 0.47 | 53  | 78  |
| 97 | 예술품, 골동품          | 0.00 | 0.00 |     | 100 |

자료: 관세청(FTA 활용률), USITC(관세율) 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

문종철,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행보의 시사점과 대응방안」, KIET산업경제, 2017.2  
산업연구원, 「한미 FTA 변화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입 관계에 미치는 영향」, 2017.4

서운경 기자, 「산업부 내부분건 보니… “한·미 FTA 파기 땀 美가 더 손해”」, 국민일보, 2017.4.21.

이을 기자, 美상무 “한미FTA 개정 검토…반도체·조선도 추가 무역조치“, 연합뉴스, 2017.4.26.

정민정, 「트럼프의 통상 정책과 한-미FTA의 향방」, 이슈와 논점 제122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11

정철 외,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KEIP 오늘의 세계경제 17(18), 2017.5

정혜선 외,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IIT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2017년 7호

최남석,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6.12

한-미 FTA 협정문

현대경제연구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평 17-3, 2017.1

### [영문 자료]

Cadot *et al*, 「Rules of origin for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implications for

AFTA of EU and US regimes.」, 2006.

Estevadeordal, Antoni,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34, 2000.

Jeffrey J. Schott, 「Will the KORUS FTA Have an Encor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7. 3

Roh, Jaeyoun, and Jee-Hyeong Park,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of Rules of Origin Requirements of Korea-US FTA with a New Measure of the Requirements」, *Korean Economic Review* 30, 163-190, 2014.

Tami Overby, 「Four Years In: The Benefits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The U.S. Chamber of Commerce, 2016. 3

USITC, 「Economic Impact of Trade Agreements Implemented Under Trade Authorities Procedures, 2016 Report」,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6. 6

- 「US-Korea Free Trade Agreements: Effects on 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3. 5

USTR,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7. 3

## **[데이터]**

무역협회(stat.kita.net)

관세법령정보포털 3.0 자료

관세청 무역 리포트(2017.3.)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USITC(dataweb.usitc.gov)

UNComtrade(comtrade.un.org)

## 한-미 FTA 발효 후 상품교역현황 변화 분석 및 상호협력모델 연구

---

**발행일** 2017년 7월

**발행처** 관세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Tel : (042)481-3282

Fax : (042)481-7753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 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인쇄처** (주)협동문고

Tel : (02)545-6188

본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